



JECHEON PUBLIC FACILITIES GUIDELINE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INDEX

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요	8	1.7 안내시설물	94
1. 정의	8	안내표지판	94
2. 필요성	8	현수막 게시대	98
3. 전략	9	지정벽보판	102
4.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10	2. 공공공간	106
4.1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10	2.1 개요	106
4.2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10	2.2 녹지공간	108
4.3 공공디자인 비전	11	녹지공간	108
4.4 공공디자인 컨셉	12	2.3 수공간	114
5.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성	14	수공간	114
5.1 공공시설물 정의	14	2.4 보행공간	120
5.2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분류	14	보행공간	120
5.3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성	15	3. 공공건축물	126
5.4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6	3.1 개요	126
5.5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20	3.2 소규모 공공건축물	128
I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26	문화 및 집회시설	128
1. 공공시설물	26	노유자시설	134
1.1 개요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치료시설,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140
1.2 대중교통시설물	28	아동·노인 관련시설	146
버스·택시 승강장	28	4. 공공매체	152
자전거 거치대	34	4.1 개요	152
1.3 보행안전시설물	38	4.2 정보매체	154
블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38	간판	154
펜스	42	안내판	158
공공조명	46	디지털영상매체	162
배수구 덮개	50	4.3 시각이미지	166
1.4 편의시설물	54	그림문자, 서체, 도시브랜드	166
벤치	54	4.4 공공미술	168
퍼걸러(파고라)	58	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	168
휴지통	62	IV.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활용	172
음수대	66	1. 가이드라인 활용	172
클린하우스	70	1.1 활용 방안	172
1.5 공급시설물	74	1.2 활용 절차	173
맨홀	74	2.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174
지중화시설(배전함, 제어함)	78	2.1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174
방재시설(소화전)	82	2.2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212
1.6 녹지시설물	86	2.3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221
가로수 보호대	86	2.4 공공매체 체크리스트	233
가로 화분대	90		



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요

1. 정의
2. 필요성
3. 전략
4.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5.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성

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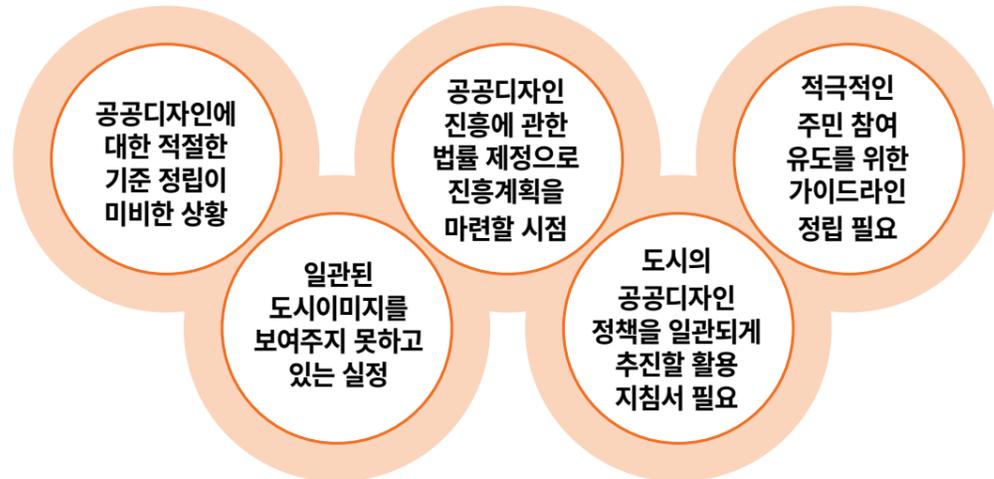
1. 정의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이념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다.

법령근거(조례사항)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장 제17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립된 구체적 실천 방안이다.

- 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평등과 안전의 측면에서 시설·공간 사업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필요성



[그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천시는 여러 도시재생을 비롯한 여러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기준이 없어 일관된 도시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년 수립된 '제천시 공공디자인 통합매뉴얼'은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10년이 지난 상황이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비법정 영역이었던 공공디자인 분야가 법정화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시·도 또는 시·군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제천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심의 활동에 대한 기준 및 **활용 지침서**인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장 제6조(주민 참여 등)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행 사업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3. 전략

전략 01

실무자들(공공디자인 사업 집행관)에게 실용적인 지침서

가이드라인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 ① **기본코드(Basic Code) + PUBLIC / UD(유니버설디자인) / CPTED 가이드라인**을 구분하여 적용
- ② **공간적 시각화 추진**: 추상적 또는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에 설치되는 통합 이미지 제시
- ③ **디자인 결정을 위한 방향 제시**: 특정한 디자인을 미리 결정된 형태로 제시하기보다 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밝히는 방향 제시
- ④ **Checklist**: 일반적인 공공디자인적 측면 + 유니버설디자인적 측면 + CPTED적 측면을 적용



[그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전략 1

전략 02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지침서

가이드라인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

- ① 기본코드 - PUBLIC 가이드라인 - UD 가이드라인 - CPTED 가이드라인 : 자문 및 심의 기준 정립
- ② 단일 시설물의 형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공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심의 지침서
- ③ 상황별 통합디자인 Solution 제시를 통한 자문 및 심의를 주도



[그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전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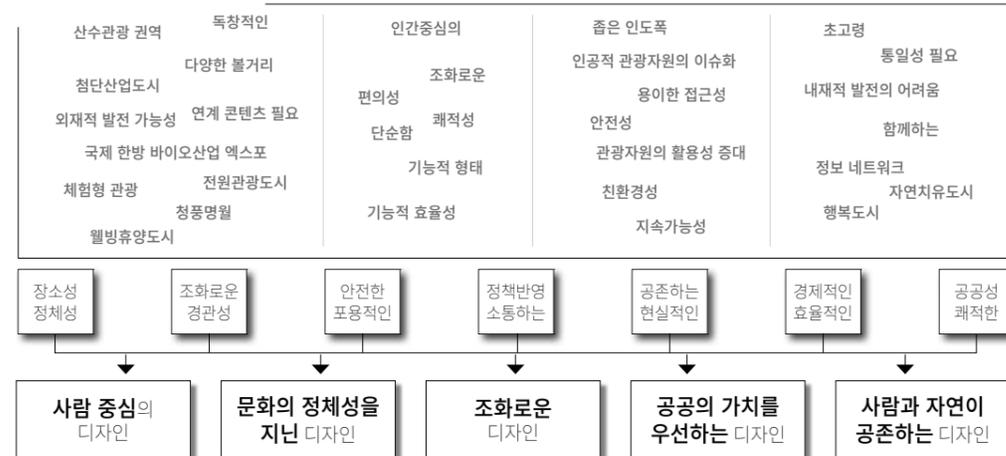
4.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4.1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기본방향 기준]



[기본방향의 Key-word]



[그림]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4.2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그림]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4.3 공공디자인 비전

[방향]

제천시 공공디자인의 비전은 키워드와 기본방향을 통해 분석된 기본원칙을 실현시키는 거버넌스로..., 시민(방문객 포함)이 생활하기 위한 편리한 공간으로서 도시의 기능적 측면, 미적인 만족감,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이루기 위해 내다보는 미래의 발전상에 대한 제천시의 공공발전의 목표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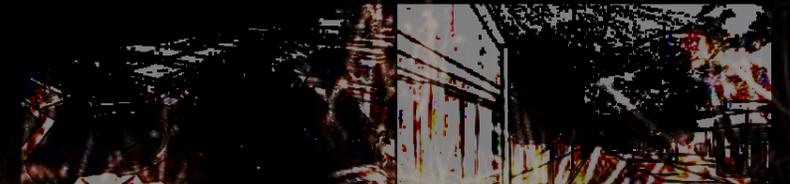


사람중심의 문화 / 자연자원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 / 사람과 자연의 공유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전시켜
공공디자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기반을 마련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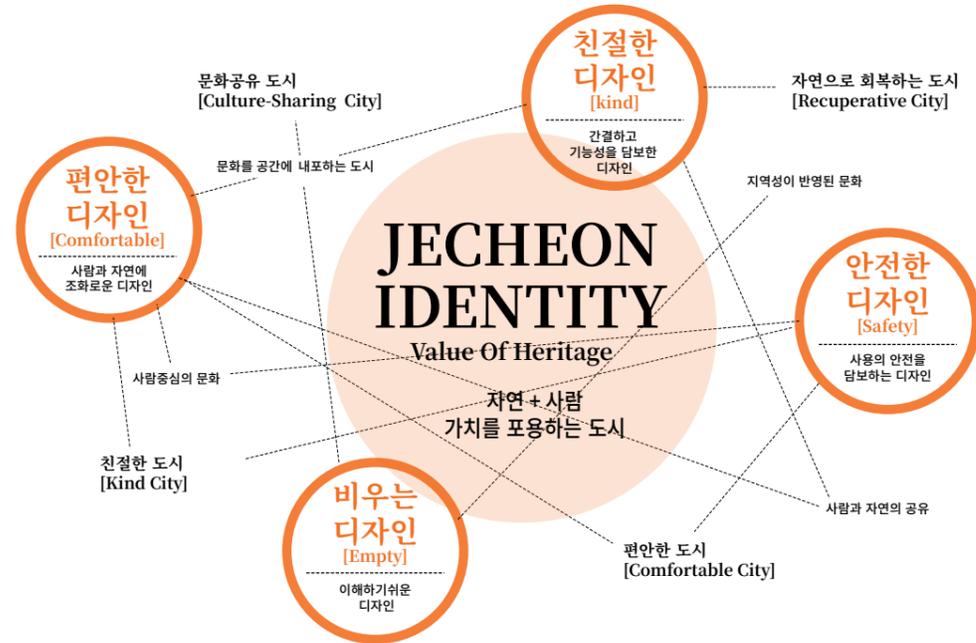
※ 제천시 공공디자인 비전 : '자연+사람' 가치를 포용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컨셉의 도출이 필요하다.



4.4 공공디자인 컨셉

제천시 공공디자인의 컨셉은 제천시 공공디자인 비전(자연+사람, 가치를 포용하는 도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편안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 친절한 디자인, 비우는 디자인'으로 설정한다.

이는 '편안한 도시, 친절한 도시, 문화공유 도시, 자연으로 회복하는 도시'라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제천시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림] 제천시 공공디자인 컨셉

편안한 디자인

주변과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는 디자인(기능·시각)
-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디자인
- 경관에 편안하고 순응하는 디자인



친절한 디자인

자연의 느낌을 재해석하여 현대적 감성으로 기능적 간결성을 담보하는 디자인

- 자연적 요소를 담은 디자인
- 고유한 형태를 담은 디자인
- 간결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

이용자 모두에게 접근성이 좋은 디자인

-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는 디자인
- 사용의 목적에 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자인



비우는 디자인

문화 및 자연의 가치가 요소로 부각되고 도시의 배경을 간소화하는 디자인

- 기능을 강조하는 디자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
- 형태 및 정보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5.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성

5.1 공공시설물 정의

제천시 공공시설물 유형체계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_ 제2조(정의) 3항'에 근거하여 정의한다.

공공시설물 법률적 정의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군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_ 제2조(정의) 3항)

-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블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천시 공공시설물 유형체계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_ 제2조(정의) 3항'을 기준으로 하여 체계를 구분하며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서로 활용한다.

5.2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분류

가이드라인 위주 분류

① 공공시설물

분류	세부항목
대중교통시설물(2종)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보행안전시설물(4종)	블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배수구 덮개, 공공조명(가로등, 보안등, 보행등, 공원등, 수목등, 경관등 등)
편의시설물(5종)	벤치, 퍼걸러(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클린하우스
공급시설물(3종)	맨홀, 지중화시설(배전함, 제어함), 방재시설(소화전)
녹지시설물(2종)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안내시설물(3종)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표]공공시설물 유형체계_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위주 분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등은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시설물의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위주로 지침을 적용한다.

② 공공공간

분류	세부항목
녹지공간(1종)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수공간(1종)	분수(벽천분수, 바닥분수, 워터스크린 등) 공간, 인공폭포, 기타 심미성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연못, 수로 등의 수공간
보행공간(1종)	광장(공공건축물 부속광장, 자전거광장, 인라인광장 등을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

[표]공공시설물 유형체계_공공공간

③ 공공건축물

분류	세부항목
소규모 공공건축물(4종) (1,000㎡ 미만)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치료·치료시설과 공공업무수행·주민공동이용시설), 기타 아동·노인 관련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생, 수련시설 등)

[표]공공시설물 유형체계_공공건축물

④ 공공매체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3종)	간판(가로형, 지주형, 돌출형 등), 디지털영상매체, 안내판(종합안내, 방향안내, 위치안내, 시설안내 등)
시각이미지(3종)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그림문자·서체·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공공미술(2종)	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

[표]공공시설물 유형체계_공공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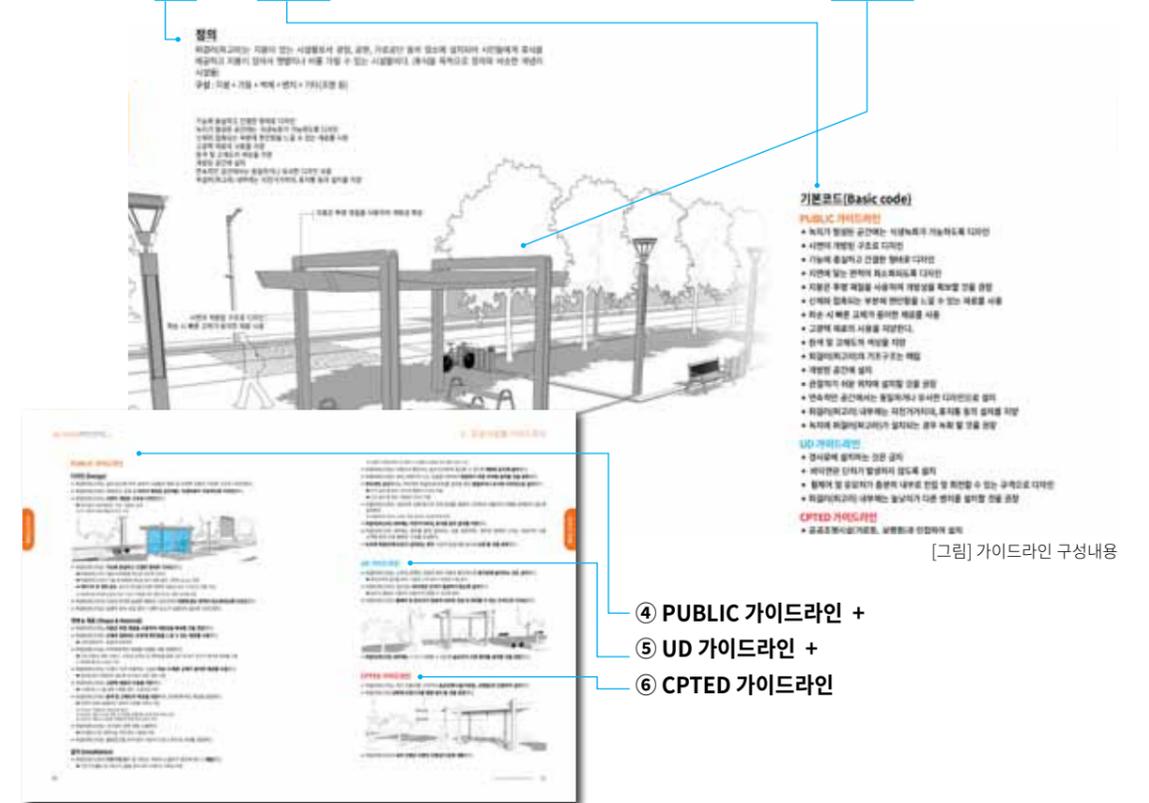
5.3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구성

[구성목적]

- 제천시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방향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다.
- 공공시설물 개발의 주체와 공공시설물 사업 시행 시기의 차이에 의해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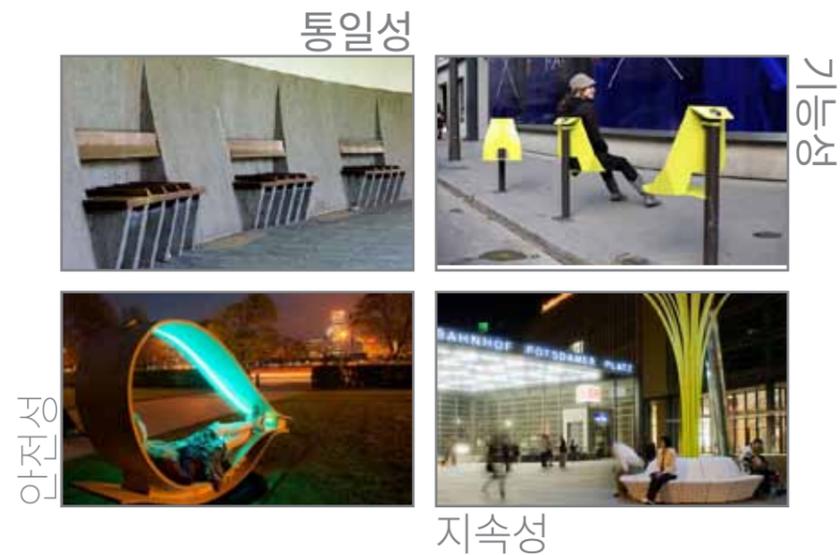
① 정의 + ② 기본코드(필수조건 : Public 가이드라인+ UD 가이드라인+ CPTED 가이드라인) + ③ 이미지(공간적 시각화)



5.4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공공시설물]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의 시설물을 통해 도시 경관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디자인
가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배치, 규모, 형태 등의 시설물 간의 통합을 이루는 디자인
기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없는 디자인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용이하며 확장성이 보장되는 디자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시각적 안정감, 심리적 편안함, 사용자에게 안전한 디자인



[그림]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공공공간]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단절없는 접근성을 가진 디자인
모두에게 친절하고 심리적 편안함과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주변 공간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디자인
공공의 용도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디자인
기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없는 디자인
시설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변 경관과 공유되는 디자인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의 시설물을 통해 도시 경관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디자인
가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배치, 규모, 형태 등의 통합을 이루는 디자인



[그림] 공공공간 기본방향

[공공건축물]

사람에게 친절하고 시각적 안정감과 심리적 편안함을 주는 디자인
공적 사용과 커뮤니티 활동을 보조하는 디자인
기존의 획일적인 공공건축물 이미지에서 탈피, 다양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디자인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관(재료 및 색상)등의 디자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용이한 디자인
주변 공간과 조화될 수 있는 (조경요소, 담장, 주차장 등의 옥외공간) 요소를 적극적으로 흡수한 디자인
자연요소를 적용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율을 확보하고 시각적 개방감 등을 확보하는 디자인



[그림] 공공건축물 기본방향

[공공매체]

근·원거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 이용자들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하는 디자인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디자인
부차적인 수단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행위가 최소화되는 디자인
시각 외에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
기능적으로 친절하고 시각적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변화하는 정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하나의 정보로부터 다음 정보까지 연속적으로 인지되는 디자인



[그림] 공공매체 기본방향

5.5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5.5.1 색채계획 개요

제천시 공공시설물의 색채계획은 '2018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의 색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한다. 경관 색채 분석을 통한 권역별 권장 색상 범위를 참고하여 주조색 및 보조색에 적용하고 제천시의 상징 색상을 강조색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배색한다.



[그림] 제천시 상징색

5.5.2 경관 권역별 색채 범위

1) 제천시 경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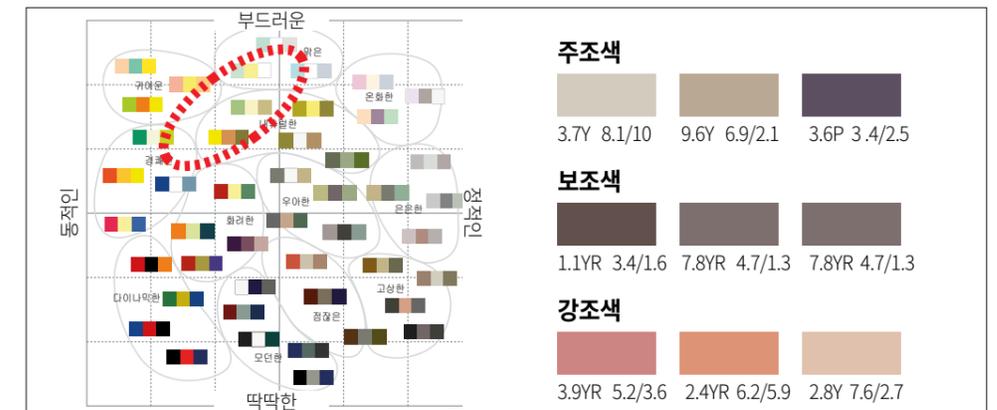
제천시 경관유형은 '2018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의 계획에 따라 수변경관, 산지경관, 도심경관으로 구분한다.



2) 경관 유형별 색채 적용 기준

① 도심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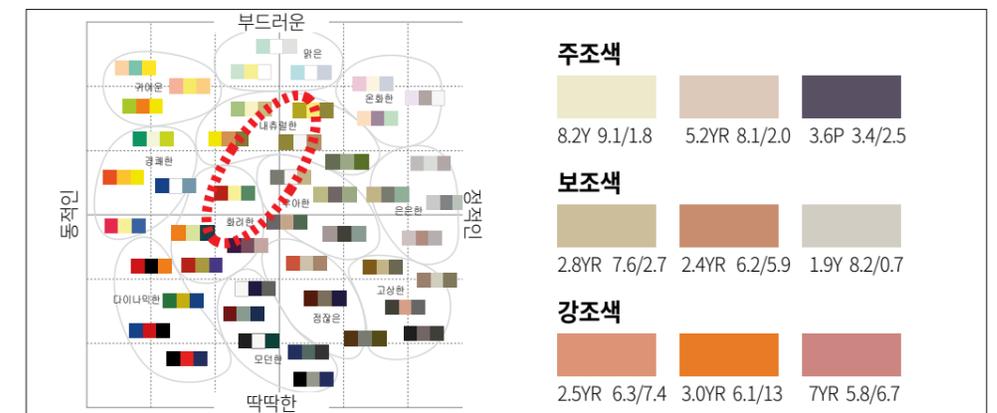
주변 산지로 인해 계절의 색채 변화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어 지역 색채를 건축, 시설, 구조물에 반영하여 제천의 정체성 제고



추출한 지역 색채를 활용한 배색 / 부드럽고 온화한 배색 이미지

② 수변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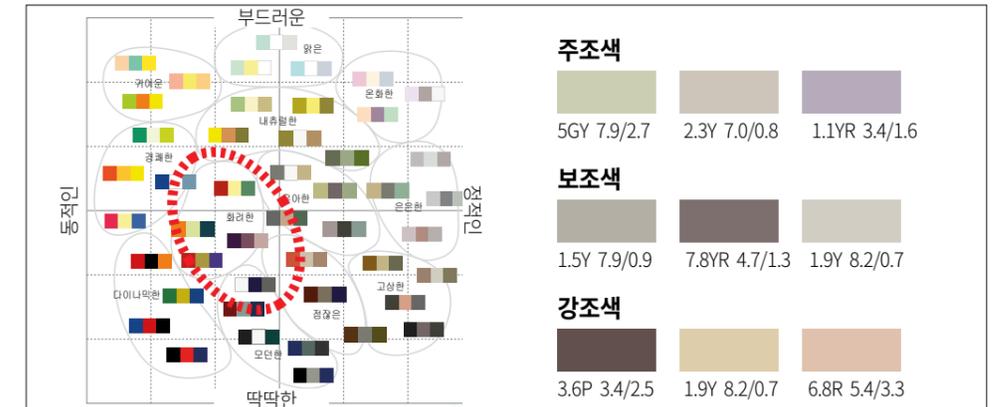
수변경관의 청량감은 우수하지만 차갑고, 변화가 적은 색채로 분포되어 있어 중·저채도의 난색계열 색채로 편안하고 경쾌한 이미지 구성



수변 농경지, 모래톱 색채 배색 / 강조색 일부는 브랜드 칼라 적용

③ 산지경관

기암괴석과 천연 숲의 색채가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환경으로 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 색채 구성



나무, 바위 등의 자연 색채 배색 / 내추려한 저채도 난색계열 배색

5.5.3 공공시설물 권역별 색채 범위

1) 제천시 공공디자인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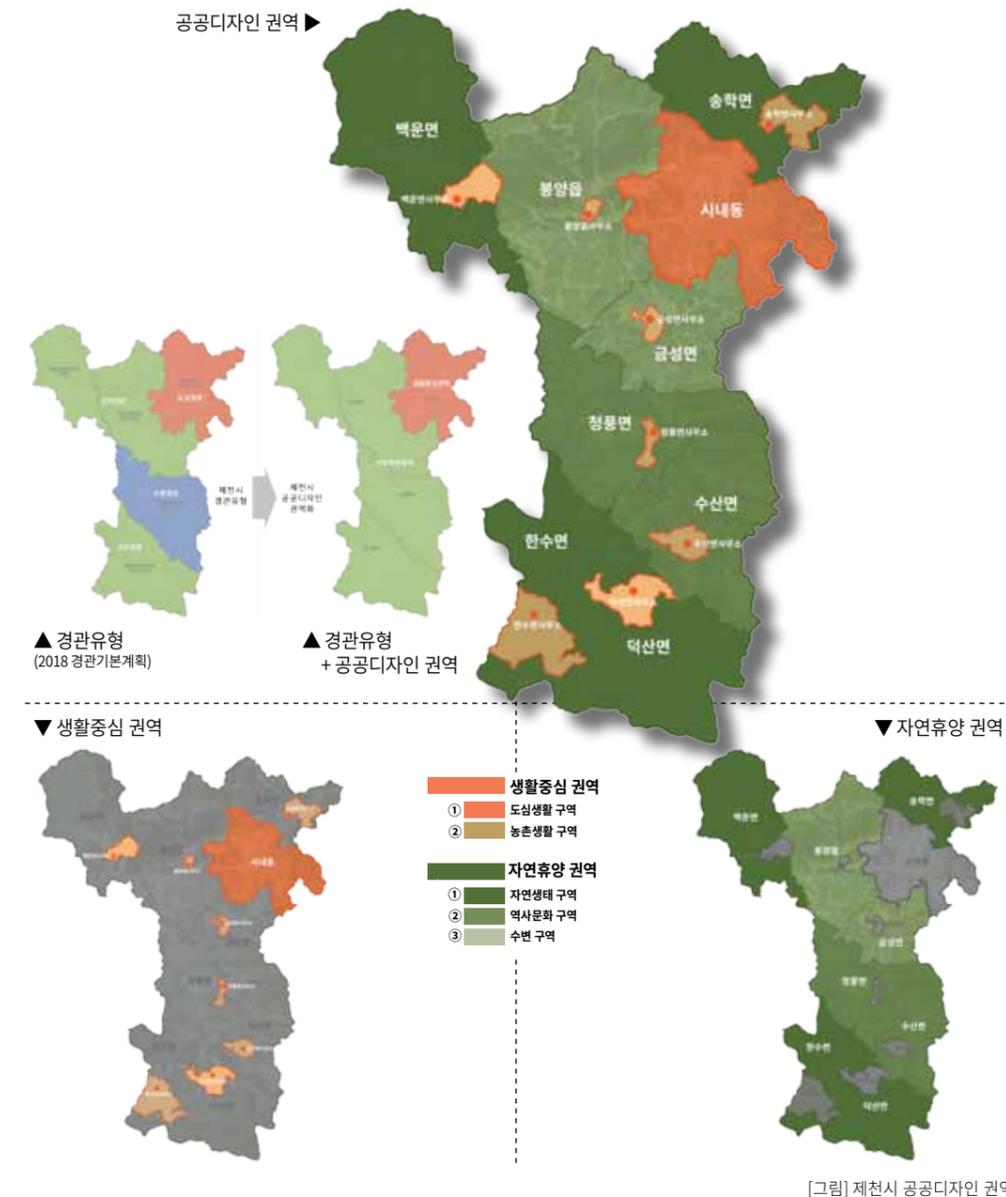
제천시 공공디자인 권역은 '생활중심 권역'과 '자연휴양 권역'으로 구분

① 생활중심 권역은 시내동과 각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구성

- ①-1 도심생활 구역 : 시내동 중심
- ①-2 농촌생활 구역 : 읍·면소재지 중심(백운, 봉양, 송학, 금성, 청풍, 수산, 한수, 덕산)

② 자연휴양 권역은 시내동과 각 읍·면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구성

- ②-1 역사문화 구역 : 봉양읍, 금성면
- ②-2 자연생태 구역 : 백운면, 한수면, 덕산면, 송학면
- ②-3 수변 구역 : 청풍면, 수산면



2) 권역별 공공시설물 색채 적용 기준

① 생활중심 권역

생활권 내에서 추출한 지역 색채를 활용한 배색, 부드럽고 온화한 배색 이미지

▪ DESIGN STORY

- 변화하는 / 활기찬(공간소통) / 안전한 / 편안한

▪ DESIGN 기준

- 형태 :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지주의 통합화, 장식적 요소 최소화 →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
- 재료 : 개방감을 주는 소재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소재

② 자연휴양 권역

수변 농경지, 모래톱 색채 배색 / 강조색 일부는 브랜드 칼라 적용
나무, 바위 등의 자연 색채 배색 / 내추럴한 저채도 난색계열 배색

▪ DESIGN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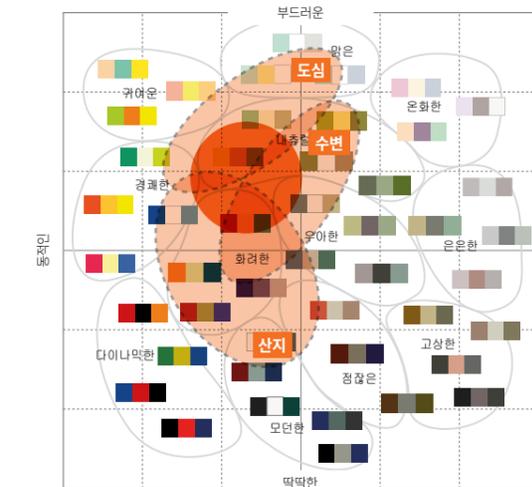
- 편안한 / 자연적인 / 전원적인

▪ DESIGN 기준

- 형태 : 간결한 형태, 대상지별 특화성 강조 (거점별 획일성 탈피)
- 재료 : 지속·재생 가능한 소재 및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

3) 제천시 공공시설물 색채 가이드라인

제천시 공공디자인 권역인 '생활중심 권역'과 '자연휴양 권역'의 주조색과 보조색은 같은 배색을 적용하며, 강조색만 제천시의 상징색(브랜드 색상)을 다르게 적용한다.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는 다음과 같은 색상 범위에서 적용한다.

- 주조색과 보조색은 모든 권역(생활중심 권역+자연휴양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

- Y/YR/R 계열의 강조색은 생활중심 권역에 적용하고, GY/B 계열의 강조색은 자연휴양 권역에 적용

주조색

10YR 3/1	3.75Y 3/4	5YR 5/2
10YR 5/2	1.75B 6/2	N 6/0
N 8/0		

보조색

1.25Y 5/6	10YR 3/6	2.5Y 6/2
5YR 4/1	10R 5/1	N 4/0
5Y 8/2		

강조색

8.75GY 6/10	6.25GY 8/10
2.5YR 6/16	10Y 9/6
7.5B 7/10	2.5R 5/18

[그림] 제천시 공공시설물 적용 색채



I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1. 공공시설물
2. 공공공간
3. 공공건축물
4. 공공매체

II.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1. 공공시설물

1.1 개요

정의

제천시 공공디자인에서 공공시설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용자: 특정 계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
- ② 장소: 공공의 영역에 설치(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개공지, 가로공간 등)
- ③ 주체: 공공기관 및 기타 공공성을 띤 유사 단체가 추진 및 관리
- ④ 구분: 대중교통시설물·보행안전시설물·편의시설물·녹지시설물·안내시설물

분류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분류는 대중교통시설·보행안전시설·편의시설·공급시설·녹지시설·안내시설물을 의미한다.

분류	세부항목
대중교통시설물(2종)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보행안전시설물(4종)	블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배수구 덮개, 공공조명(가로등, 보안등, 보행등, 공원 등, 수목등, 경관등 등)
편의시설물(5종)	벤치, 퍼걸러(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클린하우스
공급시설물(3종)	맨홀, 지중화시설(배전함, 제어함), 방재시설(소화전)
녹지시설물(2종)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안내시설물(3종)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표] 공공시설물 분류 항목

기본방향



[그림]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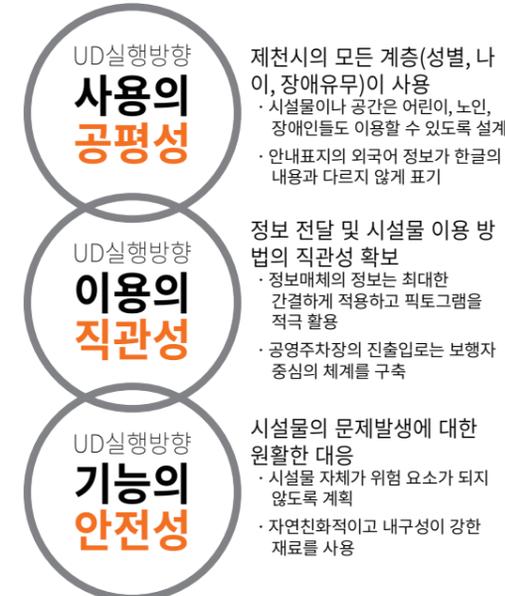
공공시설물 기본코드

- 표준디자인은 시설물 간 공통요소를 적용
 - 시설물 간 통일된 디자인을 접목
 - 중저채도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적용
- 사람의 손이 닿는 공공시설물의 모서리는 가급적 둥글게 처리
 - 사용에 위협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한 디자인
 - 신체가 닿는 부분은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
- 교통약자의 신체 규격을 고려한 디자인
- 간결하고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지향
 - 장식적인 형태 및 슈퍼그래픽 지양
 -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 지향
- 시설물 설치 구역을 명확히 구분
 - 보행로 점유를 최소화
 - 개방적인 가로환경 조성
- 가로공간에서 지주시설물은 통합
 - 우선 설치된 시설물의 지주를 공유
- 공공시설물의 기초 구조는 매립
 - 보행자의 안전 확보
 - ※ 제천시는 좁은 보행로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보행폭 확보가 시급한 상황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도로 및 부착 방지 시트를 적용

UD / CPTED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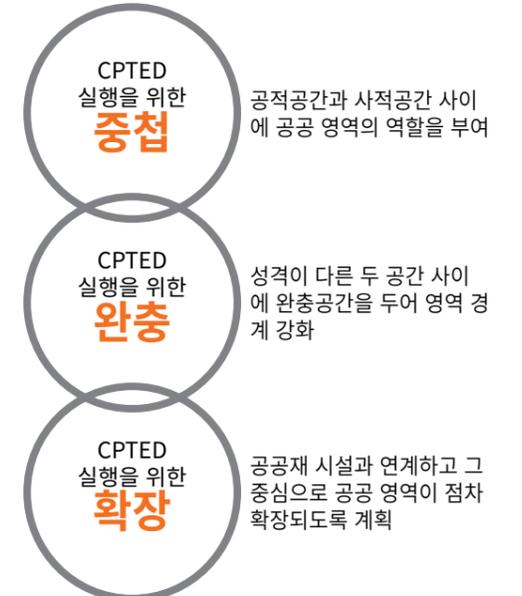
제천시 UD(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천시 UD(Universal Design) 7대 원칙 중에서 '사용의 공정성, 이용의 직관성, 기능의 안전성'을 중점으로 적용



제천시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제천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6대 원칙을 공간의 역할에 단계적으로 적용



1.2 대중교통시설물

버스·택시 승강장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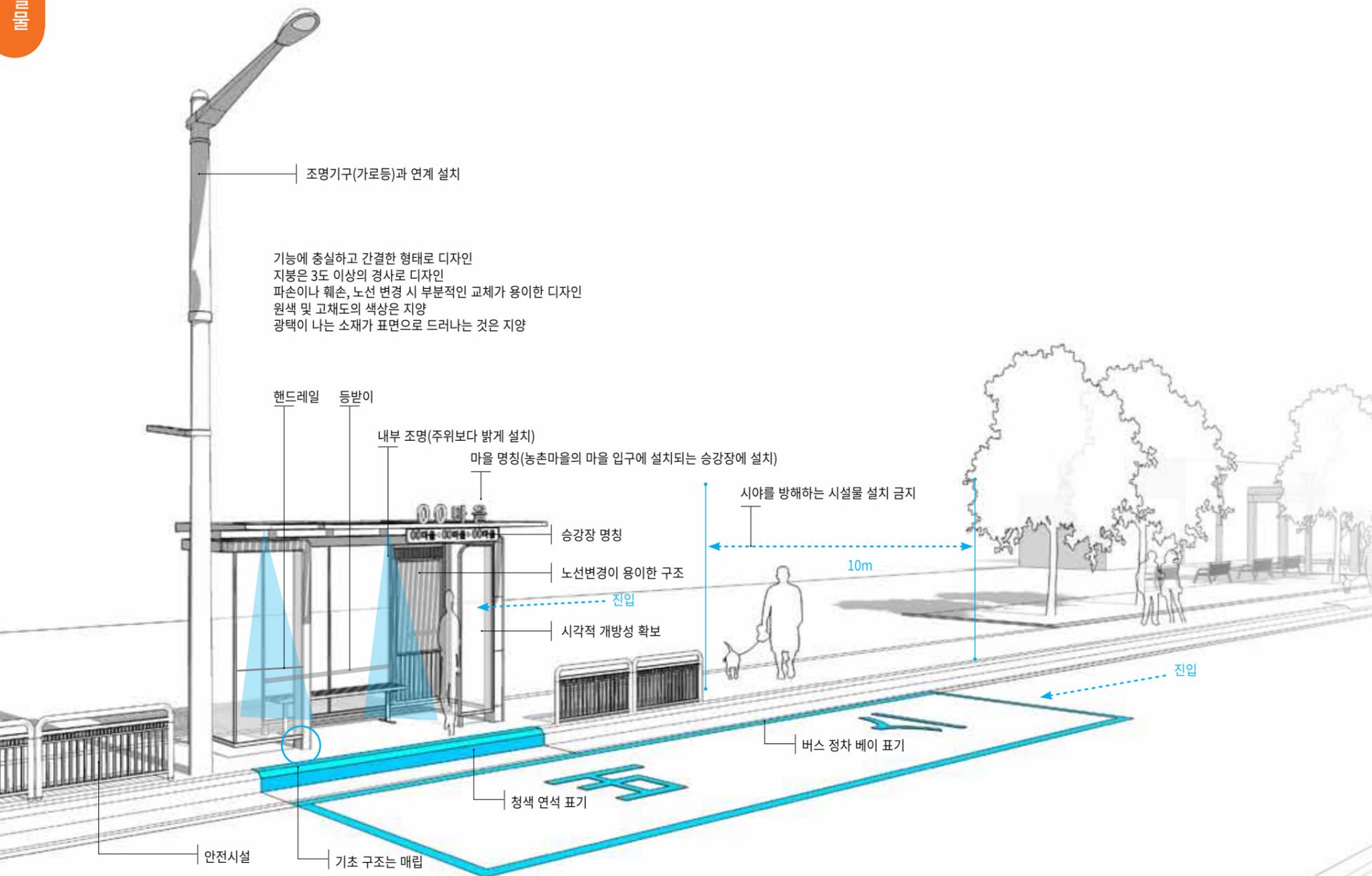
버스·택시 승강장은 버스·택시 정류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시민들이 지정된 정류장임을 인지하고, 버스를 대기하는 동안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버스 노선을 비롯한 교통 정보를 얻는 쉼터형의 시설물이다.

구성: 지붕, 벽체, 의자, 광고판, 조명, 교통 정보시스템(노선 및 미디어 패널)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진입 방향은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구조로 디자인
- 지붕은 3도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디자인
- 파손이나 훼손, 노선 변경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 승강장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청색 연석을 표기
- 승강장은 조명기구(가로등 및 보행등)와 연계 설치
 - ➔ 내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할 것
- 승강장 주변에 시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
 - ➔ 금지구간: 승강장 10m 이내
- 농촌지역 승강장은 마을의 진입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명기구와 병행 설치

UD 가이드라인

- 개구부는 휠체어 및 유모차가 충분히 통과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장애인 대기공간 표기
- 시각정보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 교통약자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
- 기대어 기다릴 수 있는 등받이도 설치
- 승강장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청색 연석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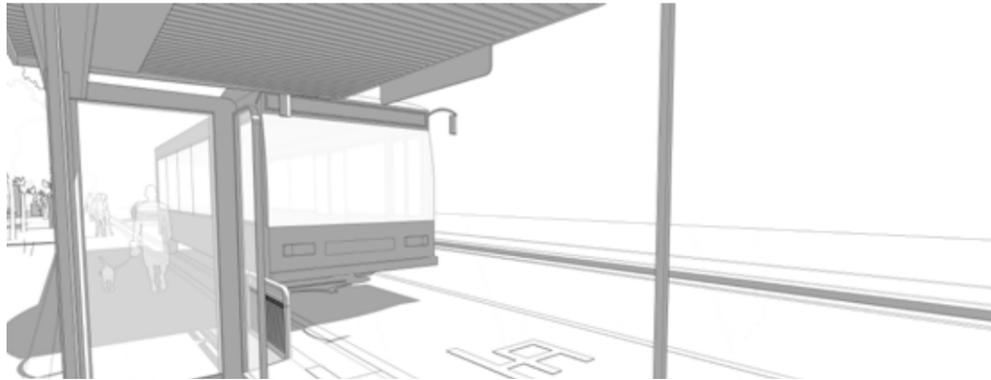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내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설치
- 농촌지역의 마을입구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마을의 진입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
- 벽체는 개방성이 있는 투명 재료 사용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승강장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승강장의 버스 진입 방향은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구조로 디자인한다.
 - 시설물(광고판, BIT 등)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



- 승강장의 지붕은 빗물이나 눈 쌓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3도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디자인한다.



- 승강장은 파손이나 훼손, 노선 변경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한다.
- 승강장의 지붕의 높이는 지면에서 2.4m 이상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승강장은 최근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피공간으로 기능 수행을 권장한다.
 - ※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피공간 : 미세먼지 대피공간 / 폭염·혹한기 대피공간
 - 형태 : 밀폐형 승강장
 - 시설 : 냉·난방기, 미세먼지 저감장치, 에어컨, 조명, 비상벨 등



- 승강장은 부피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점유율 감소 지향 : 기능시설(조명, 안내사인 등) + 벽체 및 지붕과 일체형으로 디자인
- 승강장 내·외부에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슈퍼그래픽 사용을 지양하고, 구조와 기능을 강조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승강장 내·외부에는 시를 상징하는 특정 이미지의 부착이나 설치를 최소화한다.
 - 시 로고 / 명칭 등은 일정 위치에 공통적으로 적용
 - 전체 면적의 10% 이내로 설치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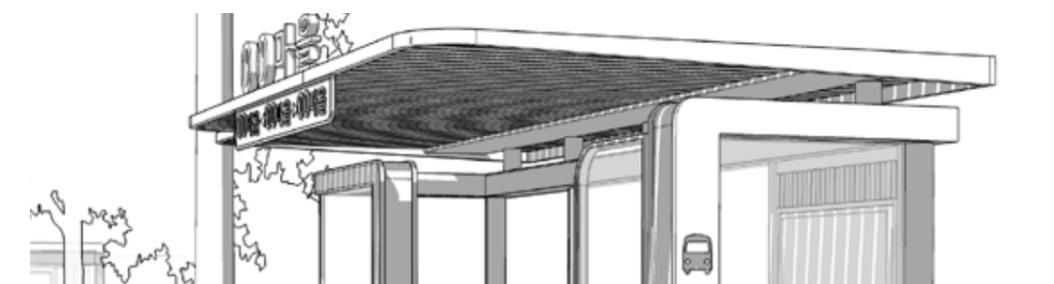
- 승강장의 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승강장의 주조색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승강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승강장의 기둥과 지붕의 재료는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벽체는 개방성이 있는 투명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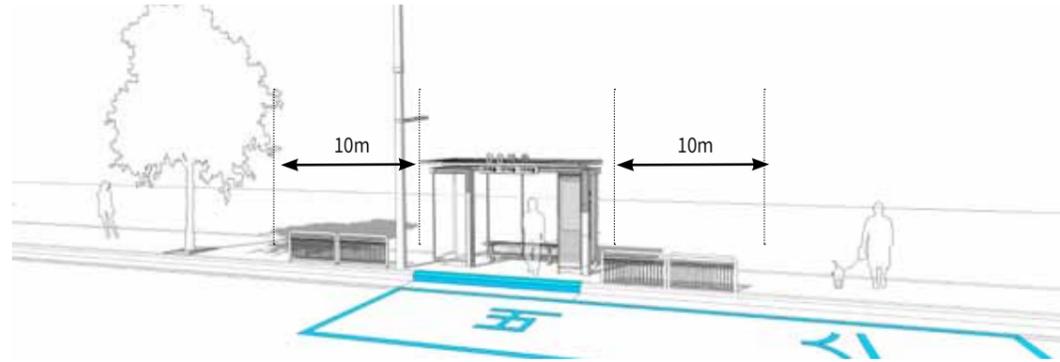
- 승강장의 지붕은 자외선 차단이 용이한 마감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승강장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 승강장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승강장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승강장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청색 연석을 설치하여 대상지가 승강장임을 명확히 한다.
 - 농촌지역에 설치할 경우 : 청색 연석 + 청색 라인 버스 대기공간을 병행 설치
- 승강장은 조명기구(가로등 및 보행등)와 연계 설치한다.
 -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내부에 조명기구를 설치
 - 내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할 것



- 버스·택시 승강장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금지구간: 승강장 10m 이내



- 승강장 설치 구간은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 농촌지역의 마을입구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마을의 진입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명기구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 설치 기준: 버스 승강장 + 가로등(버스 승강장 좌우로 10m 간격으로 5개의 가로등 or 보안등 설치)
→ 버스 승강장에는 마을명을 채널사인 형식으로 설치
- 가로공간의 규모, 보행 유효공간을 고려하여 승강장의 설치 규모를 조정한다.
- 승강장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 유효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 보행폭이 2m 이하 지역: 역상형 버스 승강장 설치
- 승강장의 안내표지는 승강장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버스·택시 승강장 없이 안내표지판만 설치할 경우 노선에 대한 정보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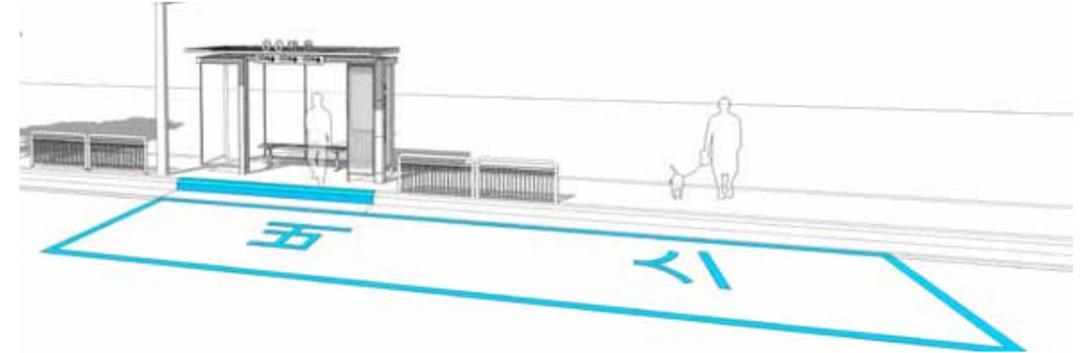


- 승강장은 주기적으로 청소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UD 가이드라인

- 승강장 내부로 진입하는 개구부는 휠체어 및 유모차가 충분히 통과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개구부의 너비 최소 0.8m 이상
- 승강장 내부에는 장애인 대기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대기공간 표기를 권장한다.
- 승강장의 시각정보는 가독성이 좋아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차도와의 경계부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승강장의 폭에 따라 선형블록이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적절히 유도
- 승강장 내부에는 임산부나 교통약자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를 권장한다.
- 승강장 내부에는 벤치 외에 기대어 기다릴 수 있는 등받이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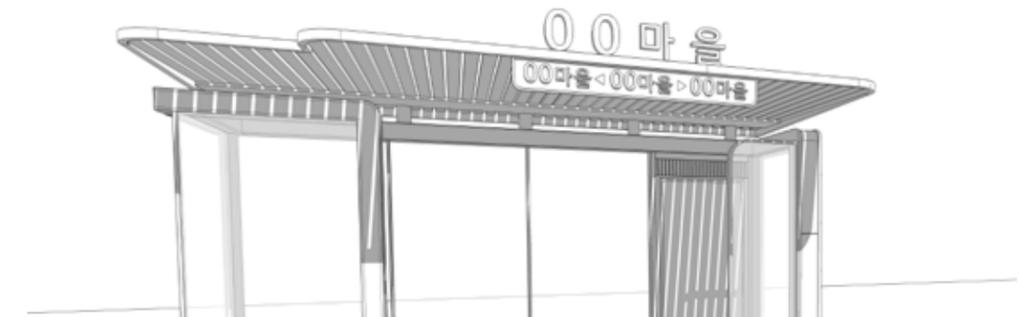
- 이용자의 다양한 행태를 고려해 디자인 적용
- 버스·택시 승강장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청색 연석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한다.
→ 청색 연석 설치 구간: 버스 8m 이상, 택시 6m 이상



- 보행로와 승강장의 지면은 단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승강장은 야간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한다.
→ 야간에 범죄 예방의 역할 수행
- 농촌지역의 마을입구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마을의 진입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한다.
→ 설치 기준: 버스 승강장 + 가로등(버스 승강장 좌우로 10m 간격으로 5개의 가로등 or 보안등 설치)
→ 버스 승강장에는 마을명을 채널사인 형식으로 설치



- 외부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벽체는 개방성이 있는 투명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사방에서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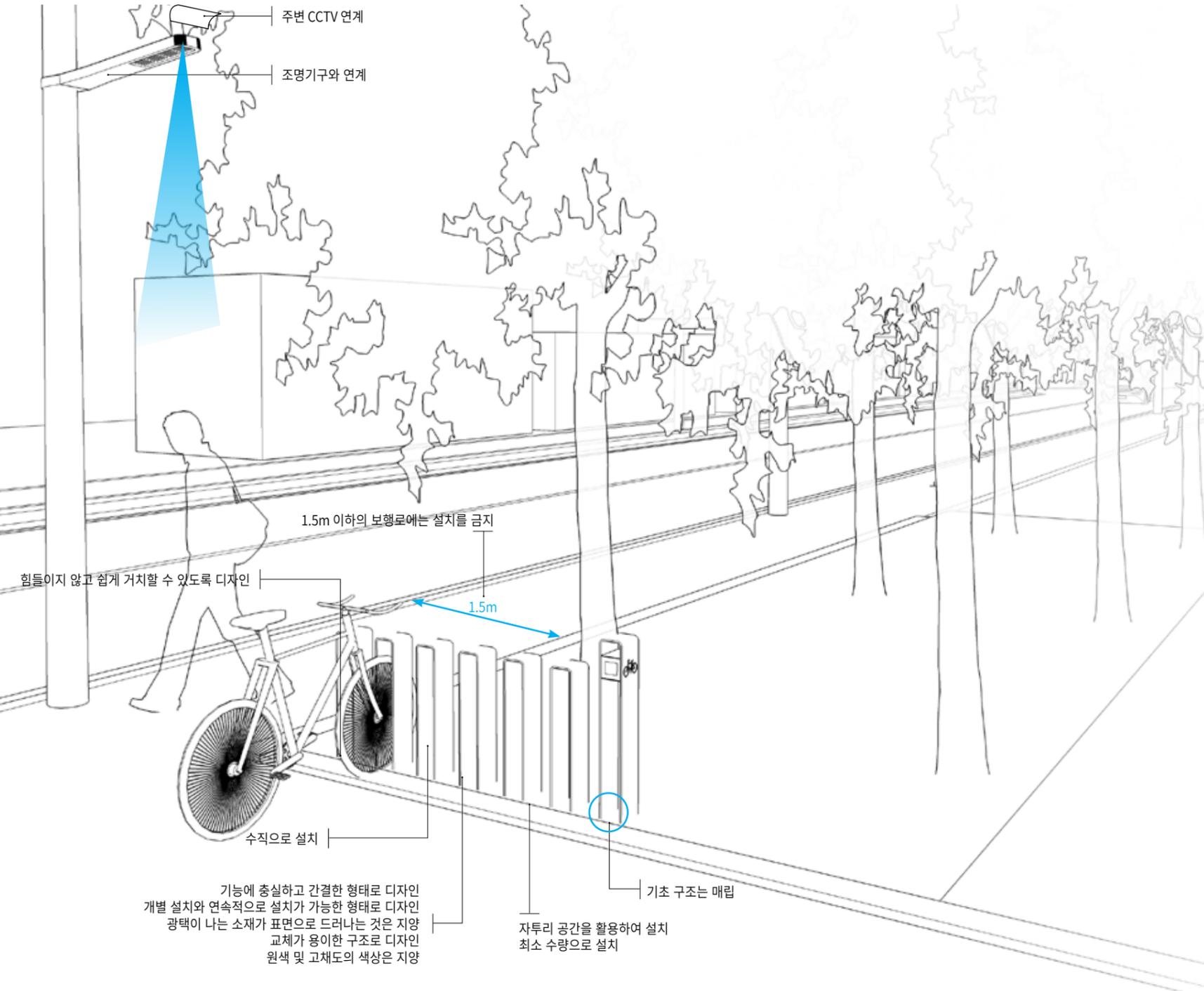
자전거 거치대

정의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를 일정 시간 동안 주차시키기 위해 거치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다.

자전거의 바퀴를 고정하기 위한 거치대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구성: 바퀴 고정 거치대 or 거치대 + 캐노피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개별 설치와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
-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
-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거치대의 기초 구조는 매립
- 가급적 필요한 곳에만 최소 수량으로 설치
-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 보행로 폭이 1.5m 이하의 보행로에는 거치대 설치를 금지
- 경사면 설치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

UD 가이드라인

- 노인과 어린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
 - ➔ 바퀴를 들지 않고 바닥면에서 밀고 당길 수 있도록 디자인

CPTED 가이드라인

- 캐노피 설치 시 사방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투명한 재료를 사용을 권장
- 조명기구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는 자전거 거치대는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디자인한다.
- 자전거 거치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 ➔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 ➔ 캐노피 설치 시 크기는 최소화
 - ※ 캐노피 설치 시 보행공간에서 제외
- 자전거 거치대는 **개별 설치와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설치 규모의 조정이 용이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 ➔ 모듈형 디자인 권장



- 자전거 거치대는 시공이 용이하고, 파손이나 훼손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 모듈형 구조로 디자인
- 자전거 거치대는 구조나 규격을 모듈화하여 다른 지주시설물과 지주를 공유하거나 통합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디자인한다.
 - ➔ 편의시설물과 연계 및 통합: 벤치, 앉음벽 화단, 퍼걸러(파고라) 등
 - ➔ 공공조명과 연계 및 통합: 가로등, 보안등 등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자전거 거치대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한다.
 -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 자전거 거치대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 ※ 주조색: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 보조색: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 강조색: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자전거 거치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자전거 거치대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자전거 거치대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자전거 거치대는 최대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도로, 대중교통과 연계된 곳, 육교, 교량 등 구조물의 하부, 공지 등
- 자전거 거치대는 **보행로 폭이 1.5m 이하의 보행로에는 거치대 설치**를 금지한다.
- 자전거 거치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 기성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형태와 유사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

-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이용량에 따라 설치 규모를 조절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필요한 곳에만 최소 수량으로 설치**한다.
 - ➔ 장소가 협소한 장소(가로변 보도 등): 캐노피가 없는 자전거 거치대
 - ➔ 장소가 비교적 넓은 장소(광장, 공원, 건축물 공개 공지 등): 캐노피가 있는 자전거 거치대 or 캐노피가 없는 자전거 거치대
 - ➔ 캐노피 설치 시: 크기 최소화, 투명한 재료를 사용
- 자전거 거치대는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해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의 조명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 휴게공간과 함께 설치할 경우 보안등 + CCTV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UD 가이드라인

- 자전거 거치대는 **뾰족하거나 표면이 거칠지 않아야** 하며, 좌우 양손을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한다.
 - ※ 거치대는 자물쇠로 잠그는 경우가 대부분
- 자전거 거치 시 **노인과 어린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 바퀴를 들지 않고 바닥면에서 밀고 당길 수 있도록 디자인



- 보행로에 설치하는 자전거 거치대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 크기**로 디자인한다.
 - ➔ 보행로 설치: 캐노피 병행 설치 지양

CPTED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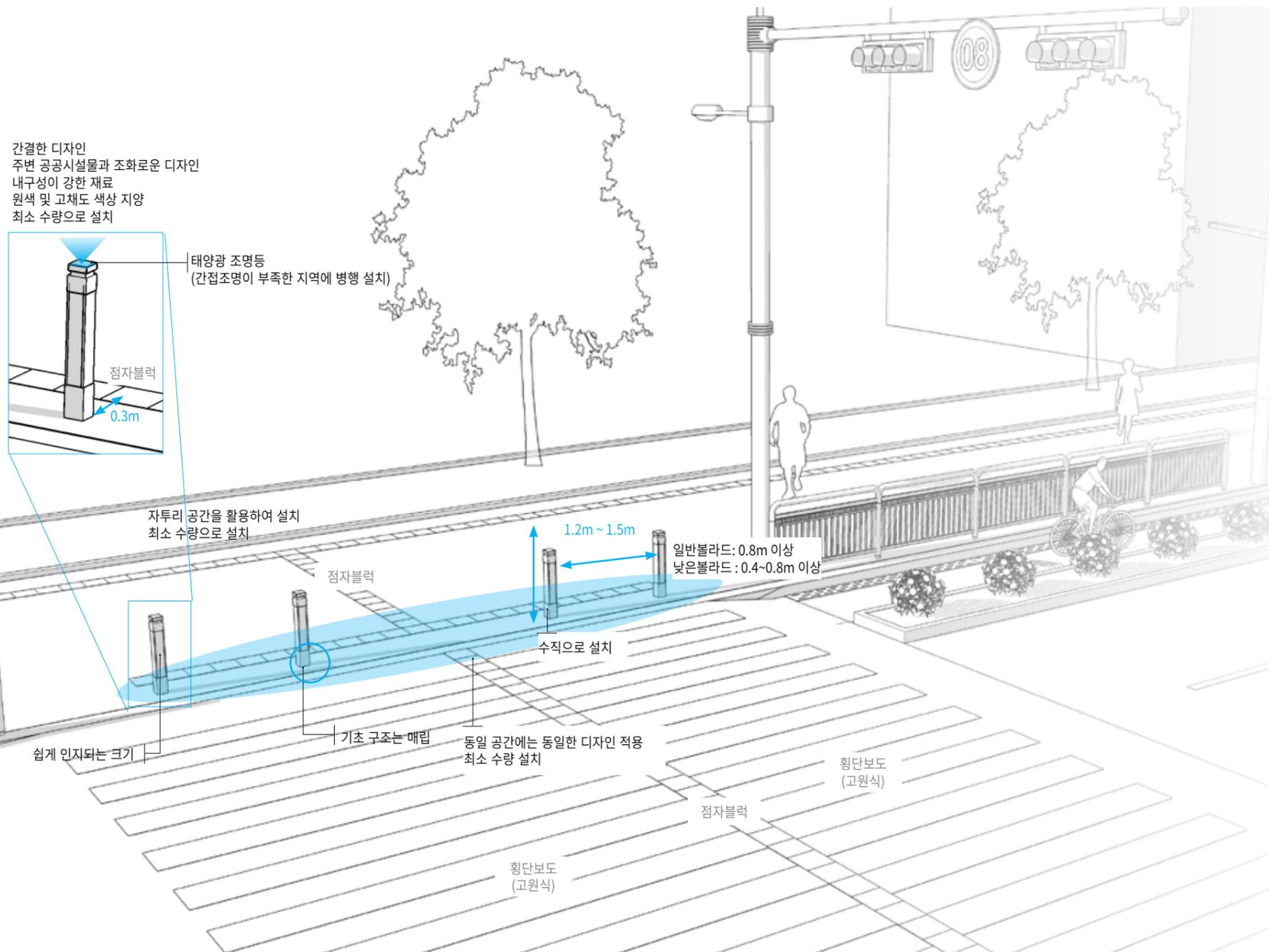
- 자전거 거치대에 **캐노피 설치 시** 사방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CCTV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연계하여 설치한다.
 - ➔ CCTV 병행 설치 기준: 거치대 30면 이상
- 자전거 거치대는 **조명기구(가로등 및 보행등)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도난방지를 위해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주변에 설치를 권장
 - ➔ 캐노피가 설치된 거치대: 캐노피에 조명기구를 매입
 - ※ 야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

1.3 보행안전시설물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정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며,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말뚝 형태의 보행안전시설물이다.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1.2~1.5m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 최소 수량으로 설치
- 횡단보도,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저지해야 할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
- 기초 구조는 매립
- 경사면 설치시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
-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 보차 혼용도로,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낮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를 권장

UD 가이드라인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전면 점자블럭 설치
 - ➔ 점자블럭 설치 위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전면 0.3m 전방
- 점자블럭 밖에 설치

CPTED 가이드라인

- 간접조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조명 적용
 -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상부 및 바닥면에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권장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에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 지역 + 조명 설치 지역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조명 설치
 - 조명: 태양광 조명 사용 권장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의 일반적인 규격은 H0.8m~1m, 폭 0.1~0.2m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조색: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강조색: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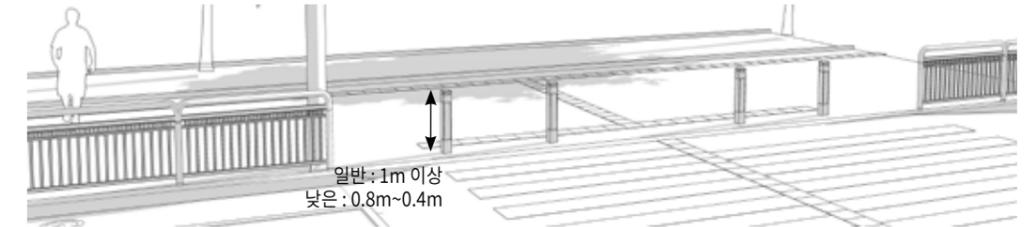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1.2~1.5m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 휠체어 이용자 및 유모차 이용자들이 교행이 용이하도록 설치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가급적 필요한 곳에만 최소 수량으로 설치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횡단보도,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저지해야 할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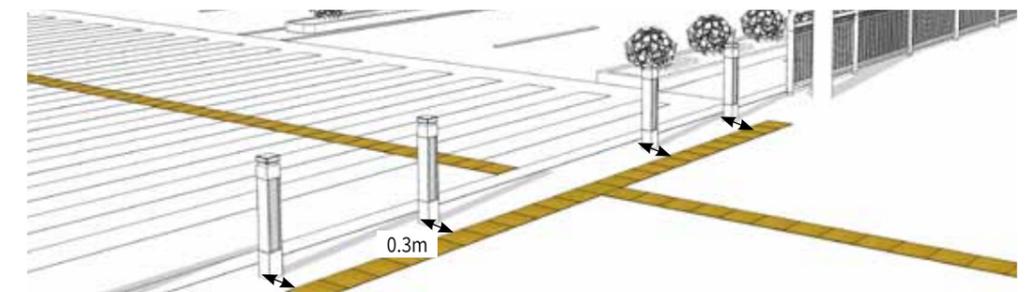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경사면 설치시 지양하며,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사람 또는 차량 이동 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보차 혼용도로,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낮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를 권장한다.
 - 일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규격: 0.8m 이상
 - 낮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규격: 0.8~0.4m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점자블록 위에 설치를 금지한다.

UD 가이드라인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상단에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탄성 소재)를 사용을 권장한다.
 - 보행자와의 충돌시 충격 흡수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전면에 점자블록이나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하여 보행약자(휠체어, 유모차,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이 확보도록 한다.
 - 점자블록 설치 위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전면 0.3m 전방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점자블록 밖에 설치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간접조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야간에 시야 확보를 도와주고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명 적용을 권장한다.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상부 및 바닥면에 태양광 조명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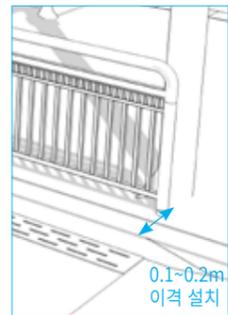
펜스

정의

펜스는 울타리라는 의미로 서로 다른 공간의 경계를 구분하여 위험 요소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이다.
구성 : 가로부재 + 세로부재 + 기타(부착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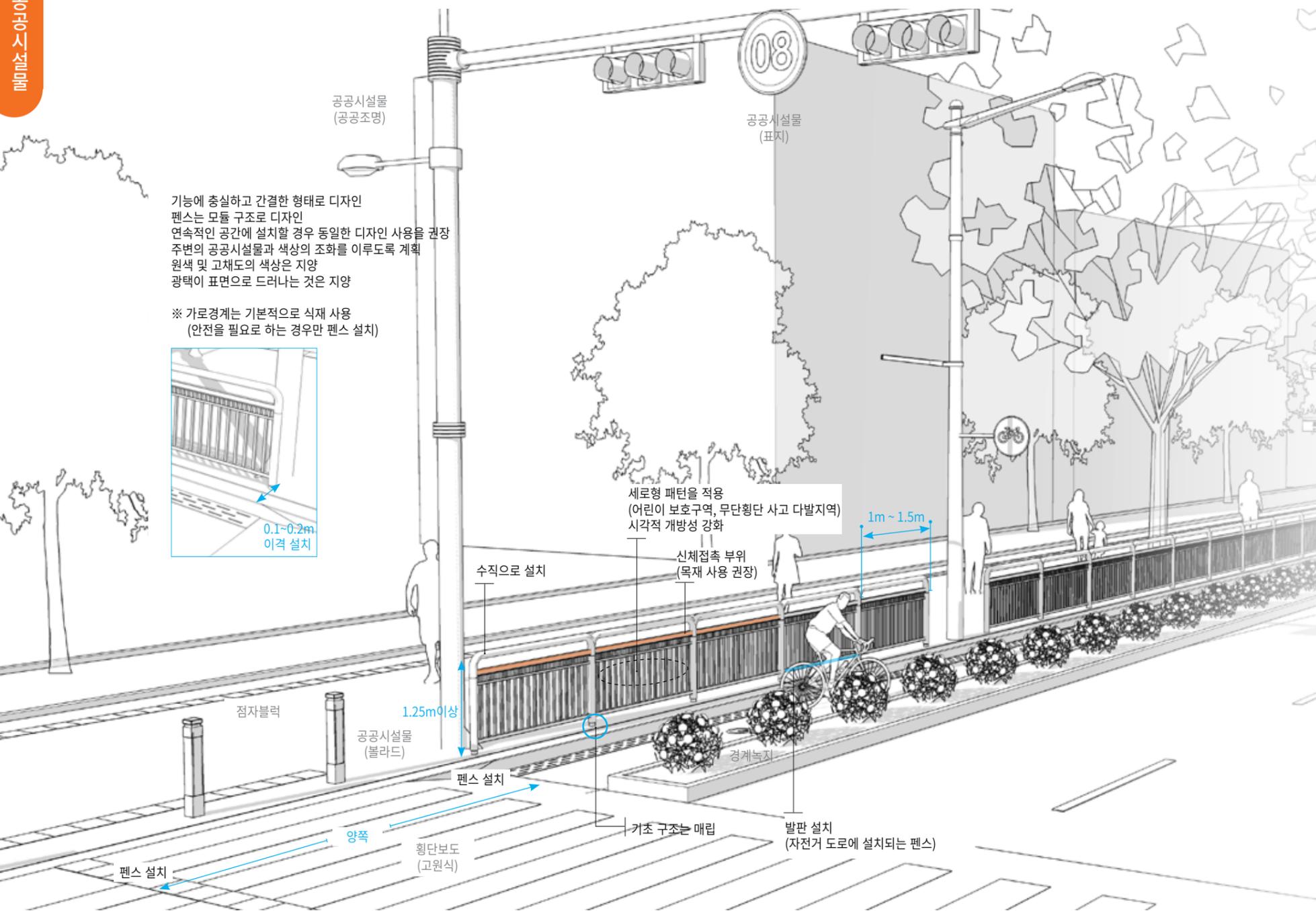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펜스는 모듈 구조로 디자인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광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가로경계는 기본적으로 식재 사용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펜스 설치)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개방성을 강화
-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 펜스는 모듈 구조로 디자인
 - ➔ 모듈 규격 : 가로 1~1.5m * 세로 1.25m 이상
 - ➔ 무단횡단·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격 ; 1.5m 이상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가로경계는 기본적으로 식재 사용,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안전펜스를 설치
- 펜스는 신체와 접촉하는 상부에 자연친화적인 소재 사용을 권장
-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지면과 수직 및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
-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
-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UD 가이드라인

-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은 세로형 패턴을 적용
-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는 펜스는 발판 설치를 권장

CPTED 가이드라인

-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보행로 경계부분에 설치
-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펜스를 권장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펜스는 가로변에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개방성을 강화**한다.
- 펜스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 펜스는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모듈 구조로 디자인한다.
 - ➔ 모듈 규격: 가로 1 ~ 1.5m * 세로 1.25m 이상
 - ➔ 무단횡단·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격: 1.5m 이상
 - ※ 특화시설로 디자인할 경우: 2m 이하로 디자인
- 펜스는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 펜스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 ➔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 ➔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 펜스는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가로경계는 기본적으로 식재 사용을 권장하며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안전펜스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펜스는 신체와 접촉하는 상부는 내구성 뛰어난 자연친화적인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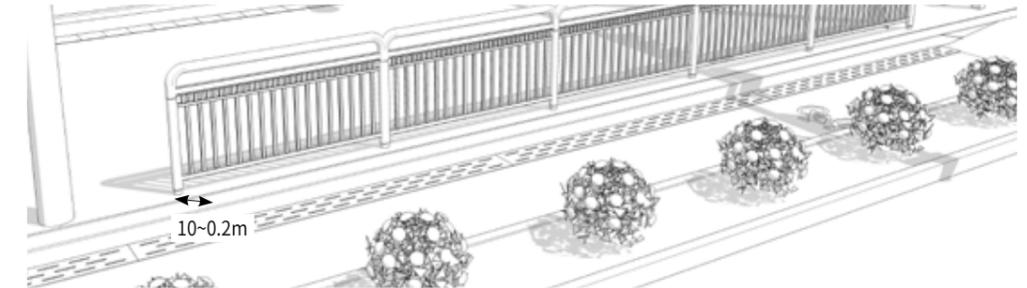


- 펜스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한다.
 -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 펜스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 주조색: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 보조색: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 강조색: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펜스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펜스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펜스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 경계 펜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에는 야간에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반사체(반사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펜스의 부재는 **지면과 수직 및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 ➔ 경사면: 세로부재-수직 설치, 가로부재-수평 설치
- 펜스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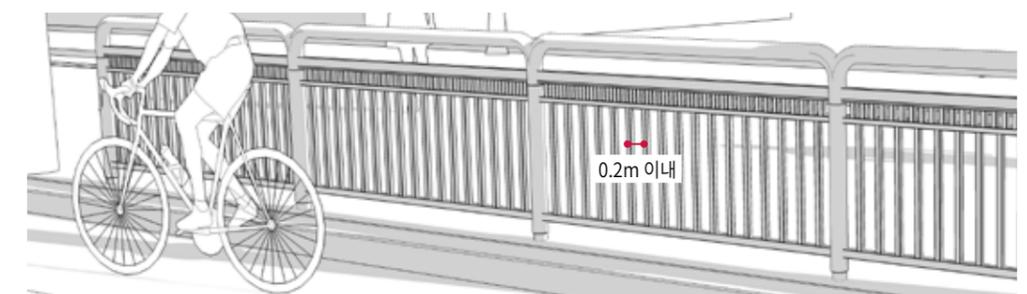
- ➔ 불가피하게 너트, 볼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가로변에 설치하는 펜스는 보차도 경계부분의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 ➔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경계석에 접해서 설치
 - ➔ 경계석 위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지지대의 앵커 볼트에 커버를 설치



- 펜스는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한다.
- 펜스가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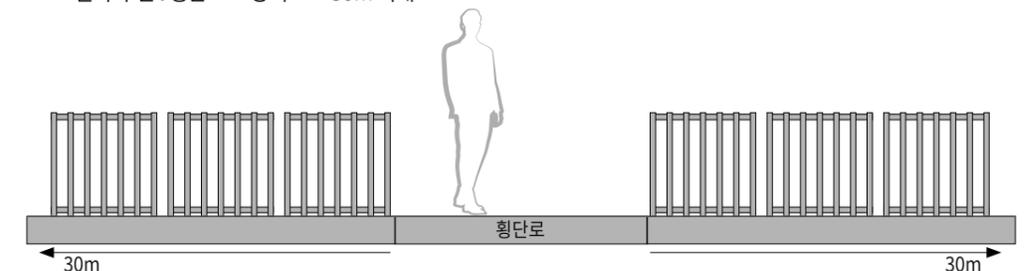
UD 가이드라인

-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펜스는 반드시 **세로형 패턴**을 적용한다.
-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는 펜스의 경우, 자전거가 정차하는 위치에서 **발판 설치**를 권장한다.
- 펜스의 부재 사이는 어린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간격을 조정한다.
 - ➔ 펜스 간격: 0.2m 이내



CPTED 가이드라인

- 펜스는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보행로 경계부분에 설치**한다.
 - ➔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한 범죄
 - ➔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자연감시가 취약한 가로변
 - ➔ CPTED를 적용한 펜스를 사용하거나 시인성을 높이는 패턴을 적용
 - ※ 제천시 CPTED 가이드라인 적용
- 안전사고 및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펜스**를 권장한다.
 - ➔ 설치 구간: 횡단보도 양쪽으로 30m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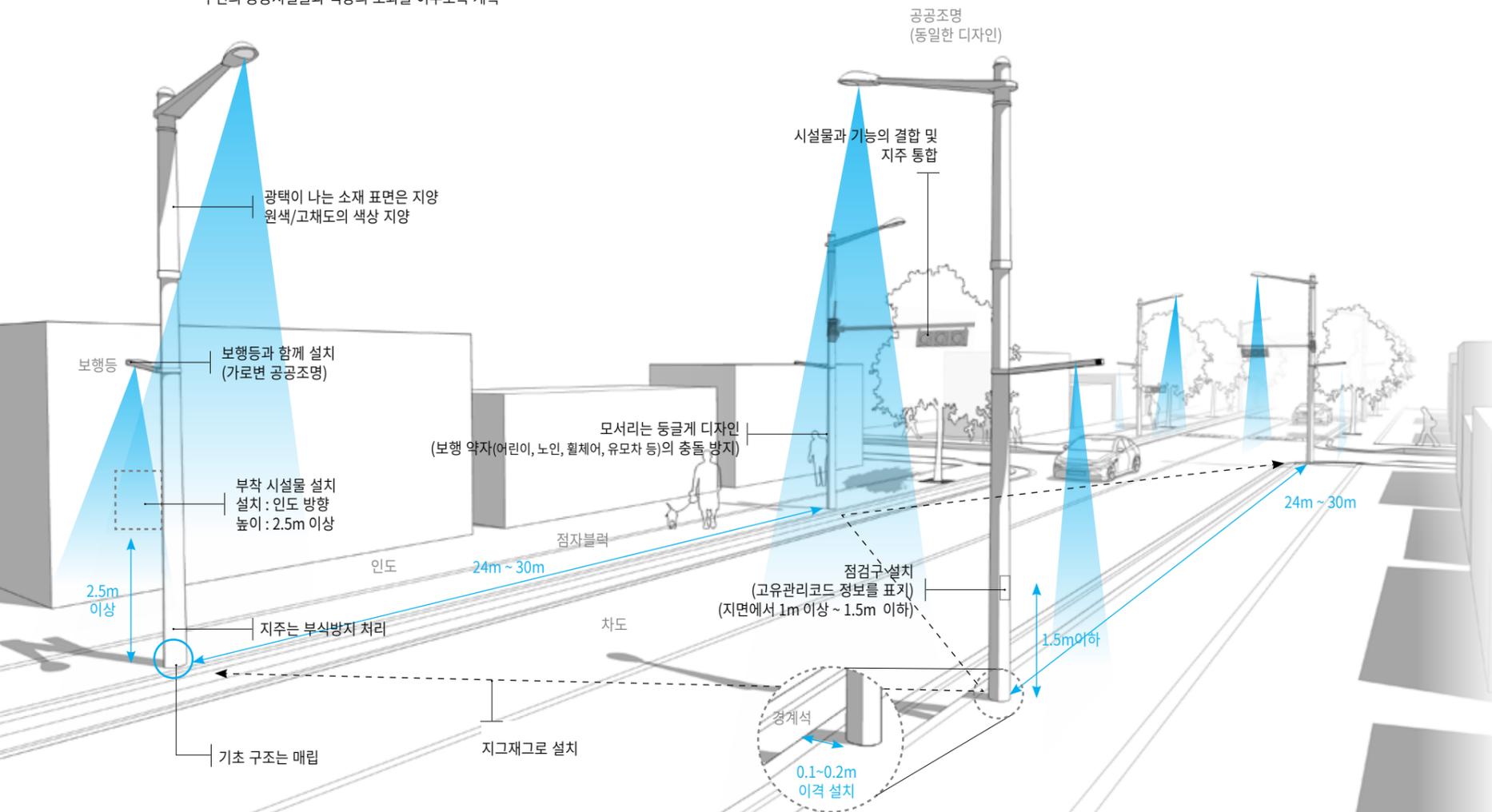
공공조명

정의

공공조명은 가로변, 공원, 광장 하천변 등의 공적공간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해 빛을 비추는 조명 시설물이다. 공공조명에는 가로등, 보안등 등이 포함된다

구성: 헤드(램프) + 암(arm) + 지주 + 기초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 [가로등] [보안등]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할 것을 권장
- 고유관리코드 정보를 표기
- [가로등] [보안등] 고유관리코드는 점검구 커버를 활용
- 점검구는 서 있을 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디자인
 - ➔ 점검구 위치: 지면에서 1m 이상 ~ 1.5m 이하
-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지주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제작하며 스스로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는 재료를 사용
- [가로등] [보안등]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 [가로등] [보안등]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

UD 가이드라인

- [가로등] [보안등] 독립 지주형의 지주는 모서리를 등글게 처리
- [가로등] [보안등] 부착물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설치
 - ➔ 보행 약자(어린이,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의 충돌 방지
- 교차로, 횡단보도, 골목길 진입부에는 공공조명을 우선 설치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공공조명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 공공조명은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로 디자인한다.
- 공공조명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은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 CCTV + 표지판 + 안내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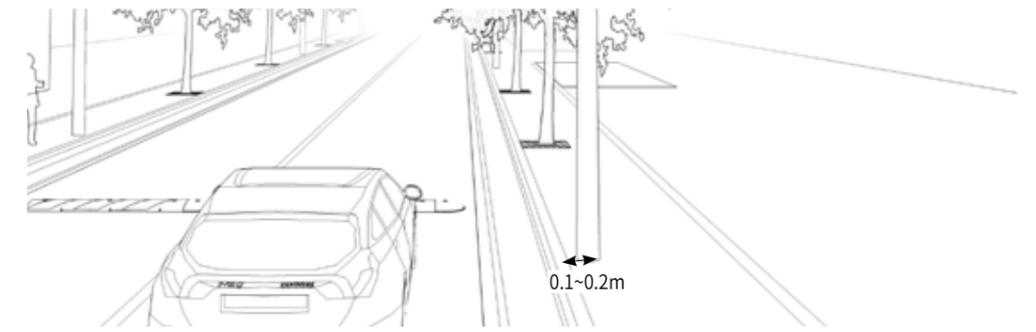
- 공공조명은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 공공조명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파손 시 빠른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의 상부의 헤드는 램프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되 불필요하게 비대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지주단면 대비 500% 이하
- 공공조명에는 고유관리코드 정보를 표기한다.
 - 정보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 [가로등] [보안등]** 고유관리코드는 점검구 커버를 활용
- 공공조명의 점검구는 서 있을 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디자인한다.
 - 점검구 위치: 지면에서 1m 이상 ~ 1.5m 이하
 - 점검구는 사람이 쉽게 만질 수 없도록 시거 장치(피스 조임 등)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공공조명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 공공조명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조색: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강조색: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공공조명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공공조명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공공조명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의 지주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스틸 또는 알루미늄)로 제작하며 스스로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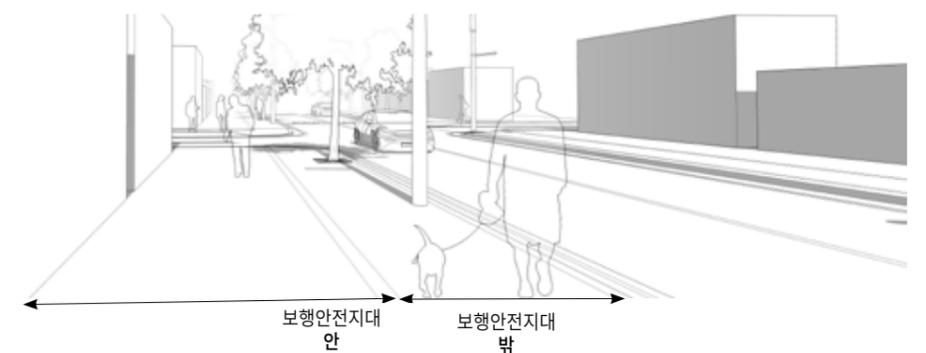
설치 (Installation)

-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Why?:**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 [가로등]** 가로등 배열은 다음 기준을 준용한다.
 - 한쪽 배열: 차도 폭이 가로등주의 높이와 같거나 좁을 경우
 - 지그재그 배열: 차도 폭이 가로등주 높이의 1~1.5배일 경우
 - 마주보기 배열: 차도 폭이 가로등주 높이에 비해 1.5배 이상일 경우
 - 중앙배열: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의 도로에 한쪽 배열로 간주
- ※ 관련규정: KSA 3701 도로 조명 기준
- [가로등] [보안등]** 가로변에 설치하는 공공조명은 보차도 경계부분의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경계석에 접해서 설치
 - 경계석 위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지지대의 앵커 볼트에 커버를 설치



UD 가이드라인

- [가로등] [보안등]** 독립 지주형의 공공조명은 지주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 약자(어린이,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의 안전을 배려
-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에 부착물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가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Why?:** 보행 약자(어린이,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의 충돌 방지
- 교차로, 횡단보도, 골목길 진입부에는 공공조명을 우선 설치하며 조도는 주위보다 밝게 계획한다.
 - 교차로: 교각부 4면에 모두 설치
- 공공조명은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한다.
 - Why?:** 보행 약자(어린이,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의 안전을 배려 및 제천시의 협소한 가로공간을 고려한 사항



배수구 덮개

정의

배수구 덮개는 배수구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격자 모양으로 배수구의 뚜껑에 쓰인다.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
주변 보도환경의 연속성을 고려한 디자인
보도용 덮개 재료는 주철을 사용한 구조체 권장

보행로 중심부에 설치 지양
홈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보행
안전 확보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 적용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게 설계

인도

자전거 도로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주변 보도환경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디자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 적용
 - ➔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 차도용 덮개 재료: 주철 권장
- 보도용 덮개 재료: 주철을 사용한 구조체 권장
- 보행로 중심부에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로의 양 측면에 설치
-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
- 보도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

UD 가이드라인

-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게 설계
- 패턴이나 홈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보행의 안전 확보
 - ➔ 홈 크기: 여성의 하이힐, 노약자의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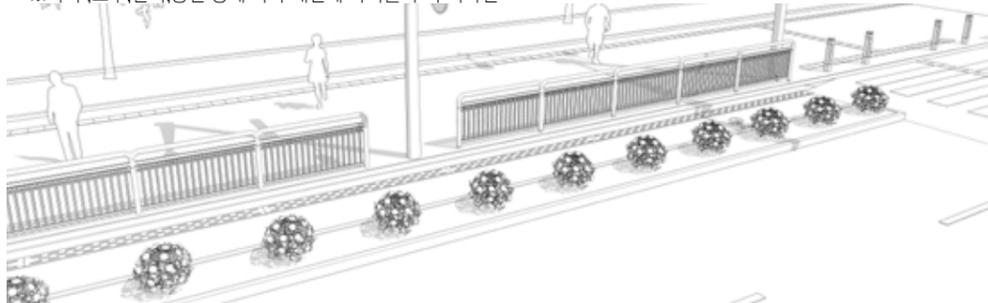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배수구 덮개는 주변 보도환경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디자인한다.

Why? 주변 시설과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

-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 가로수 보호대와 같은 녹지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
- ※ 우수, 오수, 전기, 통신 등에 따라 패턴에 차이를 두어 디자인



- 배수구 덮개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시 로고 등)는 지양
 - 덮개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무방향성 디자인 권장
 - 덮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부분에 색상 및 재료 분리 형태 권장
- 배수구 덮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덮개의 개폐시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디자인 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배수구 덮개는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 적용하거나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색상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주변도로의 바닥과 동일한 명도와 채도, 색상을 권장
 - ※ 주변환경과의 시각적인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
- 배수구 덮개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보도에 사용하는 배수구 덮개는 보도 포장재질과 같은 재료로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가로공간의 연속적 이미지 연출
 - 배수구 덮개 : 보도와 유사한 포장재 적용



설치 (Installation)

- 배수구 덮개 주변 보도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 Why?**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시공
- 배수구 덮개는 경사면 설치를 지양한다.

- 배수구 덮개는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한다.

Why?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



UD 가이드라인

- 배수구 덮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게 설계한다.
 - 미끄럼 방지 : 표면에 요철, 패턴 적용
 - Why?** 제천시는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필요
- 배수구 덮개는 패턴이나 홈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홈과 틈은 벌어지거나 균열이 없도록 설치한다.
 - 홈 크기 : 여성의 하이힐, 노약자의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크기



1.4 편의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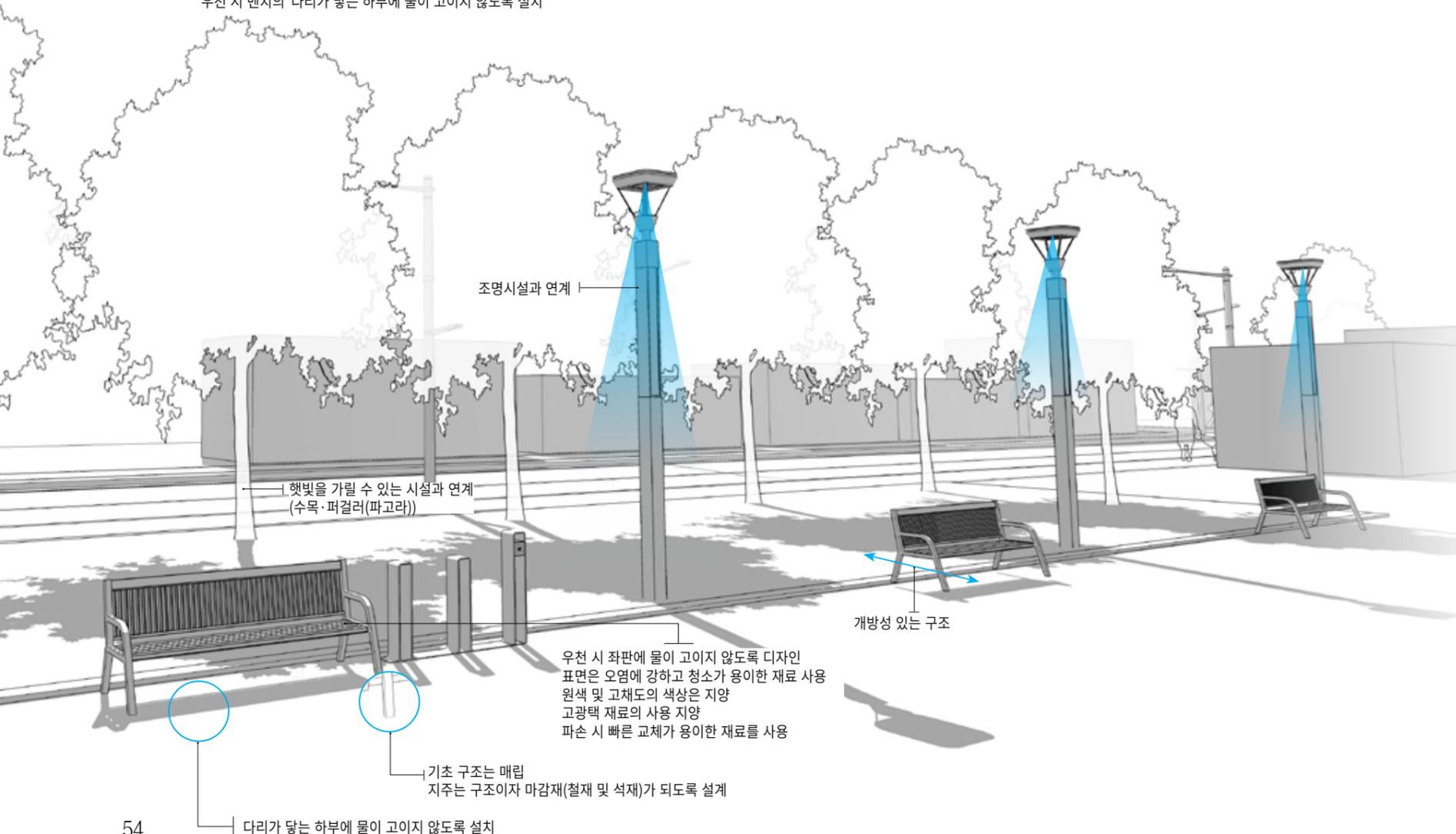
벤치

정의

벤치는 공원, 광장, 가로공간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이다.

구성 : 다리+좌판 + 등받이 or 다리+좌판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수직부재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표면은 청소가 용이한 재료 사용
우천 시 벤치의 다리가 닿는 하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수직부재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 우천 시 벤치의 좌판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
-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철재 및 석재)가 되도록 설계
-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표면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
-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연계시설과 병행하여 설치
- 기초 구조 매립
- 우천 시 벤치의 다리가 닿는 하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 경사면에서는 수직으로 설치

UD 가이드라인

-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끼는 재료를 사용
 - ➔ 공원 & 광장 : 등받이 + 손잡이 설치를 권장
 - ➔ 재료 : 앉는 좌판 부분은 목재 사용을 권장
 - ※ 목재 :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
-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높낮이가 다른 벤치를 적절히 배치할 것을 권장
 - ➔ 일반 성인 : 높이 0.4~0.45m, 어린이·노약자 : 높이 0.3~0.35m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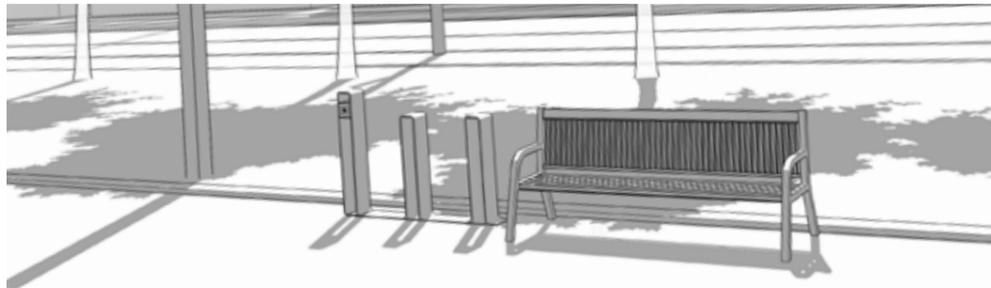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조명시설과 인접해 설치
-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기본적으로 공공벤치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부피감을 최소화시키는 디자인 권장
 -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디자인은 지양
 - 테마거리나 특화된 공원 :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상징성 있는 디자인 적용 가능
 - ※ 퍼걸러(파고라)에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형태보다는 패턴의 상징을 강조하는 것을 권장
- 벤치는 지면과 닿는 벤치의 **수직부재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벤치는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통합되는 구조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통합 설치 시설 : 자전거 거치대, 화분, 앉음벽 화단
 - ※ 계획 및 디자인 단계부터 적용을 권장



- 벤치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에 설치 시설물과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동일한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디자인 및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시설 설치
- **우천 시 벤치의 좌판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 벤치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철재 및 석재)가 되도록 설계**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벤치는 **이용자의 접촉이 많으므로 표면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벤치의 마감재로는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 벤치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벤치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 ※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벤치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벤치의 표면에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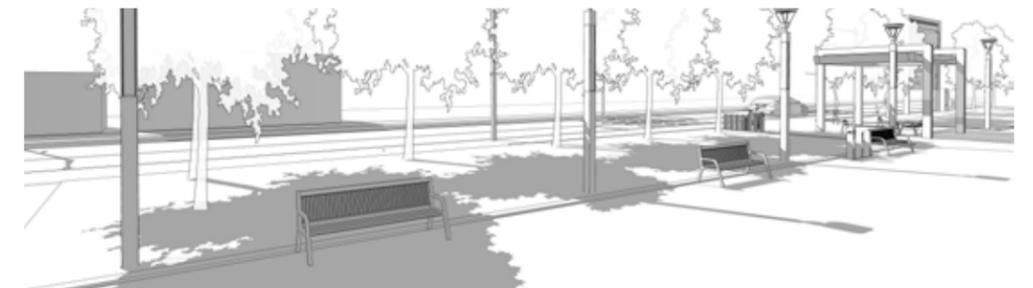
설치 (Installation)

- 벤치는 여름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연계시설과 병행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연계시설 : 수목, 퍼걸러(파고라), 차광막 등
- 벤치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벤치는 **우천 시 벤치의 다리가 닿는 하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 벤치는 **경사면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한다.
- 벤치는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UD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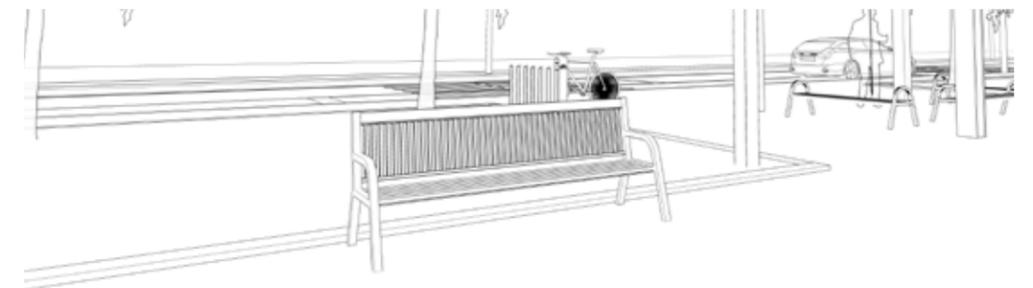
- 벤치에서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끼는 재료를 사용**한다.
 - Why?** : 노약자 등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
 - **형태** :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 **공원 & 광장** : 등받이 + 손잡이 설치를 권장
 - **재료** : 앉는 좌판 부분은 목재 사용을 권장하며 목재에는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
- 벤치의 좌우측면에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벤치는 음수대나 휴지통 등의 시설물과 일정 간격을 이격하여 설치한다.
 - 이격거리 : 5m 이상
- 벤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벤치를 적절히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일반 성인** : 높이 0.4~0.45m, **어린이·노약자** : 높이 0.3~0.35m를 권장
 - ※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http://sizekorea.kats.go.kr>) 참조

CPTED 가이드라인

- 벤치는 **조명시설과 인접해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가로등이나 보행등과 연계하여 설치
 - ※ 야간의 범죄 예방과 안전을 고려
 - ※ 필요 시 직접조명 설치(시설물에 삽입하는 형태)
- 벤치의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 뒷면이 가려지는 형태의 벤치를 적용할 경우 : 투명한 재료 사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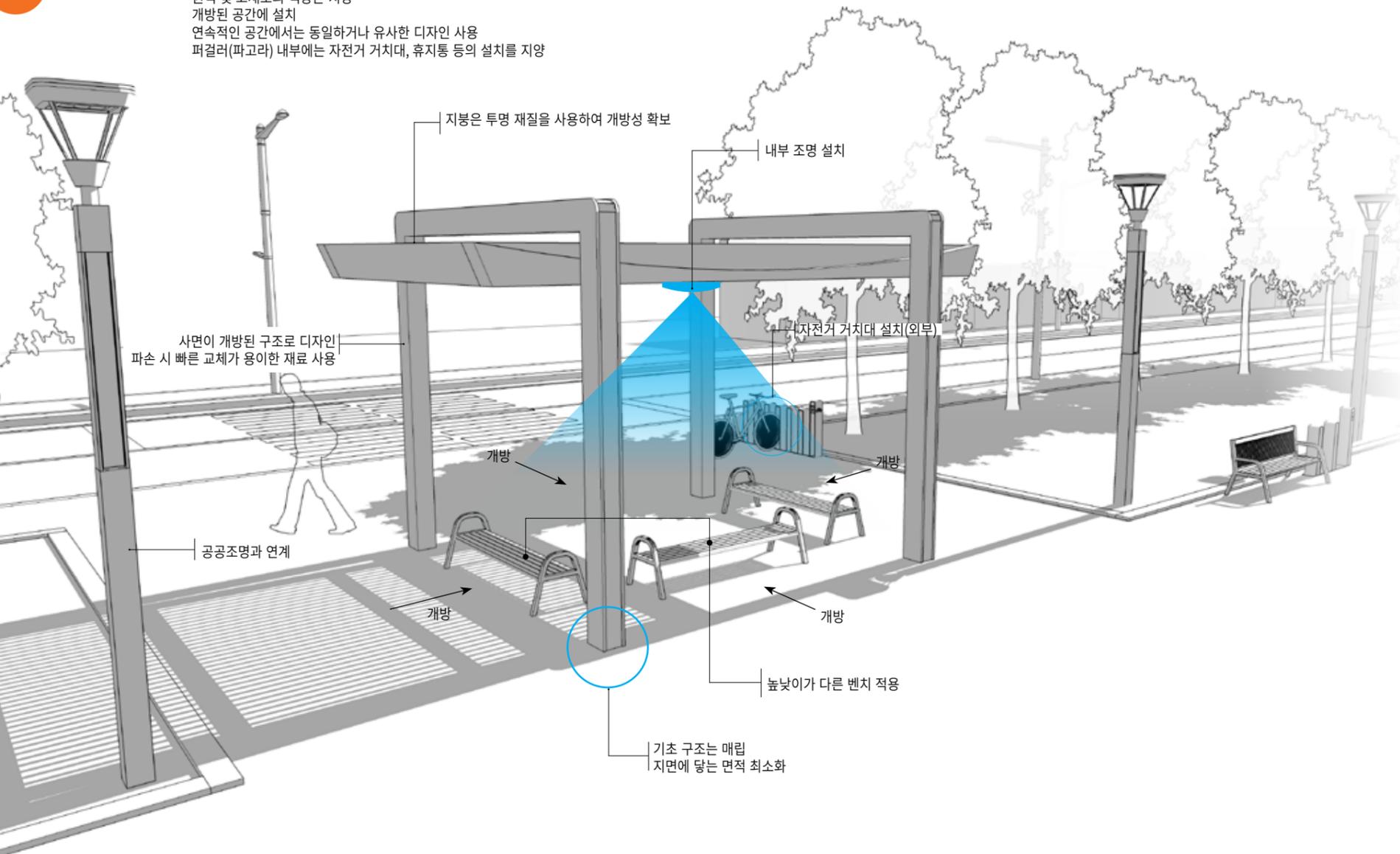
퍼걸러(파고라)

정의

퍼걸러(파고라)는 지붕이 있는 시설물로서 광장, 공원, 가로공간 등의 장소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지붕이 있어서 햇볕이나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물이다. (휴식을 목적으로하는 정자와 비슷한 개념의 시설물)

구성: 지붕 + 기둥 + 벽체 + 벤치 + 기타(조명 등)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녹지가 형성된 공간에는 식생녹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사용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개방된 공간에 설치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사용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자전거 거치대, 휴지통 등의 설치를 지양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녹지가 형성된 공간에는 식생녹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 사면이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지면에 닿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 지붕은 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개방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
-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사용
-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퍼걸러(파고라)의 기초 구조는 매립
- 개방된 공간에 설치
- 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설치
-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자전거 거치대, 휴지통 등의 설치를 지양
- 녹지에 퍼걸러(파고라)가 설치되는 경우 녹화할 것을 권장

UD 가이드라인

-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
- 바닥면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휠체어 및 유모차가 내부로 진입 및 회전할 수 있는 규격으로 디자인
-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높낮이가 다른 벤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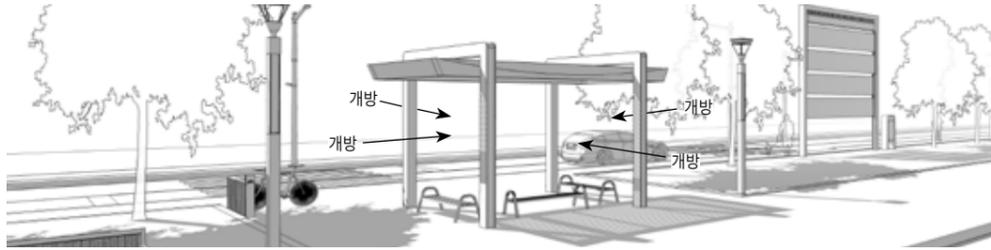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공공조명(가로등, 보행등)에 인접하여 설치
- 퍼걸러(파고라) 내부에 조명기구를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
- 내부 조명은 주변의 조명보다 밝게 계획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퍼걸러(파고라)는 설치 장소에 따라 내부의 시설물이 확장 및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퍼걸러(파고라)는 생태공간, 공원 등 녹지가 형성된 공간에는 식생녹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퍼걸러(파고라)는 사면이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부피감이 최소화되는 구조, 개방성 강조
 - ※ 주·야간의 범죄 예방과 안전 고려



- 퍼걸러(파고라)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퍼걸러(파고라) 기둥은 부피감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 퍼걸러(파고라)의 기둥 및 천장에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 테마거리 및 특화 공원 :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상징성 있는 디자인의 적용 가능
 - ※ 퍼걸러(파고라)에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형태보다는 패턴 강조를 권장
- 퍼걸러(파고라)의 기둥은 최대한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지면에 닿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퍼걸러(파고라)는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퍼걸러(파고라)는 지붕은 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개방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퍼걸러(파고라)는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신체 접촉부위 : 둥글게 마감처리
- 퍼걸러(파고라)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자연 친화적 재료 사용시 : 미관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함께 고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 목재에 페인트 도장은 지양
- 퍼걸러(파고라)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퍼걸러(파고라)는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 퍼걸러(파고라)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색상
 - ※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퍼걸러(파고라)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퍼걸러(파고라)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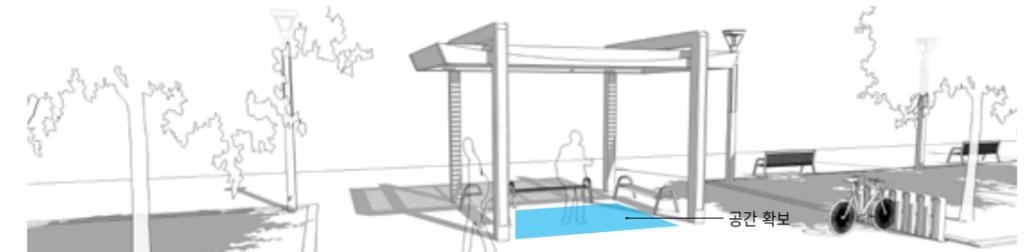
설치 (Installation)

- 퍼걸러(파고라)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퍼걸러(파고라)는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 설치한다.
- 퍼걸러(파고라)는 유아, 어린이가 노는 모습을 외부에서 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연속적인 공간에 여러 개의 퍼걸러(파고라)를 설치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추가 설치할 경우 :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 적용
 - 신규 설치할 경우 : 동일한 디자인 적용
- 퍼걸러(파고라)는 대상지의 보행 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퍼걸러(파고라)의 규모는 대상 공간의 규모에 맞게 설치
-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자전거 거치대, 휴지통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벤치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벤치의 형태와 구조는 대상지의 이용객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조성한다.
- 녹지에 퍼걸러(파고라)가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덩굴식물 등으로 녹화할 것을 권장한다.

UD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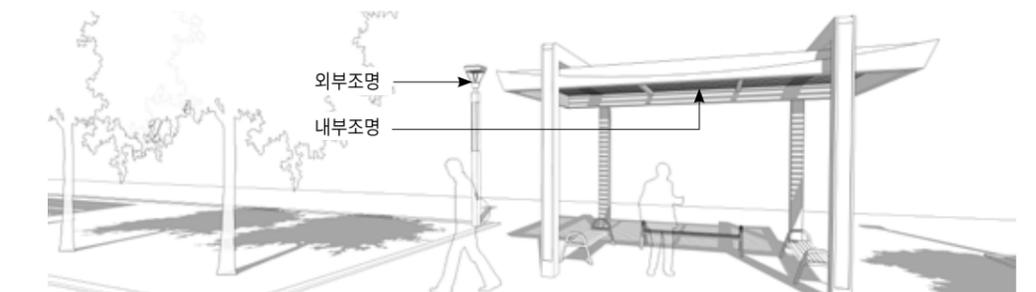
- 퍼걸러(파고라)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 기둥은 수직 유지 + 좌판은 수평 유지
- 퍼걸러(파고라)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퍼걸러(파고라)는 휠체어 및 유모차가 내부로 진입 및 회전할 수 있는 규격으로 디자인한다.



-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벤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퍼걸러(파고라)는 야간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공조명(가로등, 보행등)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퍼걸러(파고라) 내부에 조명기구를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퍼걸러(파고라)의 내부 조명은 주변의 조명보다 밝게 계획한다.

휴지통

정의

휴지통은 가로공간이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구성 : 외부통 + 내부통 + 투입구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공간에 설치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의 사용을 금지
내부통은 쓰레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를 사용
· 실외용 : 스테인리스 스틸 권장
· 실내용 : PC 권장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휴지통에 재떨이 설치 금지
경사로 및 계단에 설치 금지

분리수거 픽토그램 적용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는 투입구를 양면(앞·뒤면)으로 디자인
단, 단면이 개방된 공간에는 투입구를 단면(앞면)으로 디자인

편의시설(벤치, 퍼걸러 등)과
연계하여 설치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 지양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
 - ➔ 분리수거 픽토그램 적용
-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공간에 설치
 - ➔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양면(앞·뒤면)으로 디자인
 - ➔ 단면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단면(앞면)으로 디자인
- 편의시설(벤치, 퍼걸러(파고라) 등)과 연계하여 설치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의 사용을 금지
- 내부통은 쓰레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를 사용
 - ➔ 실외용 : 스테인리스 스틸 권장
 - ➔ 실내용 : PC 권장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뚜껑이 설치되는 경우 뚜껑은 휴지통 외부와 동일한 재료를 적용
-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휴지통에 재떨이 설치 금지
- 경사로 및 계단에 설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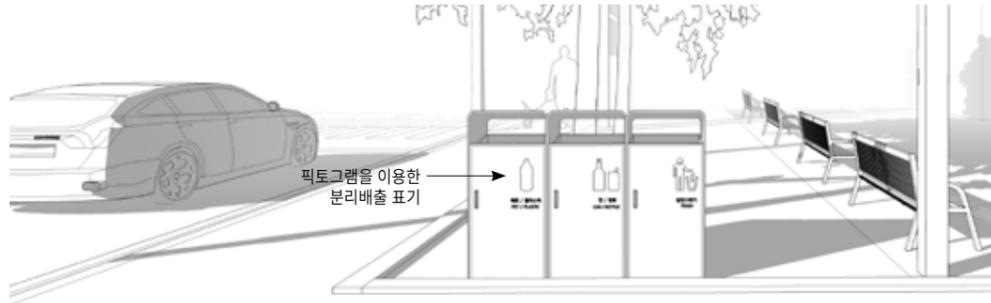
UD 가이드라인

- 국제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
-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크기와 규모를 계획
- 투입구와 이음부에 나사 돌출이나 뾰족한 부분이 없게 설계
- 투입구는 사람의 손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디자인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휴지통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분리수거 픽토그램 적용
 - 픽토그램 + 문자(한글+영문) 병행 표기



- 휴지통은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양면(앞·뒤면)으로 디자인
 - 단면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단면(앞면)으로 디자인
- 휴지통은 편의시설(벤치, 퍼걸러(파고라) 등)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휴지통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의 사용을 금지
- 실외에 설치되는 휴지통은 다양한 상황 (눈, 비, 황사 등)을 고려해 디자인을 계획한다.
 - 우천 시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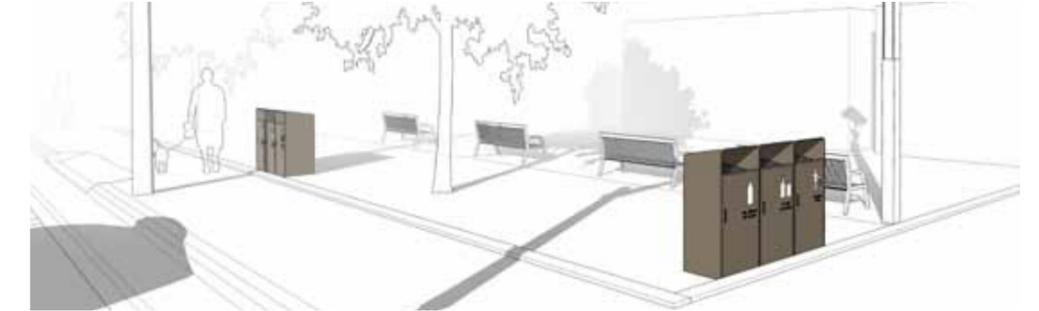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휴지통의 내부통은 쓰레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를 사용한다.
 - 실외용 : 스테인리스 스틸 권장
 - 실내용 : PC 권장
- 휴지통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실외에 설치되는 휴지통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디자인한다.
 - 지주로의 기능이 가능한 재료 사용
- 휴지통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 휴지통에 뚜껑이 설치되는 경우 뚜껑은 휴지통 외부와 동일한 재료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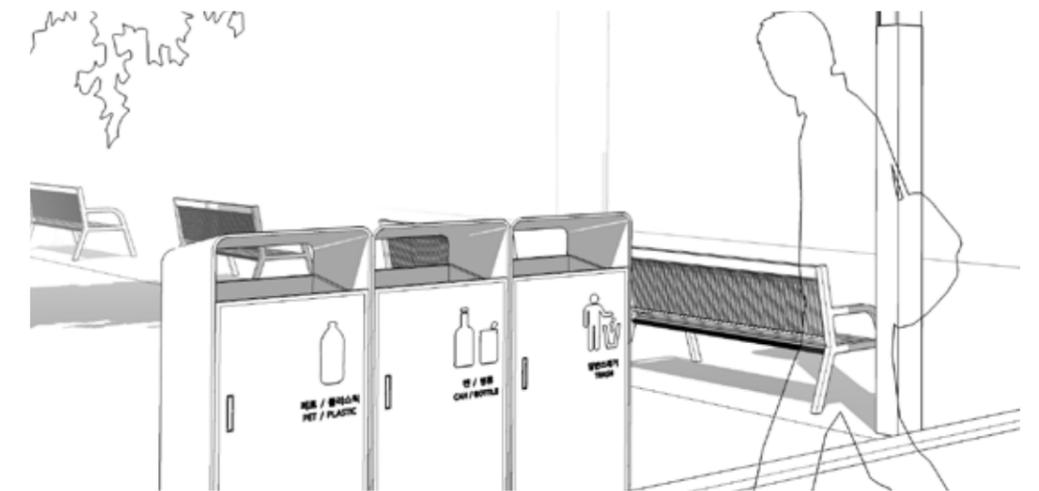
- 휴지통은 쓰레기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휴지통은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 휴지통은 비흡연자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휴지통에 재떨이 설치를 금지한다.
- 휴지통은 경사로 및 계단에 설치를 금지한다.

UD 가이드라인

- 휴지통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국제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한다.
- 휴지통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크기와 규모를 계획한다.
- 휴지통은 투입구와 이음부에 나사 돌출이나 뾰족한 부분이 없게 설계한다.
- 휴지통의 투입구는 사람의 손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디자인한다.



- 휴지통의 모서리는 모두 둥글게 마감 처리한다.

음수대

정의

음수대는 관광지나, 공원, 광장 등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식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물이다.

구성: 음수구 + 물받이 + 기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조화로운 디자인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냉각기 등의 설비 시스템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바닥: 물이 빠질 수 있는 투수성 재료 사용을 권장

자동잠금센서를 설치
물이 직접 닿는 부위는 내수성이 강한 소재 사용

음용수임 표시물

800~1,500mm

600mm
이상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계획
바닥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배수를 고려한 경사각 적용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음용수임을 알리는 표시물 설치
-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적용
-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계획
- 냉각기 등의 설비 시스템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 물이 직접 닿는 부위는 내수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
- 물이 빠질 수 있는 투수성 재료 사용을 권장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
- 자동잠금센서를 설치
- 바닥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UD 가이드라인

-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휠체어, 유모차, 지팡이를 짚는 고령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행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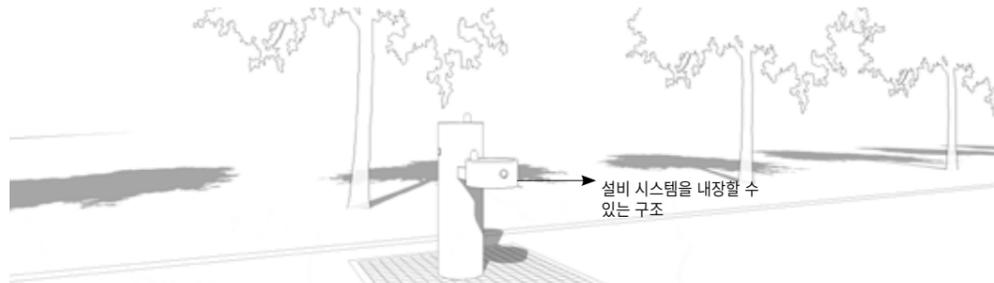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음수대는 편의시설에 인접하여 설치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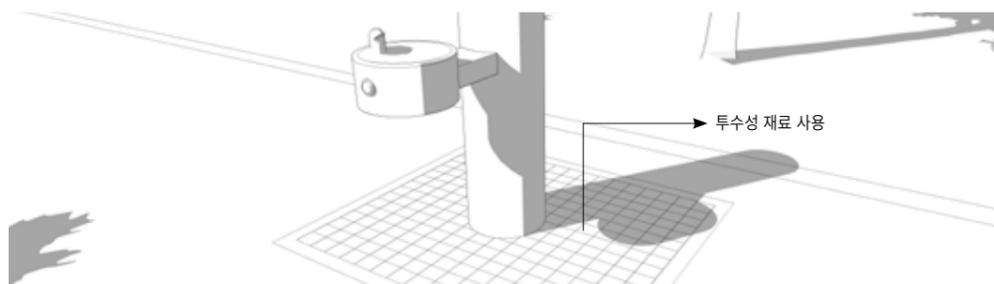
- 음수대에는 **음용수임을 알리는 표시물** 설치한다.
 - 음용수의 수질을 정기적(6개월)으로 실시



- 음수대의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적용**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음수대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계획한다.
- 음수대는 **냉각기 등의 설비 시스템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는 구조
- 음수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음수대는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이미지를 적용하거나 그래픽 요소를 남용하지 않는다.
 - 특정 이미지, 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금지
- 음수대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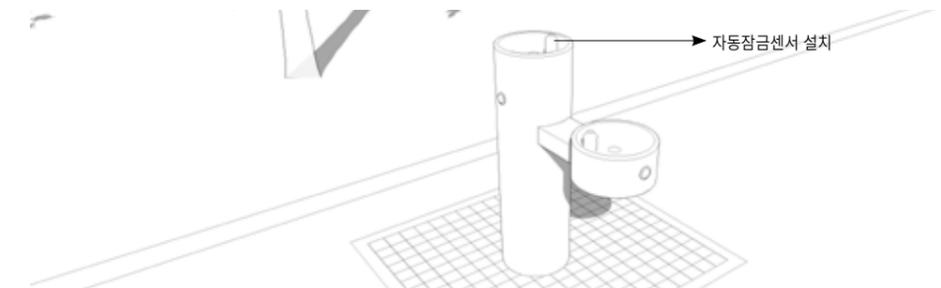
- 음수대는 **물이 직접 닿는 부위인 물받이 등은 내수성이 강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물에 의한 표면 훼손 방지를 고려하여 디자인
- 음수대는 내구성 및 내부 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물이 직접 닿는 수전(버블러 및 수도꼭지), 트랜치
- 음수대는 **물이 빠질 수 있는 투수성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투수성 재료 : 투수 블록 등



- 음수대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음수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음수대는 **내수성이 강한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석재)**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음수대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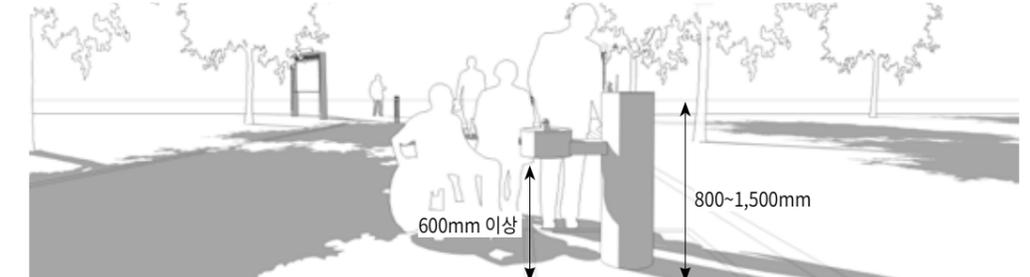
- 음수대를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 설치**한다.
- 음수대는 이용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 음수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물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잠금센서**를 설치한다.



- 음수대의 바닥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
- 음수대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음수대가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UD 가이드라인

- 음수대를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 설치**한다.
 - 휠체어, 유모차, 지팡이를 짚는 고령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음수대는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개방 : 사면 개방 구조
 - 이용자 : 휠체어, 유모차, 노인, 지팡이를 짚는 사람, 반려동물 등
 - 높이 : 일반성인 : H 800mm~1,500mm, 어린이·노약자·휠체어 사용자 : H 600mm~800mm(하단 높이 : 600mm 이상)



- 음수대에 신체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 약자(어린이, 노인,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 배려

CPTED 가이드라인

- 음수대는 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연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음수대는 편의시설(벤치, 퍼걸러(파고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클린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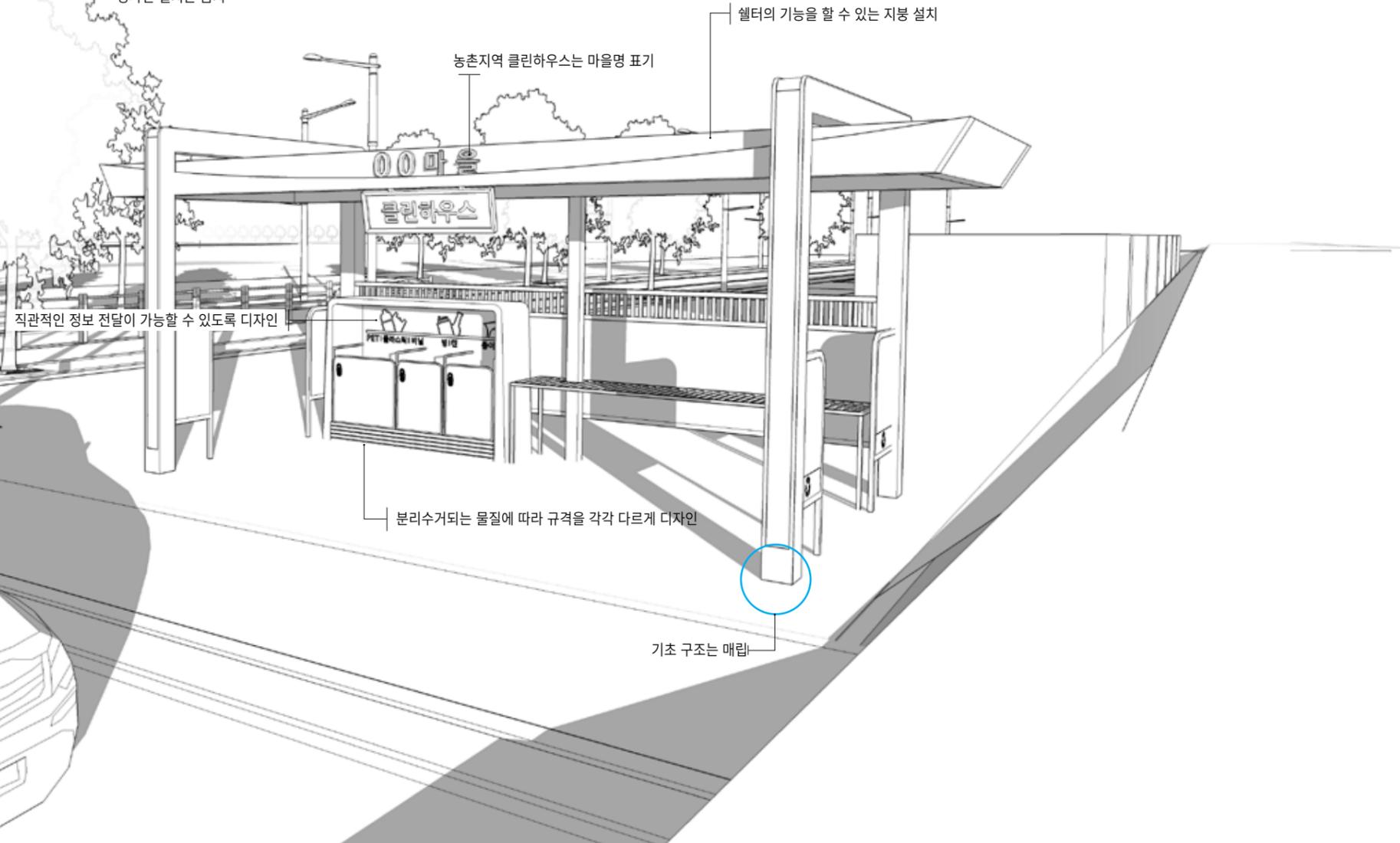
정의

클린하우스는 일정한 공간에 정돈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장소'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시설이다.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구성: 기둥 + 벽체 + 분리수거함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최소 1개면 이상은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
조경, 식재 등과 병행하여 계획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이 내구성이 강하고 녹에 강한 재료 사용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은 반드시 도장마감 처리
청소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
경사면 설치 금지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최소 1개면 이상은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
- 조경, 식재 등과 병행하여 계획
-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이 내구성이 강하고 녹에 강한 재료 사용
→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은 반드시 도장마감 처리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청소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
- 농촌지역 클린하우스는 마을명을 표기
- 기초 구조는 매립
- 경사면 설치 금지
-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UD 가이드라인

- 경사면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
- 내부에는 분리수거함을 반드시 설치
- 바닥면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휠체어 및 유모차가 내부로 진입 및 회전할 수 있는 규격으로 디자인

CPTED 가이드라인

- CCTV 설치를 권장
- 공공조명(가로등, 보행등)에 인접하여 설치
- 내부에 조명기구를 병행하여 설치
- 내부 조명은 주변의 조명보다 밝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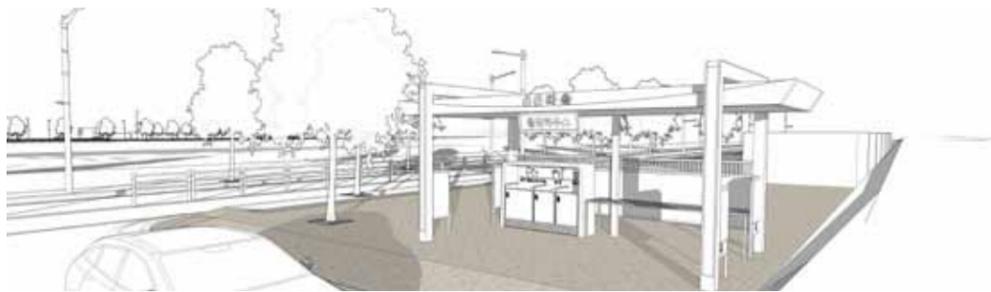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클린하우스는 **최소 1개면 이상은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최소한의 구조로 부피감을 줄이며 개방성을 확보
 - ※ 범죄 예방과 안전 고려



- 내부 **분리수거함**은 사이즈를 규격화하는 것을 지향하며, **분리수거되는 물질에 따라 규격을 각각 다르게 디자인한다.**
 - 분리수거함: 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 등 구분하여 설치
- 클린하우스는 기후변화와 보관을 고려해 **선택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한다.**
- 클린하우스는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클린하우스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클린하우스는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한다.
- 분리수거함에 시각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클린하우스는 **조경, 식재 등과 병행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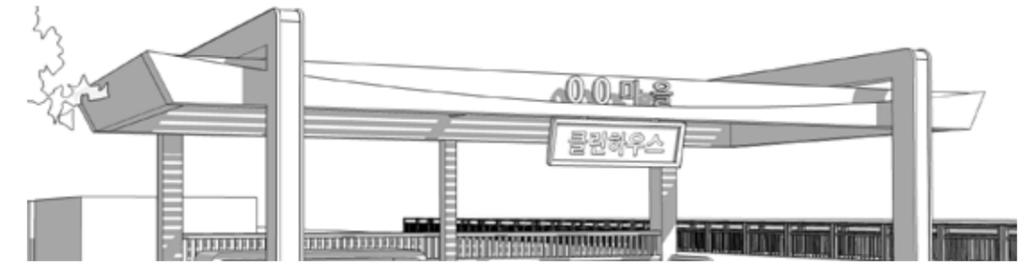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클린하우스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이 내구성이 강하고 녹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은 도장마감 처리
- 클린하우스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 주조색: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강조색: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 클린하우스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클린하우스는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청소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클린하우스는 **화분 등의 녹화를 병행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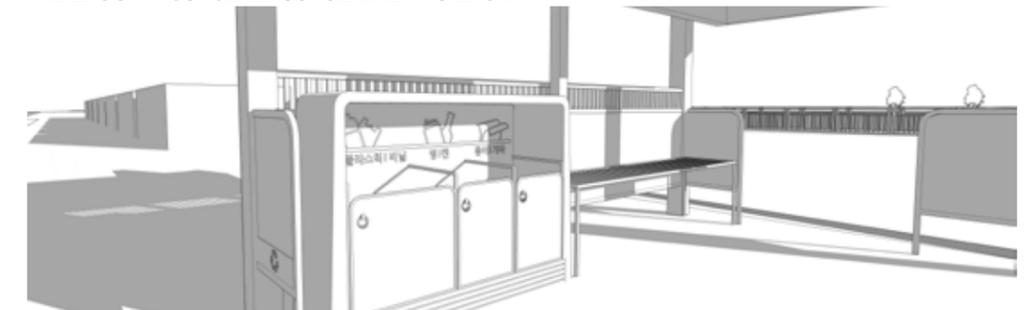
-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클린하우스는 마을명 표기한다.**



- 클린하우스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클린하우스는 **연속적인 공간에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UD 가이드라인

- 클린하우스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기둥은 수직 유지
- 클린하우스 내부에는 **분리수거함을 반드시 설치한다.**



- 분리수거함: 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 등 구분하여 설치
-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클린하우스는 **휠체어 및 유모차가 내부로 진입 및 회전할 수 있는 규격으로 디자인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클린하우스에는 **CCTV 설치를 권장한다.**
 - ※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클린하우스는 야간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공조명(가로등, 보행등)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클린하우스 내부에 **조명기구를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클린하우스의 내부 조명은 주변의 조명보다 **밝게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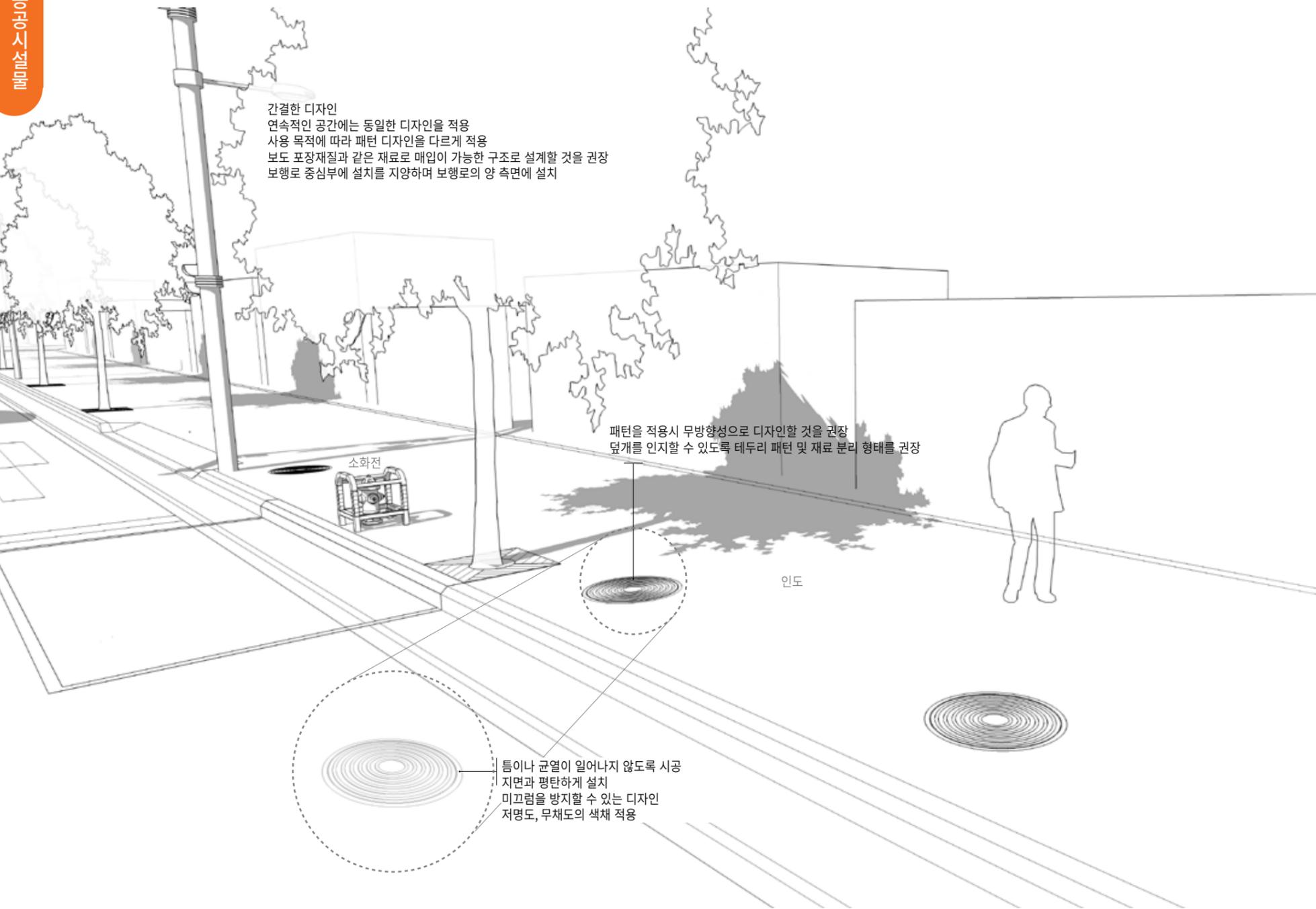
1.5 공급시설물

맨홀

정의

맨홀은 지하 매립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한 개구부를 덮는 공급시설물이다.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
- 틈이 벌어지거나 균열이 없도록 설치
-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
- 사용 목적에 따라 패턴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
- 뒹개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무방향성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뒹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패턴 및 재료 분리 형태를 권장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보도 포장재질과 같은 재료로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장
-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색상을 적용할 것을 권장
- 색상을 적용할 경우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 적용
- 보행로 중심부에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로의 양 측면에 설치
-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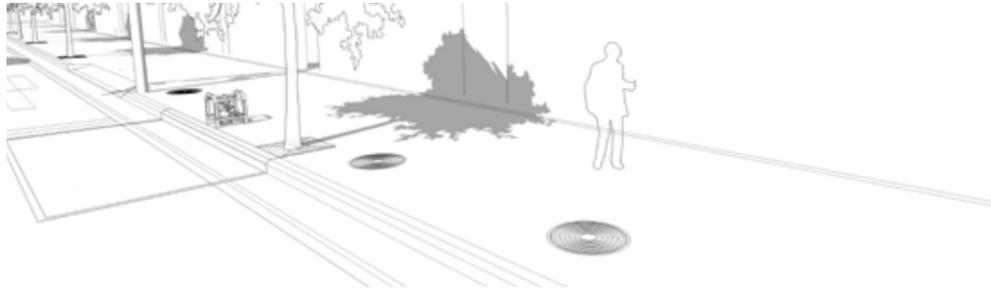
UD 가이드라인

- 과도한 장식이나 그래픽 요소를 적용 금지
 - ➔ 보행약자가 혼란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장식 및 그래픽 적용 가능 지역: 특화거리 및 테마거리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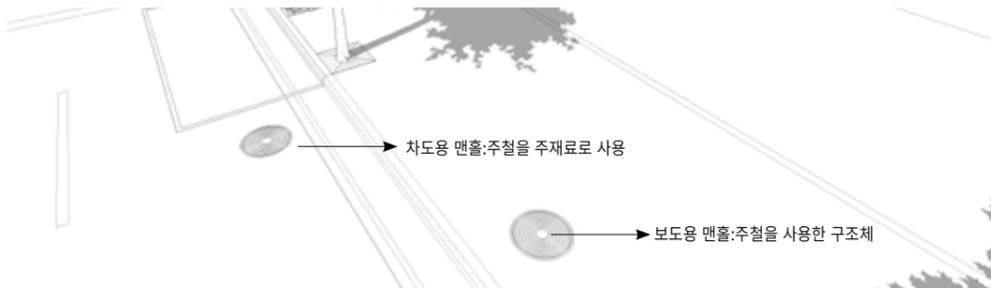
- 맨홀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주변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



- 맨홀은 주변의 가로수 보호대와 같은 녹지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맨홀은 사용 목적에 따라 패턴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한다.
→ 맨홀 사용 목적: 우수, 오수, 전기, 통신 등
- 맨홀의 덮개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무방향성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맨홀은 덮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패턴 및 재료 분리 형태를 권장한다.
- 맨홀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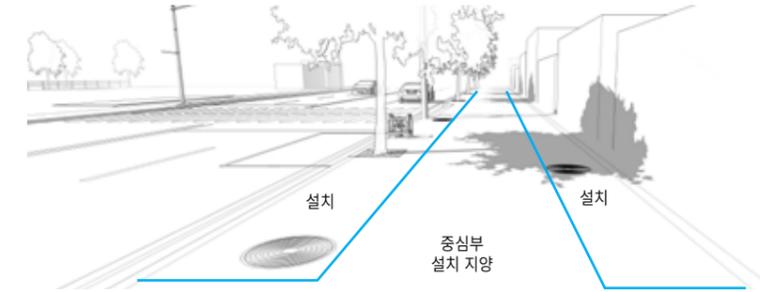
- 보도에 사용하는 맨홀은 보도 포장재질과 같은 재료로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맨홀 덮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 적용
※ 가로공간의 연속적 이미지 연출
- 맨홀의 덮개에 색상을 적용할 경우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를 적용한다.
→ 주변도로의 바닥과 동일한 명도, 채도, 색상을 권장
※ 보행약자에게 주변환경과의 시각적인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
- 맨홀은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색상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맨홀 덮개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차도용 덮개 재료: 주철 권장
→ 보도용 덮개 재료: 주철을 사용한 구조체 권장



설치 (Installation)

- 맨홀은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한다.
※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
- 맨홀은 주변 보도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시공
- 맨홀은 보행로 중심부에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로의 양 측면에 설치한다.

- ▶ 유효보행폭을 확보한 후에 보행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유아, 노인 등)의 보행 안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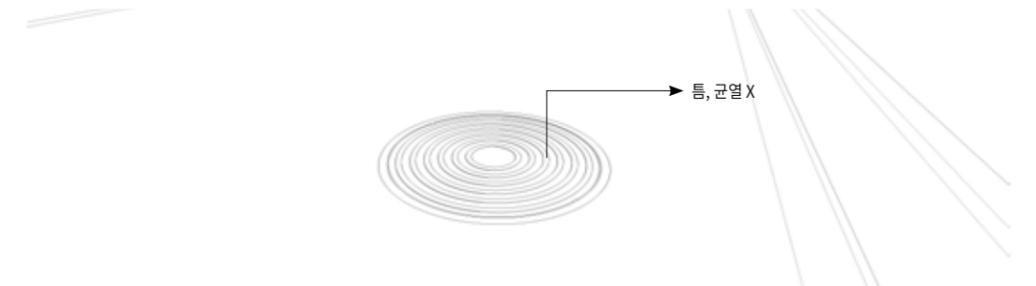
- 맨홀은 경사면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UD 가이드라인

- 맨홀은 일반적인 가로변에서는 과도한 장식이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보행약자가 혼란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장식 및 그래픽 적용 가능 지역: 특화거리 및 테마거리



- 맨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 우천 시, 보행자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맨홀 상부에 요철이 있는 패턴 적용
- 맨홀의 틈이 벌어지거나 균열이 없도록 설치하고, 홈과 패턴을 최소화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한다.
※ 제천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필요
※ 홈과 틈으로 인해 여성의 하이힐이나 노약자의 지팡이가 들어가는 안전사고를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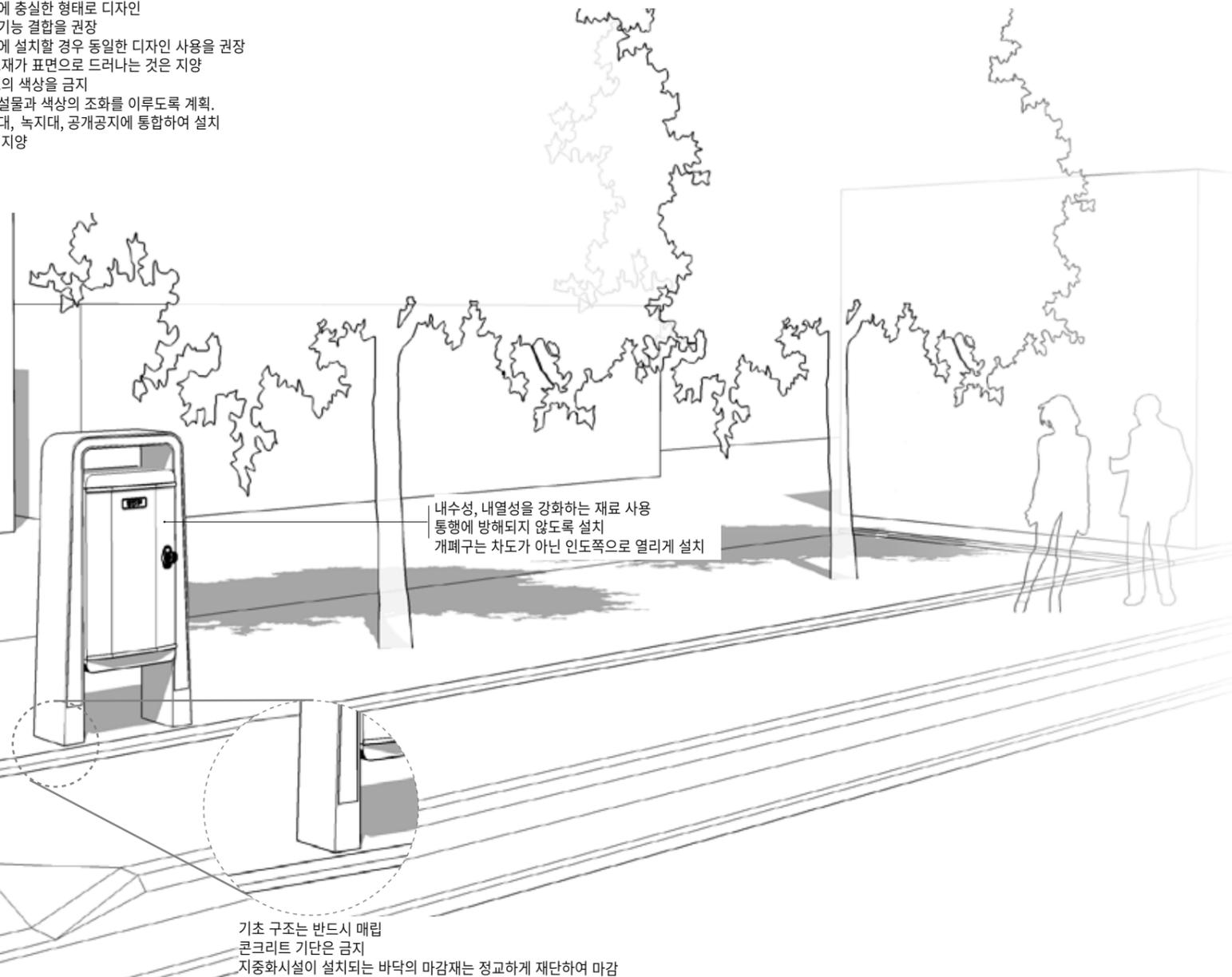
지중화시설(배전함, 제어함)

정의

지중화시설은 배전함·제어함과 같이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박스(BOX)형태의 전력관리 시설물을 말하며 내부에 설치된 배전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공급시설물이다.

구성: 공급박스 + 기초

간결하고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디자인
홍보시설과의 기능 결합을 권장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금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공개공지에 통합하여 설치
경사면 설치는 지양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콘크리트 기단은 금지
→ 관리기관(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과 협의 추진
- 간결하고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디자인
→ 갯이나 캐노피 형태는 설치 금지
- 홍보시설과의 기능 결합을 권장
→ 결합시설 : 홍보시설(시정홍보)
-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 내수성, 내열성을 강화하는 재료를 사용
-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금지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공개공지에 통합하여 설치
→ 개별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
-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 개폐구는 차도가 아닌 인도쪽으로 열리게 설치
- 경사면 설치는 지양
- 지중화시설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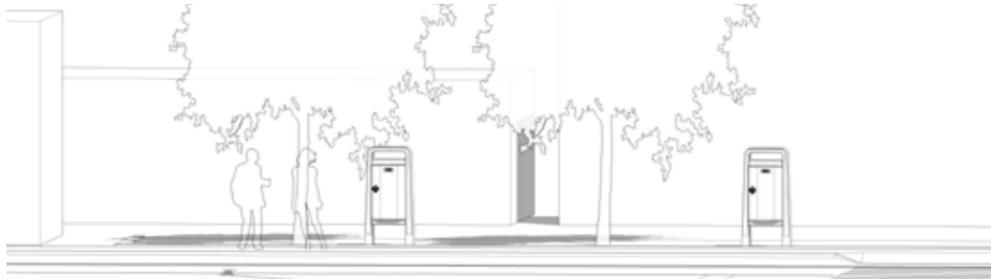
UD 가이드라인

- 지중화시설 주위에는 녹지화하거나 모서리에 반사시트를 부착
- 모서리 등의 마감 부위는 라운드 처리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지중화시설은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큰 면적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기반은 금지**한다.
 - 지중화시설은 **관리기관(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과 협의** 추진
- 지중화시설은 **간결하고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갓이나 캐노피 형태는 **설치 금지**
 -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 지중화시설은 **홍보시설과의 기능의 결합을 권장**한다.
 - 결합시설 : 홍보시설(시정홍보)
 - ※ 가로공간에 상당한 부피를 차지하는 시설물로 가로공간의 차폐 현상을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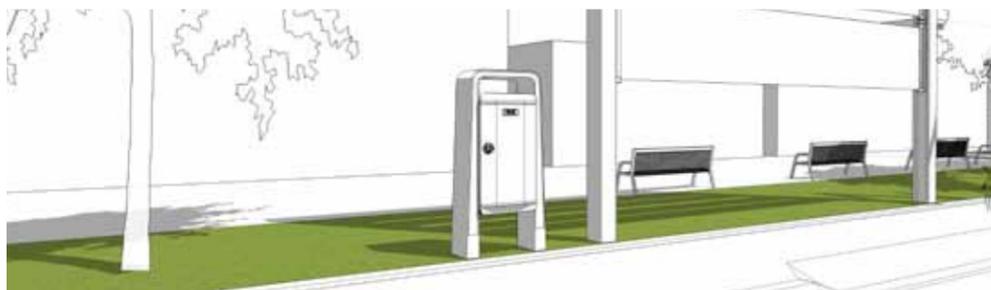
- 지중화시설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 지중화시설은 **휴먼스케일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한 디자인을 계획한다.
- 지중화시설은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지중화시설은 본체의 **내수성, 내열성을 강화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지중화시설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 지중화시설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금지한다.
- 지중화시설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지중화시설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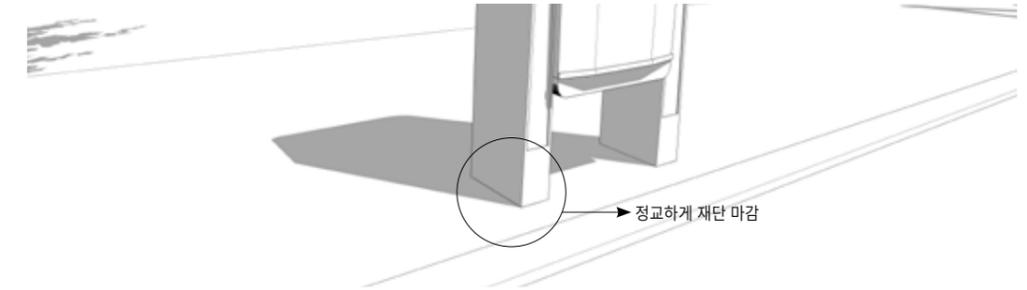
설치 (Installation)

- 지중화시설은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공개공지에 통합하여 설치**한다.
 - 개별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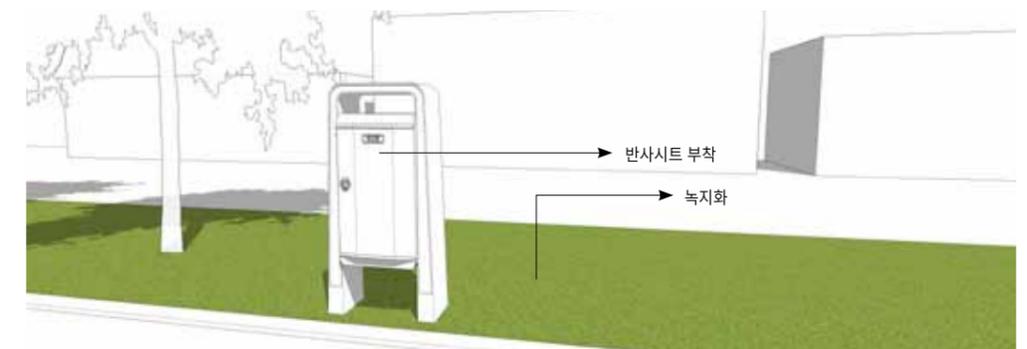
- 지중화시설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지중화시설의 **개폐구는 차도가 아닌 인도쪽으로 열리게 설치**한다.
- 지중화시설은 **경사면 설치**는 지양한다.
 -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 수직으로 설치
- 지중화시설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UD 가이드라인

- 지중화시설 주위에는 **녹지화하거나 모서리에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보행자의 충돌을 예방한다.
 -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시 시인성 확보
 - 가로 경관 개선효과 증대



- 지중화시설은 신체 부위와 직접적으로 닿은 **모서리 등의 마감 부위는 라운드 처리**를 한다.
 -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방재시설(소화전)

정의

방재시설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큰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급시설물이다.

구성: 소화전 + 보호대 + 보호구역

보호대는 관리기관(소방서)과 협의하여 추진
 보호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 권장
 공개공지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부착할 것을 권장
 공개공지: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보호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

동선을 단절시키는 위치에 설치 지양
 보호대는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
 보호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주정차 금지선

보호대 기초 구조는 매립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설계

주차금지(비상차량 주차공간)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보호대는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
- 보호대는 관리기관(소방서)과 협의하여 추진
-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
 - ➔ 주정차 금지 구역선 설치
 - ➔ 필요에 따라, 도로변 경계석에 인지색 설치
- 보호대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설계
- 보호대는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
- 보호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보호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
- 공개공지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부착할 것을 권장
 - ➔ 공개공지: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 동선을 단절시키는 위치에 설치를 지양
- 보호대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 보호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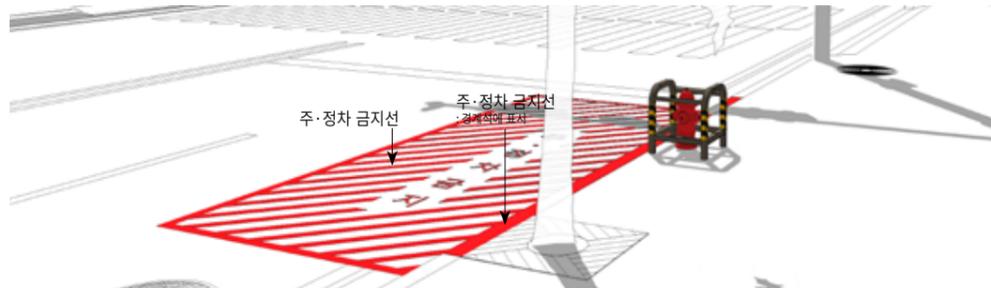
UD 가이드라인

- 보행자 및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 인지가 명확하게 계획
- 보호대 설치를 권장
 - ➔ 보호대에는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강화시켜 야간의 충돌을 방지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방재시설의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보호대는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한다.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관리기관(소방서)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방재시설의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한다.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항(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에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 주정차 금지 구역선 설치
 - 필요에 따라, 도로변 경계석에 인지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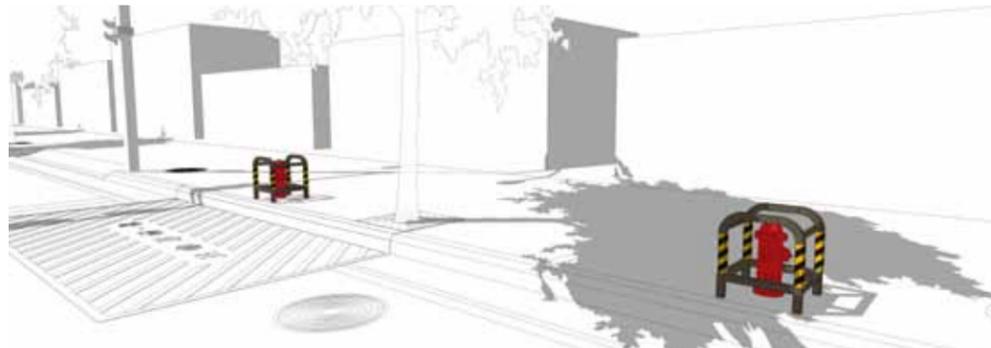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 과도한 장식·상징 요소 사용 금지
 - 보호대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
- 방재시설의 보호대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설계한다.
 - 구조로의 기능이 가능한 재료 사용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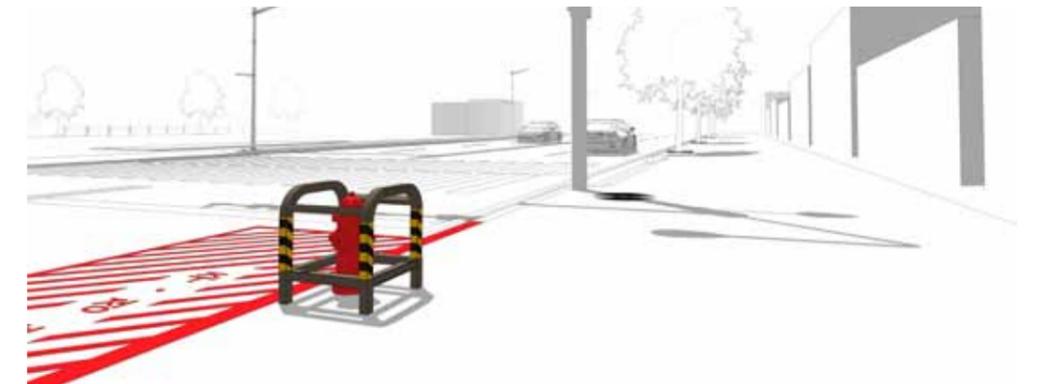
- 방재시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한다.
 -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 지양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방재시설은 공개공지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
 - 공개공지 :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 방재시설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는 위치에 설치를 지양한다.
 - 설치 지양 지역 : 보행로 중앙부, 진입로 고각부
- 방재시설의 보호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보행의 안전 확보 및 제천시 가로변의 보행로 폭이 좁은 현상 고려
- 방재시설은 경사면 설치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한다.
-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사람 또는 차량 이동 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한다.
-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UD 가이드라인

- 방재시설은 보행자 및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 인지가 명확하게 계획한다.
- 방재시설은 시인성 강화와 충돌로 인한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 설치를 권장한다.
 - 보호대에는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강화시켜 야간의 충돌을 방지
 - ※ 보호대 역할 : 시인성 강화 → 불법주차 방지, 응급 상황에서 시인성 확보, 파손 방지



1.6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정의

가로수 수목 밑둥 부분을 지면에 설치함으로써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며 뿌리 부분이 포장에 매몰되는 것을 막는 등 수목의 생육에 도움을 주는 녹지시설물이다.

개발방향: 녹지화를 유도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잔디 등의 식재를 이용하여 가로공간 녹지화를 유도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
 조명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중 매입 방식의 수목등을 설치

1.5m이상 확보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잔디 등의 식재를 이용하여 가로공간 녹지화를 유도
 - ※ 녹지화: 자연스러운 수목보호 유도가 가능
 - ➔ 조명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중 매입 방식의 수목등을 설치
- 좁은 지역(폭 1.5m이하)에는 가로수 보호대를 보행로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
-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 크기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조절하여 설치
- 조명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중 매입 방식의 수목등을 설치

UD 가이드라인

- 홈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여성의 하이힐, 노약자의 지팡이가 빠지지 않게 계획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
-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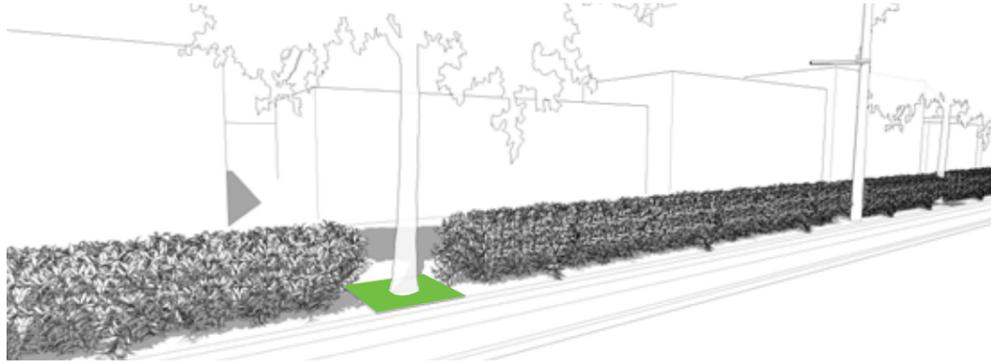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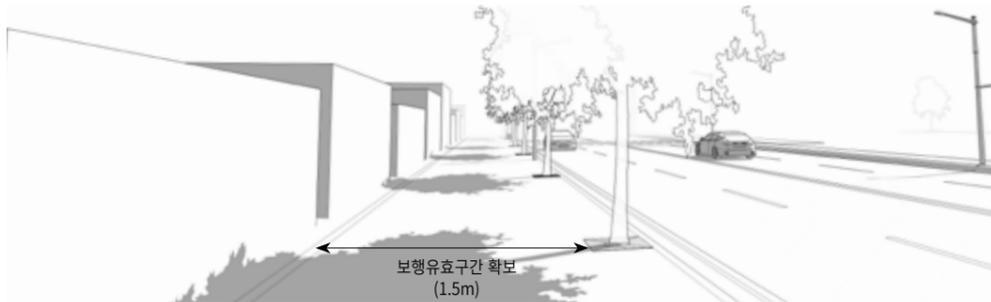
제천시의 가로수 보호대는 기본적으로 잔디 등의 식재를 이용하여 가로공간 녹지화를 유도한다.

※ 녹지화 : 자연스러운 수목보호 유도가 가능

Why? : 제천시는 도심지내 경관녹지가 부족한 상황



- 보행로가 좁은 지역(폭 1.5m이하)에는 가로수 보호대를 보행로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목재(데크형식)등을 활용하여 보호대 덮개를 촘촘하게 설치



- 가로수 보호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가로공간 녹지화 유도
→ 시 로고 등의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 장소의 특성에 따라 상징적 형태의 디자인은 가능하나 복잡한 디자인은 지양
- 가로수 보호대는 수목의 성장에 따라 쉽게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모듈형으로 디자인
→ 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쉽게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
- 가로수 보호대는 물 공급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적절한 직경으로 디자인한다.
※ 물 공급과 배수를 고려하여 디자인
- 가로수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 가로수 보호대와 통일성 있게 디자인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가로수 보호대의 녹지화는 잔디, 관목, 초화류를 권장한다.
- 녹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료가 가진 색상의 사용을 권장한다.
- 가로수 보호대의 마감재로는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 가로수 보호대는 파손이 쉬운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단, 가로수 보호대를 보행로로 활용할 경우 목재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적용 가능 재료 : 철재나 목재(테크용 재료) 권장, 플라스틱 사용은 금지

설치 (Installation)

- 가로수 보호대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도심 가로공간의 경관 연속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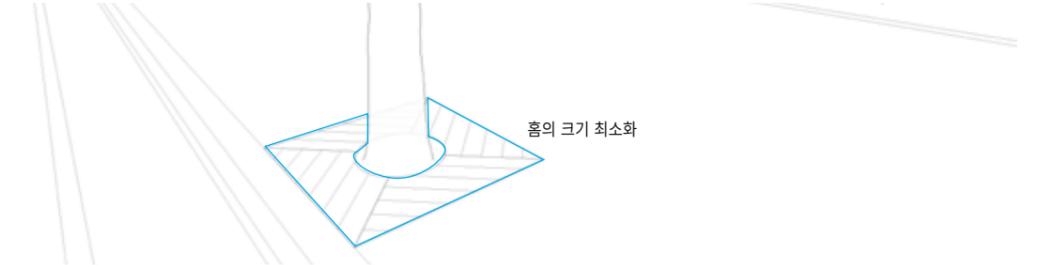


- 가로수 보호대의 크기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조절하여 설치한다.
- 조명이 필요한 지역에는 가로수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고 **지중 매입 방식의 수목등을 설치**한다.
→ 조명이 필요한 지역 : 지방도로(농촌마을), 공원 및 광장의 조명이 부족한 곳
→ 수목의 식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도로 설치하고, 타이머 기능 설치를 권장
- 가로수 보호대는 유지·관리의 효율성, 도시경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천시는 가로수 보호대를 유지·관리의 우선시설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UD 가이드라인

- 가로수 보호대는 패턴이나 홈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여성의 하이힐, 노약자의 지팡이가 빠지지 않게 계획한다.

Why? : 보행의 안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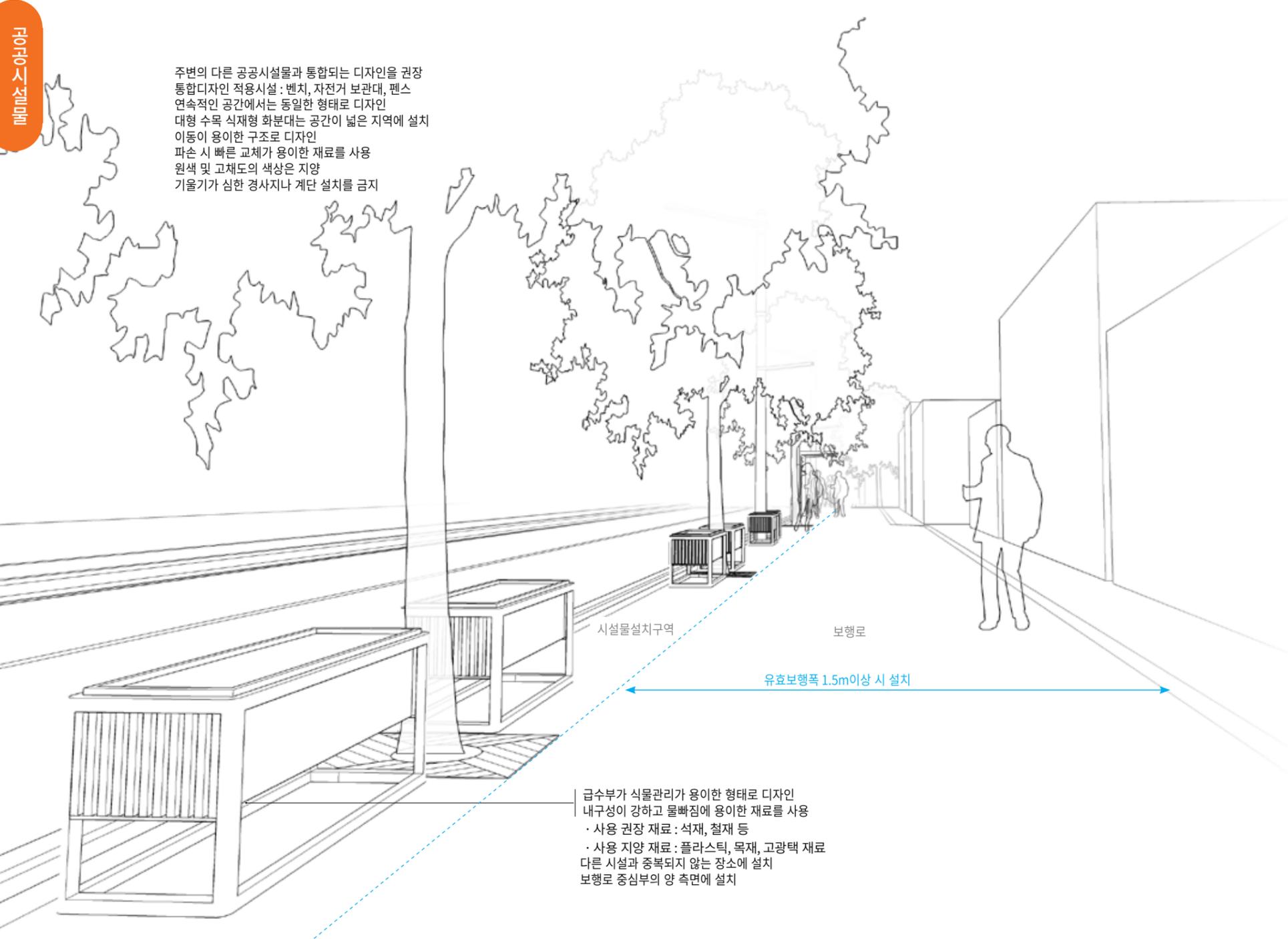
- 가로수 보호대는 덮개부의 표면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 우천 시, 보행자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보호대 상부에 요철이 있는 패턴 적용을 고려
- 가로수 보호대는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한다.
→ 보행로 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외곽부를 정교하게 마감

가로 화분대

정의

가로 화분대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 광장, 공원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인 도로변에 화분을 두는 가변시설물로,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주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또한 미리 차단하는 공급시설물이다.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통합되는 디자인을 권장
통합디자인 적용시설 : 벤치, 자전거 보관대, 펜스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
대형 수목 식재형 화분대는 공간이 넓은 지역에 설치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나 계단 설치를 금지



급수부가 식물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
내구성이 강하고 물빠짐에 용이한 재료를 사용
· 사용 권장 재료 : 석재, 철재 등
· 사용 지양 재료 : 플라스틱, 목재, 고광택 재료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보행로 중심부의 양 측면에 설치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통합되는 디자인을 권장
 - ➔ 통합디자인 적용시설 : 벤치, 자전거 보관대, 펜스
- 급수부는 식물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
-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
- 대형 수목 식재형 화분대는 공간이 넓은 지역에 설치
-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 내구성이 강하고 물빠짐에 용이한 재료를 사용
 - ➔ 사용 권장 재료 : 석재, 철재 등
 - ➔ 사용 지양 재료 : 플라스틱, 목재, 고광택 재료
-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식재를 교체
-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나 계단 설치를 금지
-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 보행로 중심부의 양 측면에 설치
 - ➔ 유효보행폭이 1.5m 이하 가로공간의 설치 금지
- 지면에 고정하는 형태의 가로 화분대의 기초 구조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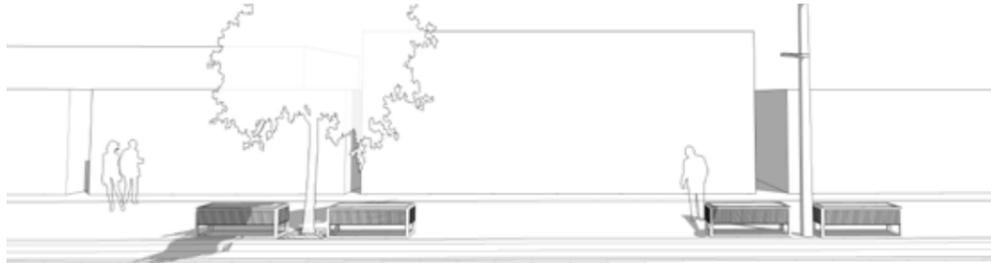
UD 가이드라인

- 가로 화분대는 보행자와 충돌 시 충격이 최대한 완화된도록 디자인
 - ➔ 가로 화분대의 모서리 면은 둥글게 라운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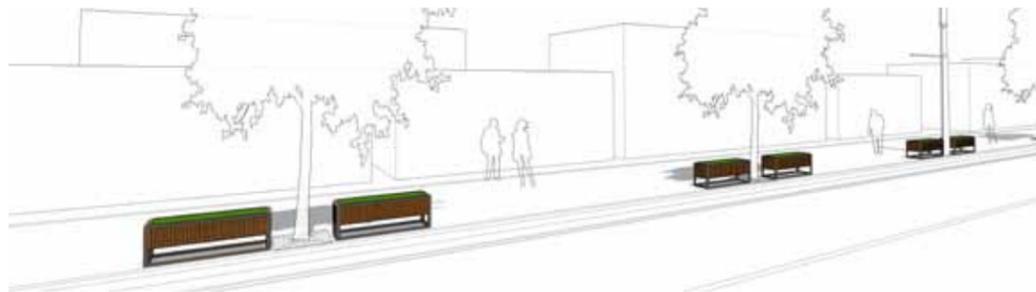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가로 화분대는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통합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통합디자인 적용시설 : 벤치, 자전거 보관대, 펜스
- 가로 화분대는 급수부는 식물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가로 화분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가로 화분대는 동일한 선상에 배치되는 시설물들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형태 및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대형 수목 식재형의 가로 화분대는 광장, 공원 등 공간이 넓은 지역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가로 화분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과도한 장식 및 그래픽 요소의 적용은 금지
- 가로 화분대는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보행에 방해가 되는 크기의 디자인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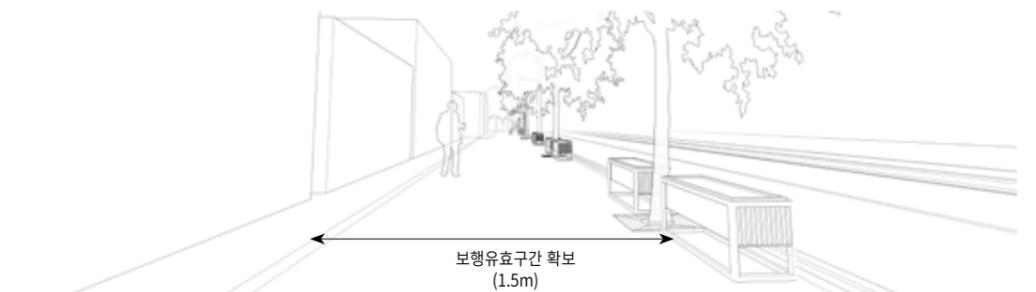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가로 화분대는 내구성이 강하고 물빠짐에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사용 권장 재료 : 석재, 철재 등
 - 사용 지양 재료 : 플라스틱, 목재, 고광택 재료
 - ※ 목재 사용 시 :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 검토 후 선정
- 가로 화분대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가로 화분대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한다.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설치 (Installation)

- 가로 화분대는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식재를 교체해 도심의 경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식재 교체 : 계절별로 일년생 초화류를 권장하지만 다년생 초화류 식재도 가능
- 가로 화분대는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나 계단 설치를 금지한다.
 - 경사지 및 계단 설치 : 가로 화분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

- 가로 화분대는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설치 지양 구역 : 급경사지, 오염지, 습지
 - 시설물이 밀집한 구역 : 가로 화분대 설치 지양
- 가로 화분대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한다.
 - 보행로 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 가로 화분대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정교하게 마감
- 보행로에 설치되는 가로 화분대는 보행로 중심부의 양 측면에 설치한다.
 -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유아, 노인 등)의 보행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
 - 유효보행폭이 1.5m 이하 가로공간의 설치 금지



- 지면에 고정하는 형태의 가로 화분대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UD 가이드라인

- 가로 화분대는 보행자와 충돌 시 충격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가로 화분대의 모서리 면은 둥글게 라운드 처리
 - ※ 필요에 따라 반사시트 부착

1.7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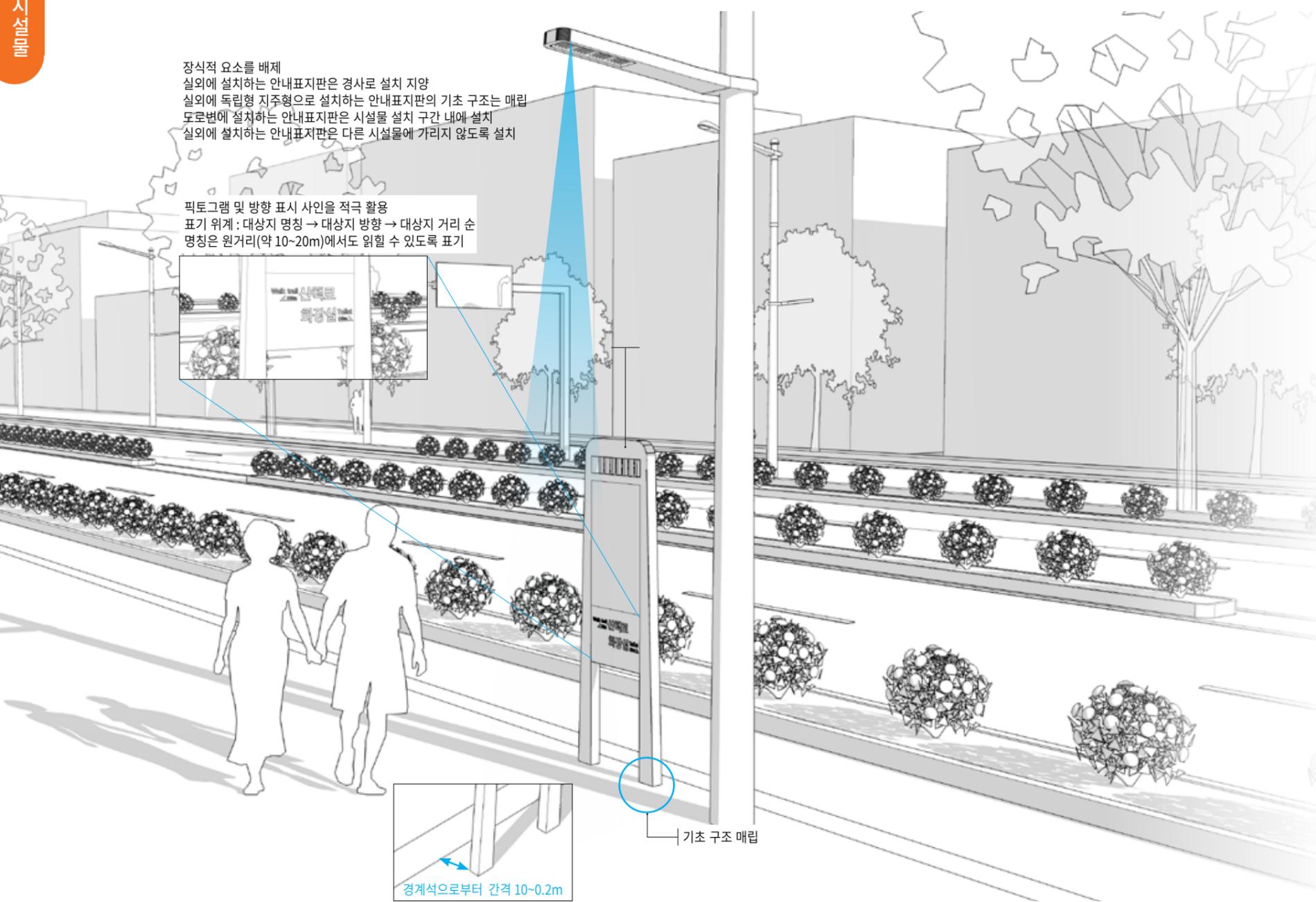
안내표지판은 유·무형의 지역의 자원을 알리는 시설로 명칭, 방향, 거리 등을 나타내고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시설물이다. 안내표지판은 실내형과 실외형으로 구분된다.

장식적 요소를 배제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경사로 설치 지양
실외에 독립형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기초 구조는 매립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시설물 설치 구간 내에 설치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다른 시설물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사인을 적극 활용
표기 위계 : 대상지 명칭 → 대상지 방향 → 대상지 거리 순
명칭은 원거리(약 10~20m)에서도 읽힐 수 있도록 표기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기초 구조 매립
경계선으로부터 간격 10~0.2m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
- 장식적 요소를 배제
-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 명칭과 방향 및 거리는 표기
- 명칭은 원거리(약 10~20m)에서도 읽힐 수 있도록 표기
-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사인을 적극 활용
- 표기 위계는 대상지 명칭 → 대상지 방향 → 대상지 거리 순으로 표기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고 바탕색과 표기색 2도로만 표기
-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
- 실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경사로 설치 지양
- 보행자의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
→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 실외에 독립형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기초 구조는 매립
-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선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
-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시설물 설치 구간 내에 설치
-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다른 시설물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

UD 가이드라인

-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표기를 병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기의 사용을 지양
-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등의 문자를 적극 활용

CPTED 가이드라인

-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연계
- 성인 한 사람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크기의 안내표지판 설치 지양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안내표지판은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안내표지판은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다.
- 안내표지판은 다른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안내표지판의 지주: 모듈화 권장

표기요소 (Mark)

- 안내표지판은 대상지의 명칭과 방향 및 거리는 반드시 표기한다.



- 안내표지판의 명칭은 원거리(약 10~20m)에서도 읽힐 수 있도록 표기한다.
- 안내표지판은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사인을 적극 활용하여 표기한다.
- 안내표지판의 표기 위계는 대상지 명칭 → 대상지 방향 → 대상지 거리 순으로 표기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안내표지판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고 바탕색과 표기색 2도로만 표기한다.
 - ➔ 주조색: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 보조색과 강조색: 적용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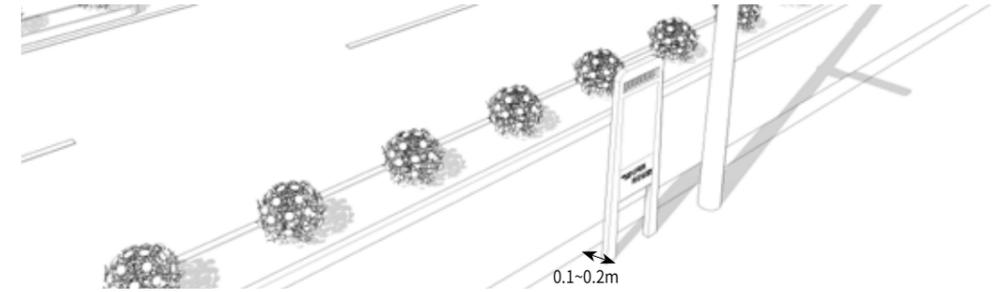
- 안내표지판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안내표지판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
- 안내표지판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의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한다.
 - ➔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 실외에 독립형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 불가피하게 볼트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실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안전한 이용과 정보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양한다.
 - ➔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지주가 수직이 되고, 사인물이 수평이 되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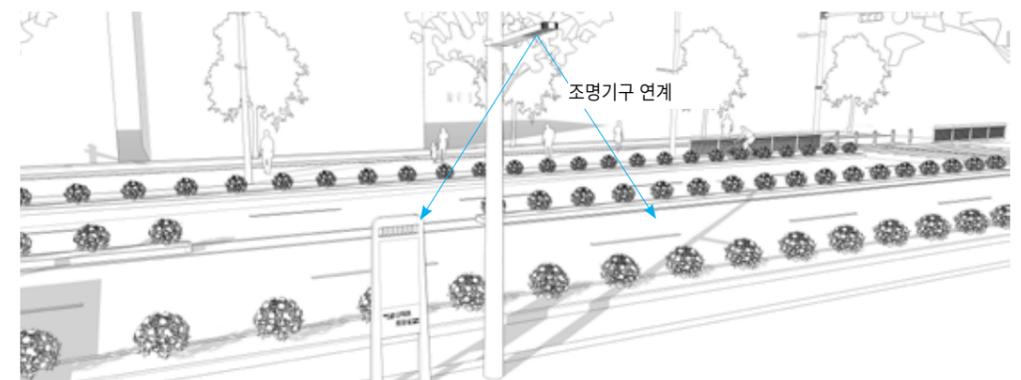
-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한다.
-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시설물 설치 구간 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다른 시설물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 ➔ 가로수 및 다른 공공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 ➔ 다른 공공시설물과의 간격: 최소 2m 이상

UD 가이드라인

- 안내표지판에는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표기를 병기하며, 설명 내용도 포함한다.
 - ➔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이외에는 방문하는 외국인에 맞는 외국어를 표기할 것을 권장
- 안내표지판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기의 사용을 지양한다.
- 안내표지판은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등의 문자를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인지성을 높여 디자인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안내표지판은 야간 이용자를 위해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연계할 것을 권장한다.
 - ➔ 실내설치 안내표지판: 벽부 조명 연계
 - ➔ 실외설치 안내표지판: 주위의 공공조명 연계



- 성인 한 사람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크기의 안내표지판 설치는 지양한다.
 - ➔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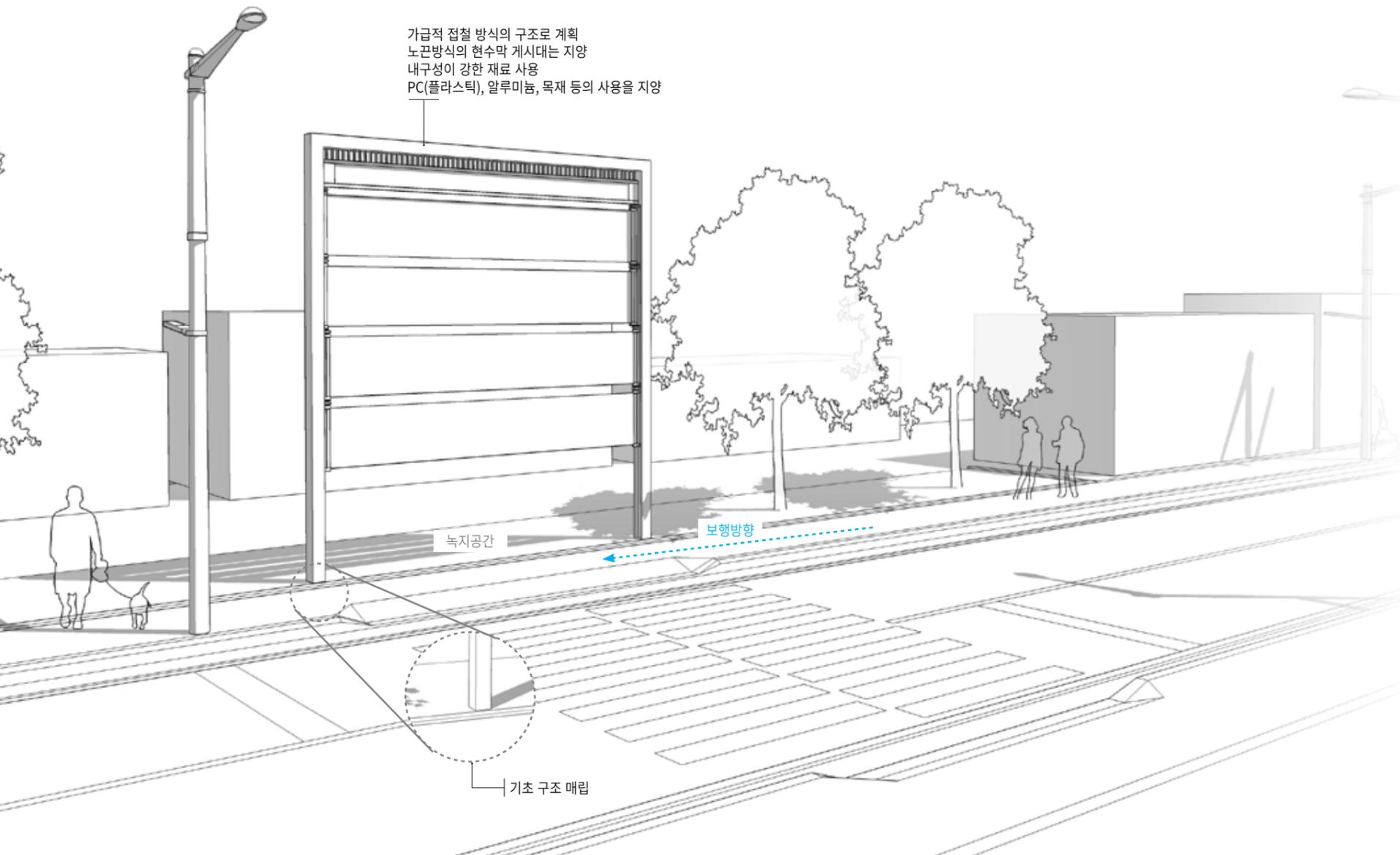
현수막 게시대

정의

현수막 게시대는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되는 안내시설물이다.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기성제품 사용을 권장
형태: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한 형태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치
색상: 제천시 공공시설물 색상을 적용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다른 지주시설물과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가급적 접철 방식의 구조로 계획
노끈방식의 현수막 게시대는 지양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기성제품 사용을 권장
 - ➔ 형태: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한 형태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치
 - ➔ 색상: 제천시 공공시설물 색상을 적용
- 가급적 접철 방식의 구조로 계획
 - ➔ 노끈방식의 현수막 게시대는 지양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다른 지주시설물과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공개공지나 녹지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보행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기초 구조는 매립

UD 가이드라인

- 현수막의 정보구성은 서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장

CPTED 가이드라인

- 하부공간을 개방해 시야 확보를 통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디자인
- 공공조명과 연계, 연계가 어려운 곳은 조명 설치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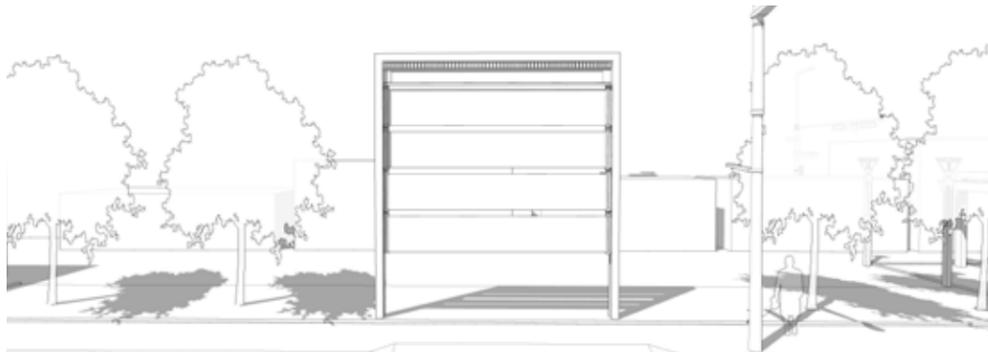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현수막 게시대는 별도로 디자인하지 않고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기성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 형태: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한 형태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치
 - 색상: 제천시 공공시설물 색상을 적용
- 현수막 게시대는 **가급적 접철 방식의 구조**로 견고하게 고정해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 노끈방식의 현수막 게시대는 **지양**



- 현수막 게시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부피감이 최소화되도록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디자인은 **지양**
 -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 현수막 게시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현수막 게시대는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한다.
 - 자연친화적인 저채도 색상 배색
- 현수막 게시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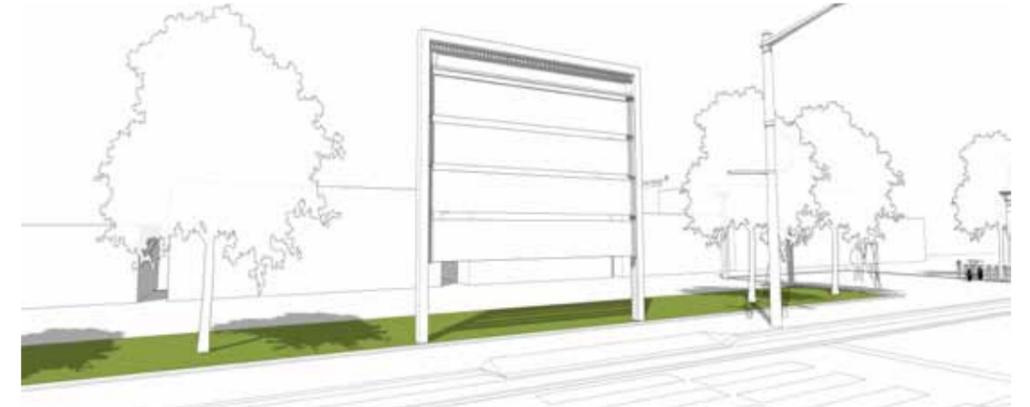


- 현수막 게시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 ※ 기성제품 사용을 권장

- 현수막 게시대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현수막 게시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통합지주 사용가능 시설: 공공조명(가로등, 보안등), 안내판 등
- 현수막 게시대는 **공개공지나 녹지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 위(공공영역)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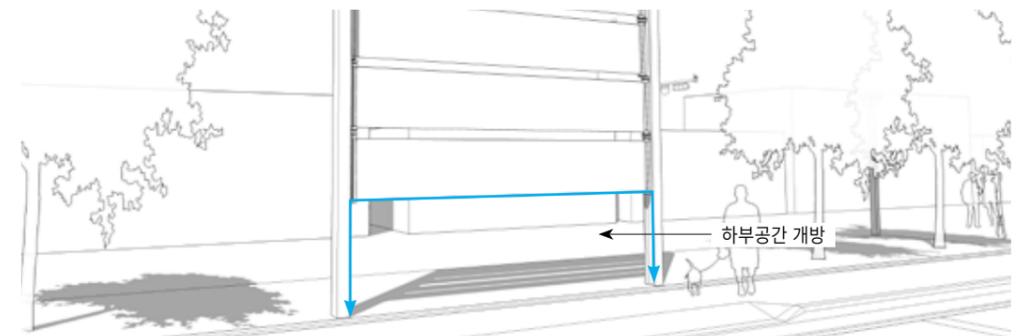
- 현수막 게시대는 **보행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경관을 과도하게 차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
 -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 현수막 게시대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UD 가이드라인

- 현수막 게시대의 정보구성은 이미지보다는 **가급적 서체를 통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유도한다.
 - 정보구성: 주요 내용의 서체 + 보조내용(일시, 장소, 주관 등)으로 한정해서 정리할 것을 권장

CPTED 가이드라인

- 현수막 게시대의 **하부공간을 개방**해 **시야 확보**를 통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 현수막 게시대의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조명과 연계**할 것을 권장하며, **연계가 어려운 곳은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지정벽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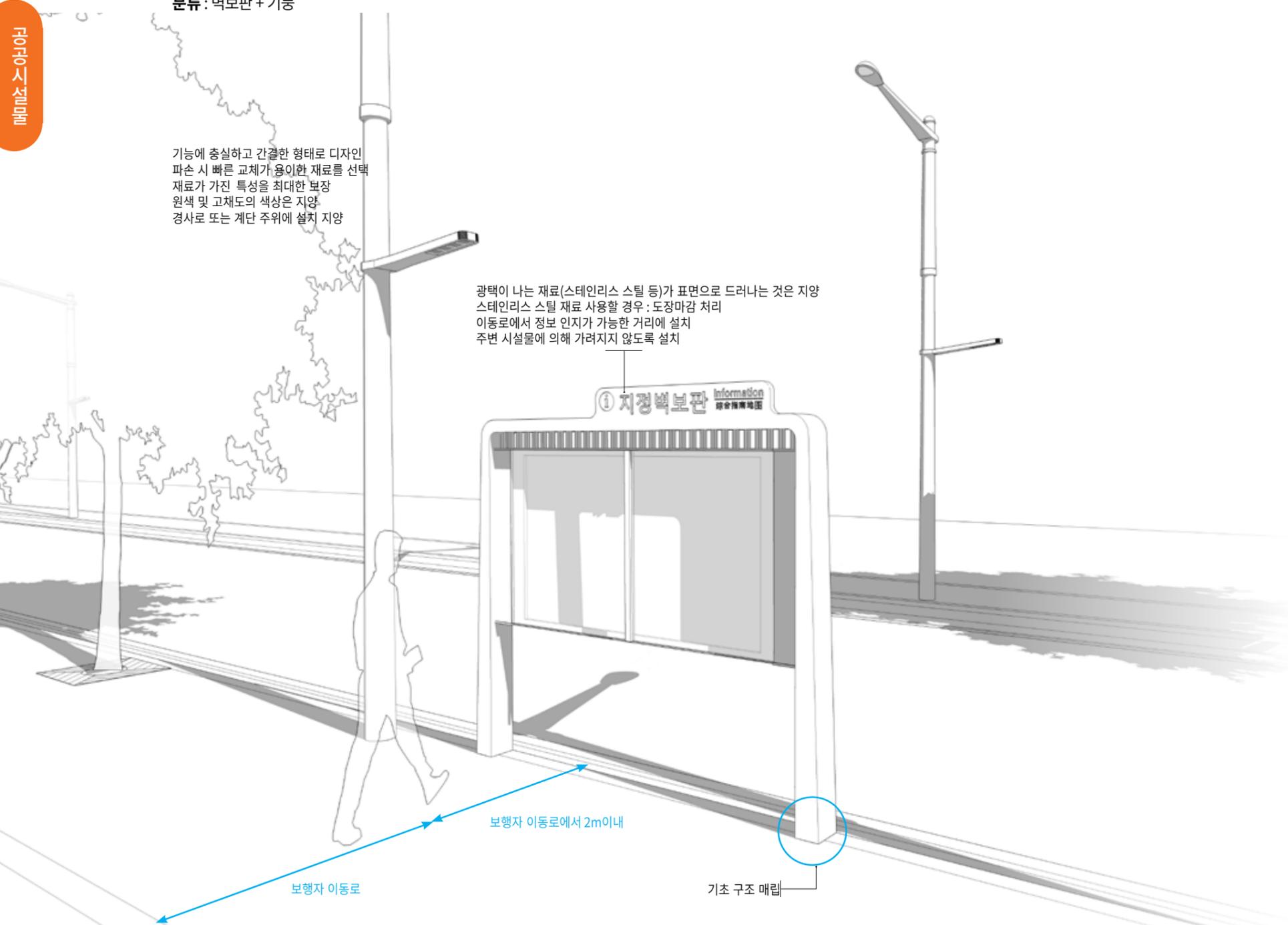
정의

지정벽보판은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으로 구분되는 시설물로 벽보(종이·비닐 등에 문자 또는 그림 등을 넣은 게시물을 부착하는 광고)를 부착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벽보는 일정규격 이내로 규격화하여 부착한다. 벽보는 민간의 광고물도 부착이 가능하지만 지정벽보판 전체의 50%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분류: 벽보판 + 기둥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경사로 또는 계단 주위에 설치 지양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
-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
-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
 -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 주조색: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 보조색: 전체 면적 20% 이내(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
 - ➔ 강조색: 전체 면적 10% 이내
- 경사로 또는 계단 주위에 설치 지양
-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
-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
 - ➔ 보행자 이동로에서 2m 이내 설치
- 기초 구조는 매립

UD 가이드라인

- 정보 표기범위는 0.8m~1.6m 이내에 표기할 것을 권장
 - ➔ 정보표기 범위: 벽면부착형 0.8m ~ 2.4m, 독립형 0.8m ~ 2.4m

CPTED 가이드라인

-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삽입
-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뒷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지정벽보판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장식성보다는 기능성을 우선시하여 설계
- 지정벽보판은 보행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지면에서 0.6m 이하에는 정보 표기를 금지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지정벽보판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지정벽보판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
- 지정벽보판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 지정벽보판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한다.
 - 주조색: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전체 면적 20% 이내(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
 - 강조색: 전체 면적 10% 이내

설치 (Installa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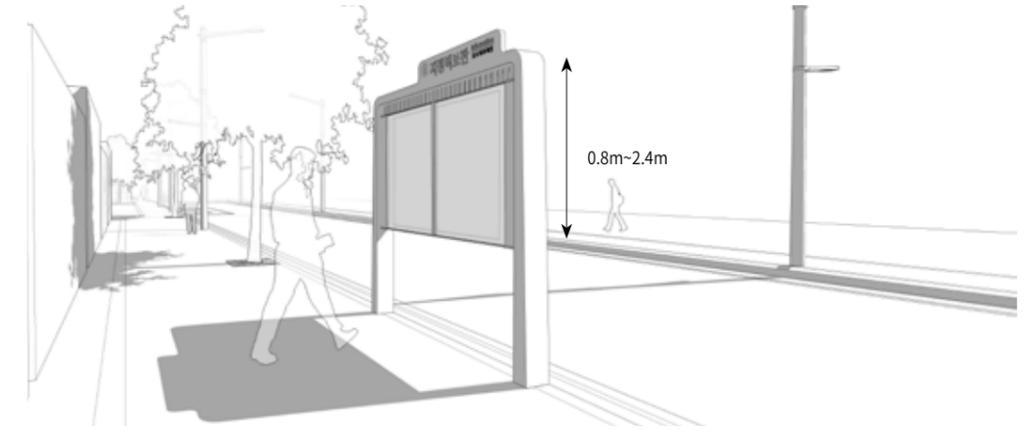
- 지정벽보판은 경사로 또는 계단 주위에 설치를 지양한다.
- 독립형 지정벽보판은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지정벽보판은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한다.
 - 보행자 이동로에서 2m 이내 설치



- 지정벽보판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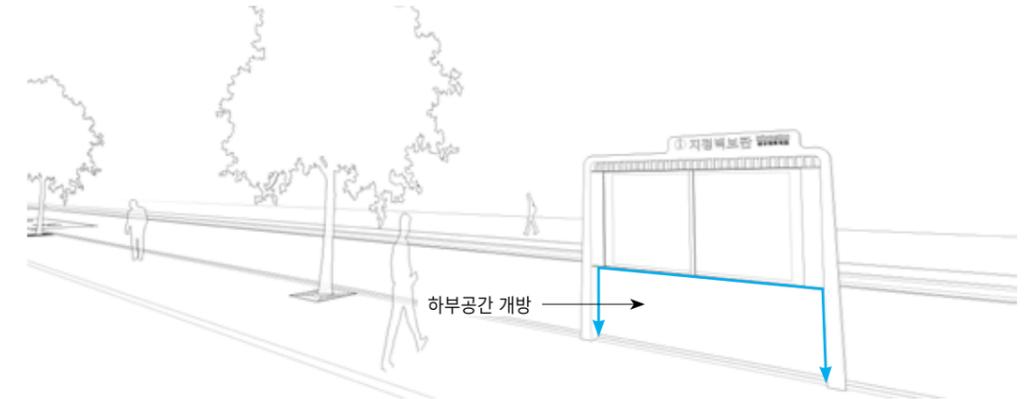
UD 가이드라인

- 지정벽보판은 주요 정보 표기범위는 0.8m~2.4m 이내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지정벽보판은 야간 이용자를 위해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삽입할 것을 권장한다.
-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뒷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2. 공공공간

2.1 개요

정의

제천시 공공공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 : 제천시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
- ② **장소** : 공적 영역의 개방된 공간
- ③ **목적** : 휴식, 이동, 놀이, 집회 등 다양한 목적
- ④ **구분** : 녹지공간, 수공간, 보행공간

분류

제천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분류는 녹지공간, 수공간, 보행공간을 의미한다.

분류	세부항목
녹지공간(1종)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수공간(1종)	분수(벽천분수, 바닥분수, 워터스크린 등) 공간, 인공폭포, 기타 심미성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연못, 수로 등의 수공간
보행공간(1종)	광장(공공건축물 부속광장, 자전거광장, 인라인광장 등을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

[표] 공공공간 분류 항목

기본방향



[그림] 공공공간 기본방향

공통사항

공공공간 기본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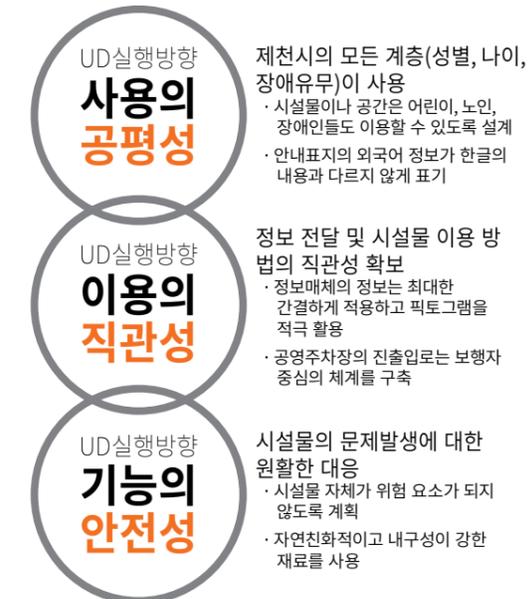
- 개방적인 가로환경을 조성
 - 시설물 설치 구역을 명확히 구분
 - 보행로 점유를 최소화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은 구분하지만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성
 - 시각적, 물리적으로 차폐(높은 담장이나 울타리)하는 것은 지양
- 보행로는 가급적 원거리의 상황이 인지되도록 조성
 - 시각적 장애물을 최소화
- 야간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조성
 - 공공공간은 범죄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 자연 감시가 어려운 공간은 인공감시시설 설치를 권장
 - CCTV를 설치(통합관제시스템 운영)
- 보행공간은 연속적이며 단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성
 - 보행로의 장애를 최소화



UD / CPTED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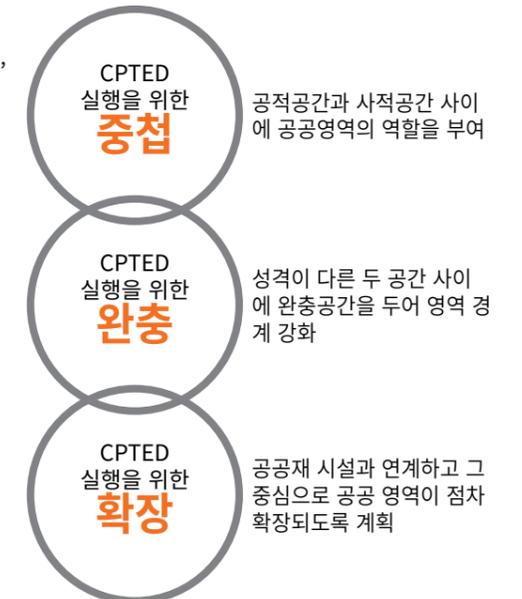
제천시 UD(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천시 UD(Universal Design) 7대 원칙 중에서 '사용의 공평성, 이용의 직관성, 기능의 안전성'을 중점으로 적용



제천시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제천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6대 원칙을 공간의 역할에 단계적으로 적용



2.2 녹지공간

녹지공간 (공원)

정의

공공공간에서의 녹지공간은 자연지(自然地)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의미한다. 자연지는 자연공원으로 인공으로 조성한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대표된다.

공원의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한다.

분류 : 자연공원, 도시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시내동 일원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을 권장
- 가족 단위(3~5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및 편의시설을 마련
- 주출입구는 인접 보행공간이나 횡단보도 등의 동선과 연계하여 계획
- 게이트형의 입구사인 설치의 지양
- 다양하게 녹화할 것을 권장
 - ➔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 식재
- **[어린이 공원]** 식재 공간에 정보매체(해설판) 설치를 권장
- **[어린이 공원]** 놀이 시설물과 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설치
- 출입구에는 대상지의 명칭을 알리는 낮은 채널형 입구사인 설치
- 경계부에는 녹지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
- 시설물은 보행 동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
- 시설물의 기초 구조는 매립
- 안내표지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 사용을 권장
-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
- 수목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배치.
- 조명기구의 평균 조도는 10lux를 기준으로 최대 15lux 이내로 조절
- 수목등(상향 투광등)을 설치할 경우 0.3lux~0.6lux 범위 이내의 등기구를 사용

UD 가이드라인

- 휴게시설 설계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마련
- 화장실의 위치는 출입구, 교차지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
- **[어린이 공원]** 놀이터의 바닥재는 자연소재(모래 등)를 사용
- 다양한 이동수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무장애 보행로를 마련
- 급경사 시작점에 사인물(안내판, 바닥 등)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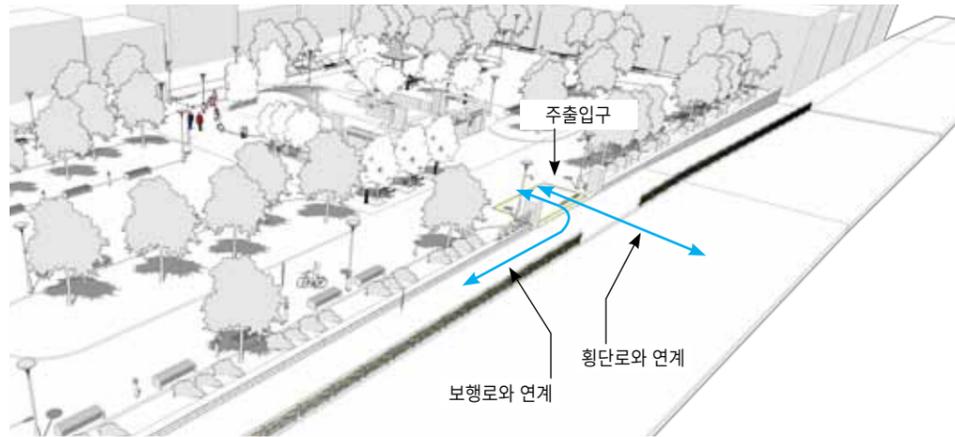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산책로와 탐방로에는 조명등(보행등 및 보안등)을 설치
-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 경계부 수목 : 지하고 2m 이상
 - ➔ 경계부 : 휴게시설(벤치 및 앉음벽 등)을 병행 설치
- 주출입구는 주위보다 밝은 조명으로 계획

PUBLIC 가이드라인

공간 (Space)

- 시내동 일원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을 통해 연속적인 녹지축 형성을 권장한다.
- 녹지공간(공원)에는 **가족 단위(3~5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및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 휴게 시설은 수목 또는 차양막을 통해 그늘 형성을 권장
- 녹지공간(공원)에는 지정된 쓰레기 처리장소를 마련한다.
- 녹지공간(공원)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 구역을 지정할 경우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한다.
 - ➔ 대형 반려동물과 소형 반려동물의 공간을 구분할 것을 권장
- 녹지공간(공원) **주출입구는 인접 보행공간이나 횡단보도 등의 동선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 보행자가 대각선 횡단을 하여 출입구에 진입하지 않도록 설계



- 녹지공간(공원)에는 보행로를 횡단하는 큰 규모의 **게이트형의 입구사인 설치**는 지양한다.
 - ➔ 출입구 주변에 이용 안내표지판 및 종합안내도를 설치하여 입구의 인지도 확보

조경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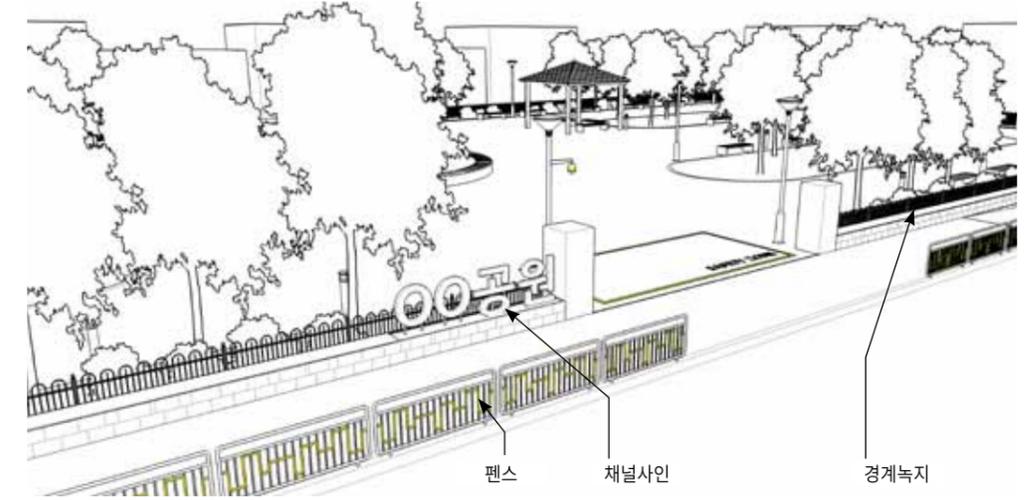
- 일정규모를 가진 녹지공간(공원)은 시설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녹지내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등 다양하게 녹화**할 것을 권장한다.
 - ➔ 여름철에 이용자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느티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등) 식재를 권장
 - ➔ 가로변에는 공기 정화, 방재나 방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경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시설물 (Facility)

- 주거지역과 인접한 녹지공간(공원)은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 운동시설 설치 위치는 **경계부에 설치**
 - ※ 운동시설 주변에는 **조명기구를 병행** 설치

- **[어린이 공원] 식재 공간에 교육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정보매체(해설판) 설치**를 권장한다.
- **[어린이 공원] 녹지공간의 경우 어린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 시설물과 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설치한다.
 - ➔ 놀이터와 시각적으로 연결된 장소에 가족 단위(3~5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및 편의시설을 마련
- 녹지공간(공원) **주출입구에는 대상지의 명칭을 알리는 낮은 채널형 입구사인** 설치를 권장한다.
- 녹지공간(공원)과 도로(보행로,차로) **경계부는 담장이나 펜스보다는 경계녹지와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 단,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원과 조화로운 디자인 펜스를 설치



-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보행 동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자연친화적 소재 및 친환경 재료의 시설물 사용을 권장한다.
 - ➔ 편의시설 : 벤치, 앉음벽 화단, 퍼걸러(파고라), 음수대, 휴지통 등
 - ※ 같은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디자인을 통일시킬 것
-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한다.
 -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제작 및 설치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녹지공간(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친환경 소재 및 자연 색채 적용**을 권장한다.
-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안내표지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 녹지공간(공원)의 포장패턴은 구역별로 차별화를 줄 수 있으나 주변에 조화를 이루도록 저채도의 색상으로 계획한다.
 - ➔ 복잡한 문양의 패턴이나 다양한 색이 병행되는 포장패턴은 지양
 - ※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정서 함양을 위해 다채로운 색채와 패턴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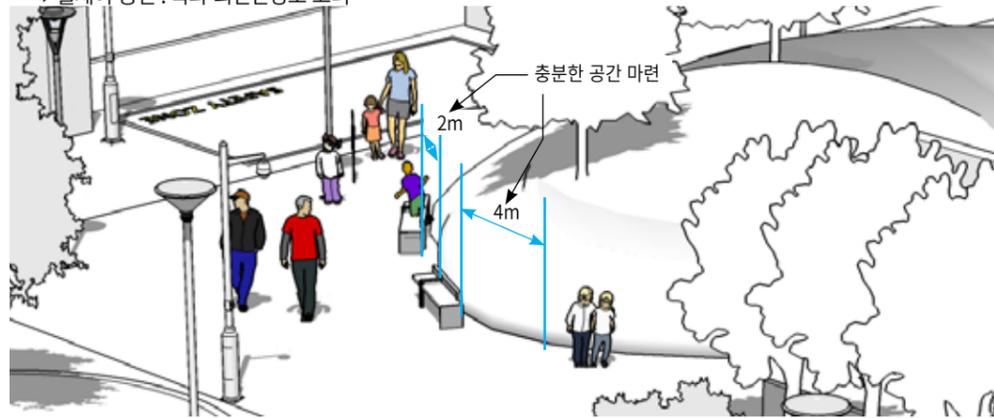
조명 (Lighting)

- 녹지공간(공원)의 조명기구에 소요되는 전력에는 태양광 등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
 - ➔ 주요 관광지에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
- 녹지공간(공원)의 조명은 연색성이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등기구(LED)를 설치한다.
- 녹지공간(공원)의 화장실에는 **센서 부착형 조명기구를** 설치를 권장한다.
 - ※ 친환경도사이미지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차원
- 녹지공간(공원)에서는 **수목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 ➔ 우범화가 우려되는 구간은 보안등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등을 병행 설치

-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 주거지에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지나치게 높은 휘도나 원색 조명의 설치를 금지한다.
 - ➔ 주거지로 빛이 투사되지 않도록 빛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조명기구 커버를 설치
- 녹지공간(공원)은 야간에도 심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 특별한 행사 기간 외 색채 변화나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화려한 야간경관 연출 지양
- 녹지공간(공원)의 조명기구의 평균 조도는 10lux를 기준으로 최대 15lux 이내로 조절하여 설치한다.
- 녹지공간(공원)에 수목등(상향 투광등)을 설치할 경우 0.3lux~0.6lux 범위 이내의 등기구를 사용한다
 - ➔ 빛으로부터 수목의 자연 생태 보전

UD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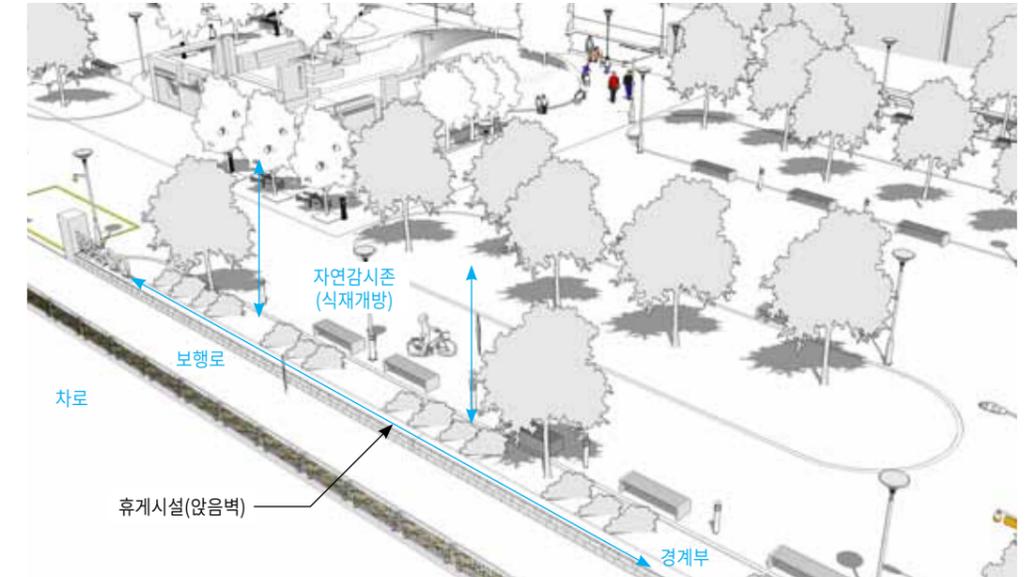
- 녹지공간(공원)의 휴게시설(벤치 등) 설치 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다.
 - ➔ 휠체어 공간 : 폭과 회전반경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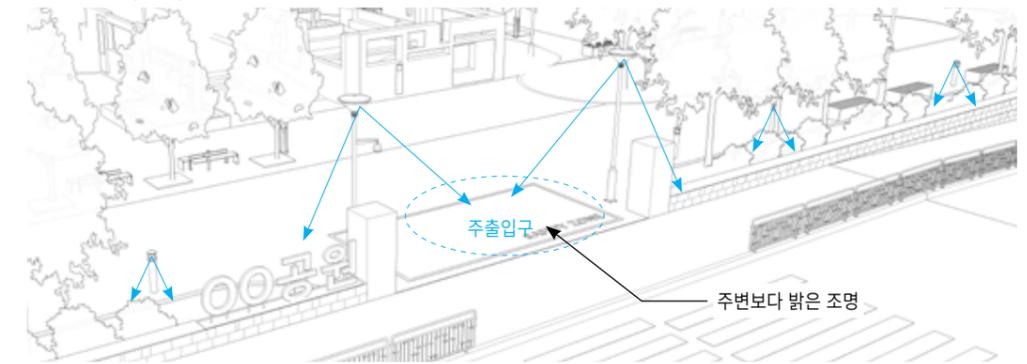
- 녹지공간(공원)의 출입구 바닥 면은 단 차이를 없애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 단 차이가 생길 경우 : 안내표지 설치
- 녹지공간(공원)에서 화장실의 위치는 출입구, 교차지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한다.
 - ➔ 화장실은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는 공간에 설치
 - ➔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
 - ➔ 화장실 주변의 사각지대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 [어린이 공원] 녹지공간(공원) 내 설치되는 놀이터의 바닥재는 자연소재(모래 등)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 인공소재를 설치할 경우 : 충격 흡수가 가능한 소재 사용
- 녹지공간(공원)은 다양한 이동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의 배치
- 녹지공간(공원)에는 무장애 탐방로 마련을 권장한다.
 - ➔ 탐방로에 높낮이가 다른 이중 손잡이(핸드레일, Handrail)를 연속적으로 설치
 - ➔ 탐방로에는 일정간격으로 점자 안내판을 설치
 - ➔ 일정한 간격마다 휴식장소를 조성
- 녹지공간(공원)의 보행로에 장애 요소가 있을 시 반드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녹지공간(공원)에서 급경사 시작점에 사인물(안내판, 바닥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사전에 급경사를 인지하도록 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녹지공간(공원) 내 산책로와 탐방로에는 조명등(보행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
 - ➔ 조명등의 빛 조도가 겹치도록 설치
- 녹지공간(공원)의 내·외부 공간은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외부 → 내부 상황 인식을 위해 경계부 수목의 지하고가 2m 이상의 수목을 식재
 - ➔ 보행로와 접한 경계부에는 자연감시가 용이한 휴게시설(벤치 및 앉음벽 등)을 병행 설치



- 녹지공간(공원)의 자연감시 강화를 위해 주출입구는 주위보다 밝은 조명으로 계획한다.



2.3 수공간

수공간

(분수·인공폭포·인공 연못·수로 등)

정의

수공간은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수자원을 경관 또는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는 동적 공간 개념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보다 여유있고 생동감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

수공간은 자연 수공간과 인공 수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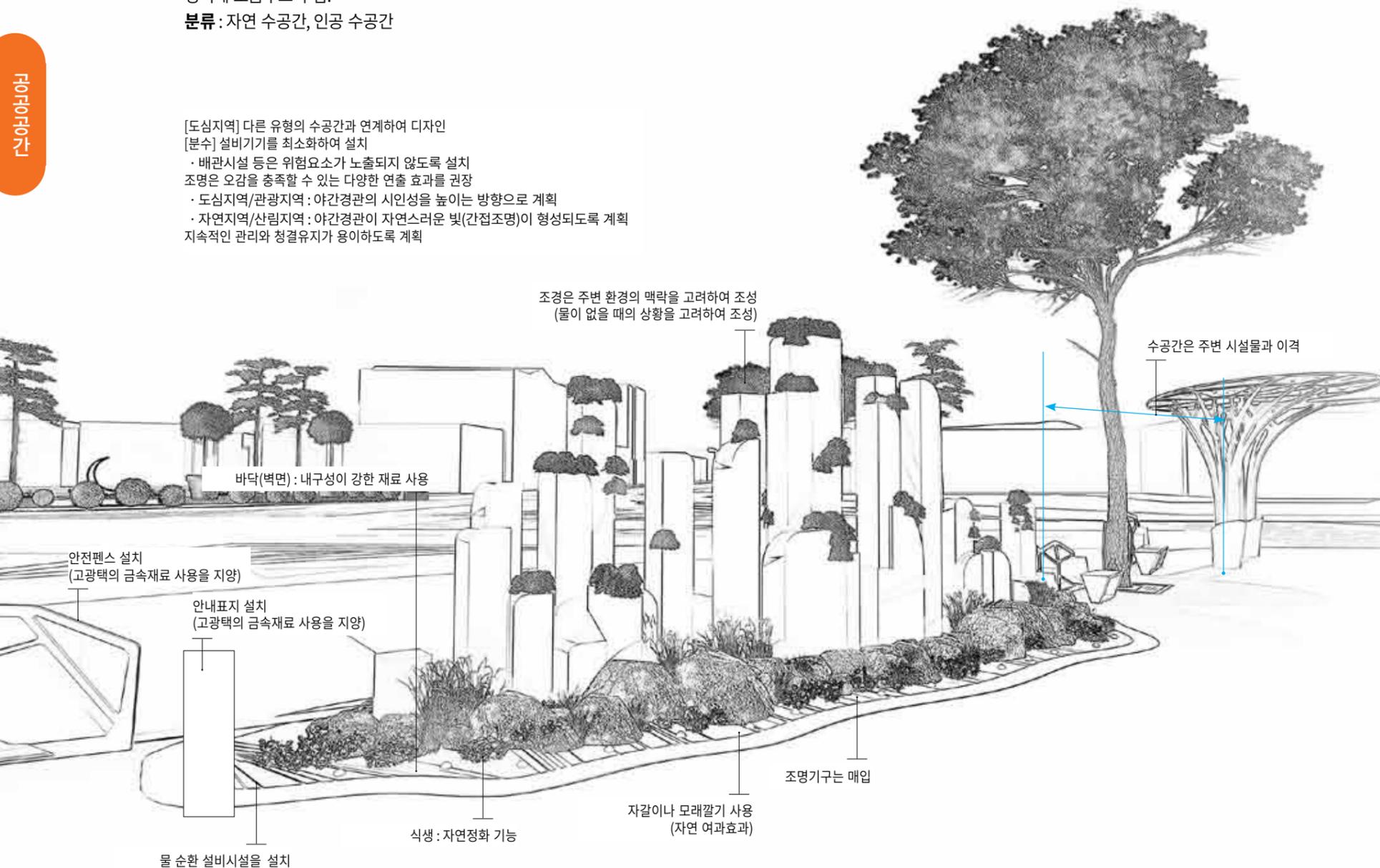
수공간의 목적 : 제천의 특색을 살리고 자연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도시로 탈바꿈. 시민들의 삶의 질과 정서에 도움주하고자 함.

분류 : 자연 수공간, 인공 수공간

- [도심지역] 다른 유형의 수공간과 연계하여 디자인
[분수] 설비기기를 최소화하여 설치
- 배관시설 등은 위험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조명은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 효과를 권장
 - 도심지역/관광지역 : 야간경관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
 - 자연지역/산림지역 : 야간경관이 자연스러운 빛(간접조명)이 형성되도록 계획
- 지속적인 관리와 청결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기타공간

기타공간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도심지역] 다른 유형의 수공간과 연계하여 디자인
- 공공시설물화된 수공간은 주변 시설물과 이격시켜 설치
- 가동 중지 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 물 순환 설비시설을 설치
- [분수] 설비기기를 최소화하여 설치
- 식생을 통해 자연정화가 이뤄지도록 계획
- 조경은 주변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조성
 - ➔ 물이 없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
- 자갈이나 모래 깔기 등으로 미생물에 의한 자연 여과효과의 적용을 권장
- 안전시설 및 안내 표지는 시인성을 우선하여 디자인
 - ➔ 안전시설 / 표지 : 색/형태가 주변과 구분되게 계획
- 배관시설 등은 위험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고광택의 금속재료 사용을 지양
- 바닥 및 벽면에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유리 소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를 높여 2차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 지속적인 관리와 청결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 재료가 가진 고유 색상을 최대한 적용
- 시설물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를 지양
 - ➔ 시설물의 안전, 강조, 상징성 등을 표현하고자 원색을 사용할 경우 면적의 30% 이내로 사용
- 조명은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 효과를 권장
 - ➔ 도심지역/관광지역 : 야간경관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
 - ➔ 자연지역/산림지역 : 야간경관이 자연스러운 빛(간접조명)이 형성되도록 계획
- 조명기구에는 이용자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매입

UD 가이드라인

- 접근성과 안전성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
- 위험 요소는 반드시 제거
- 물과 경계를 이루는 모서리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 ➔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될 경우 반드시 경고 사인을 설치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동선을 반드시 수립하여 디자인
- 부속 조형물은 날카롭지 않게 디자인
 - ※ 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미끄럼 사고의 2차 사고 방지 차원

CPTED 가이드라인

- 주변 시야가 개방되도록 디자인

PUBLIC 가이드라인

공간 (Space)

- **[도심지역]** 수공간은 다른 유형의 수공간과 연계하여 디자인한다.
- 공공시설물화된 수공간은 주변 시설물과 이격시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수공간은 분수의 형태와 공간의 특색에 맞는 조형물 설치를 권장한다.
- 수공간(벽천분수, 분수, 공공시설물화 된 수공간)은 **가동 중지 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가동 중지시 편의 시설로 대체될 수 있는 디자인 및 계획 마련
- **[인공폭포]** 수공간은 단차의 적절한 조절 및 조형물의 혼합 배치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도록 계획한다.
 - 주변 보행로와 재질의 연계성 고려
- 수공간은 산소 공급을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해 **물 순환 설비시설을 설치**한다.
 - 배수와 급수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 **[분수]** 수공간에 설치하는 분수 시설은 작동을 위한 **설비기기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연못]** 보행로와 연계된 평정수 및 수로의 경우, 공간의 경계 턱이나 난간의 설치를 지양한다.
 - 경계턱으로 인한 영역의 구분보다 지면과 유사한 높이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
- 수공간은 표면의 오염 및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설계한다.
- 수공간은 배수를 위한 지면의 고저차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단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대비하여 설계

조경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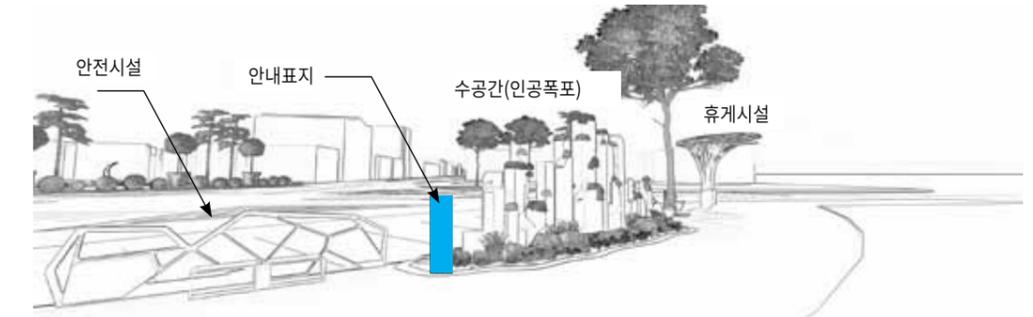
- 수공간은 적절한 식생을 통해 **자연정화가 이뤄지도록 계획**한다.



- 수공간의 조경은 **주변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형태·크기·높이차에 변화를 주는 설계
 - 물이 없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
 - 주변 조형물, 구조와 조화되도록 디자인
- 수공간에는 **자갈이나 모래갈기 등으로 미생물에 의한 자연 여과효과의 적용을 권장**한다.

시설물 (Facility)

- 수공간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안내 표지**는 **시인성을 우선**으로 하되 주변과 조화롭게 디자인한다.
 - 정보시설: 색 / 형태가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
 - 휴게시설: 색 / 형태가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
 - 안전시설 / 표지: 색/형태가 주변과 구분되게 계획



- 수공간의 **배관시설** 등은 **위험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유지 관리를 위해 노즐을 개폐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수공간에는 **고광택의 금속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수공간의 **바닥 및 벽면에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판석, 블럭, 타일 등)를 사용한다.
- 수공간에 **유리 소재를 사용할 경우** 일반 시설에 설치하는 것보다 **강도를 높여 2차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 수공간의 **지속적인 관리와 청결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수공간의 표면의 이끼 등 오염에 대비한 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한다.
- 수공간에는 물 순환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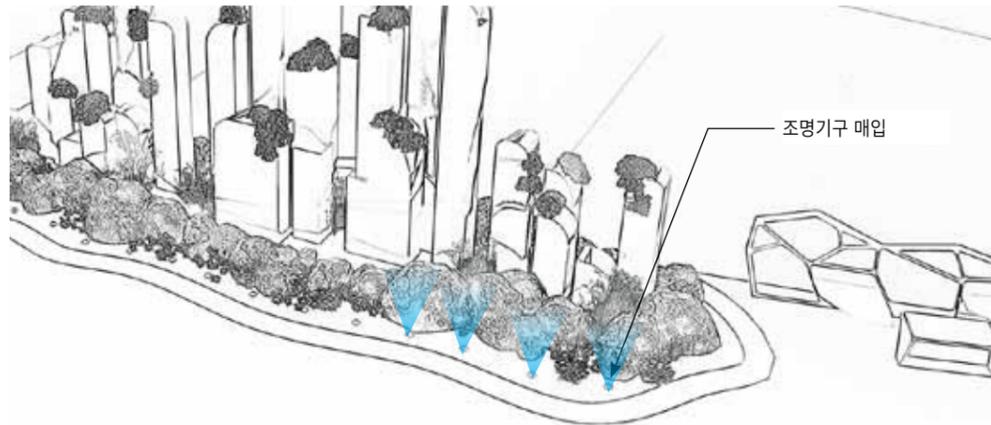
- 수공간에 사용하는 시설물 및 마감재료는 **재료가 가진 고유 색상을 최대한 적용**한다.
- 수공간에 사용되는 **시설물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를 지양**한다.
 - 시설물의 안전, 강조, 상징성 등을 표현하고자 원색을 사용할 경우 면적의 30% 이내로 사용
- 수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도장할 경우 방수성이 있으면서 인체에 무해한 도료를 사용한다.
- 수공간에는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지침 표지**를 설치한다.
 - 상설 가동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안내 표지

조명 (Lighting)

- 수공간에는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 효과**를 권장한다.
 - 도심지역/관광지역: 야간경관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
 - 자연지역/산림지역: 야간경관이 자연스러운 빛(간접조명)이 형성되도록 계획



- 수공간의 조명기구는 이용자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매입할 것을 권장한다.
 - 수공간은 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명기구는 모두 방수되는 등기구를 사용



UD 가이드라인

- 수공간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한다.
- 수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 접근시 안전을 고려한 깊이 고려
 - 수공간의 바닥은 물기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거나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
 - 낙상 사고 우려가 있는 공간의 경우 난간, 위험표지, 조명을 설치
- 수공간은 물과 경계를 이루는 모서리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될 경우 반드시 경고 사인을 설치



- 수공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동선을 반드시 수립하여 디자인한다.
 -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의 작동 수위 조절
 - 보행로에 위치할 경우 편의시설로서의 추가적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
- 수공간에 설치하는 부속 조형물 등은 날카롭지 않게 디자인한다.
 - ※ 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미끄럼 사고의 2차 사고 방지 차원

CPTED 가이드라인

- 수공간은 주변 시야가 개방되도록 디자인한다.



- 수공간에서 추락의 우려가 있는 공간의 경우 안전 조명 설치 및 주의 표지를 의무화한다.

2.4 보행공간

보행공간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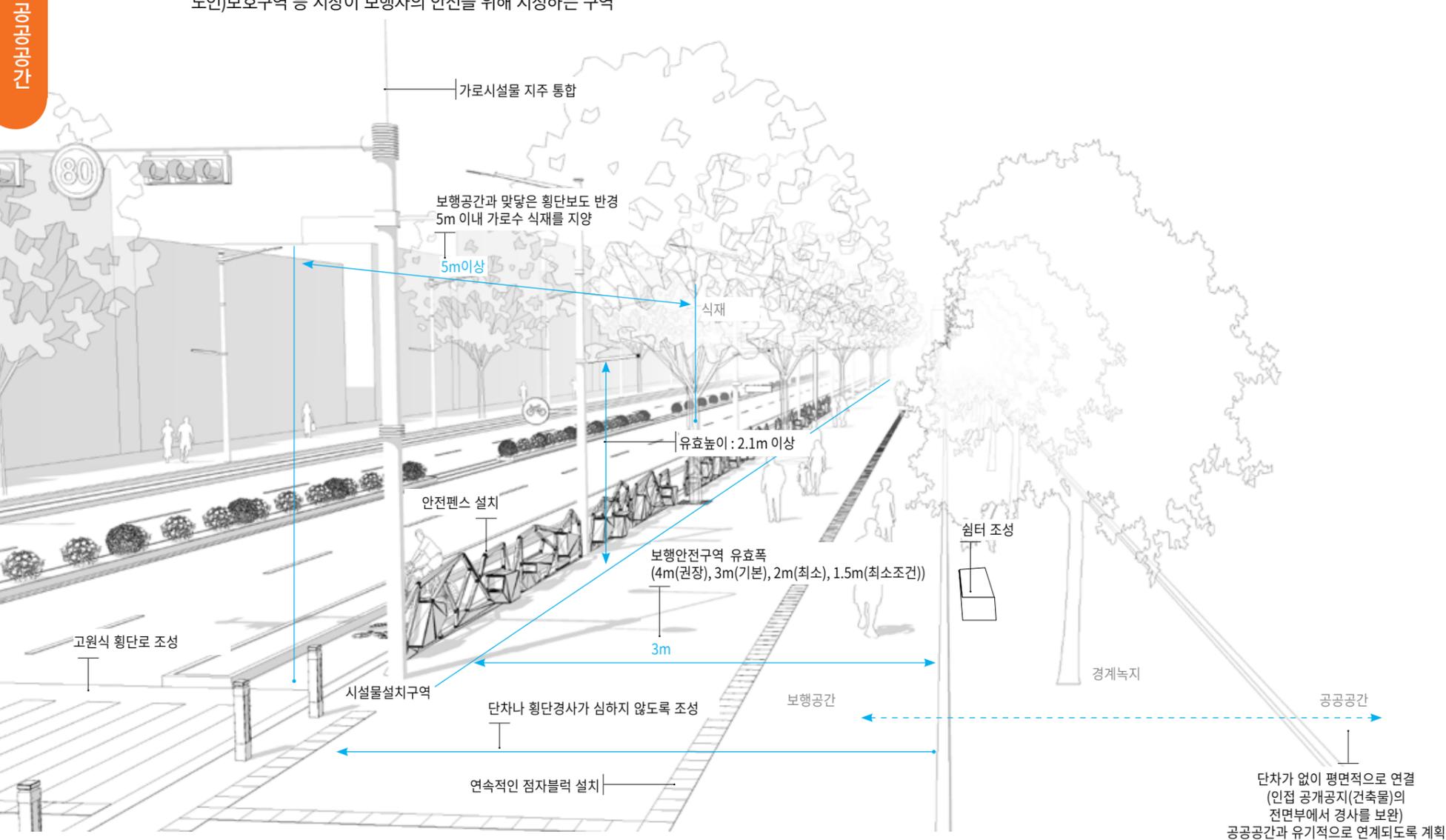
정의

보행공간은 보도 또는 보행로로 도로교통법상 경계석, 안전표지 그 밖의 설치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공간을 말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보도와 그에 인접하거나 연결된 광장, 테마거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보장되는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지칭한다.

목적: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공평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행친화도시와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

분류: 광장(공공건축물 부속광장, 자전거광장, 인라인광장 등을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은 기본적으로 폭 3m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
 - ▶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4m(권장), 3m(기본), 2m(최소), 1.5m(최소조건)
- 보행안전구역에서는 법적기준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
 - ▶ 유효높이는 시설물설치구역까지 적용
- 단차가 없이 평면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 ▶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단차 발생시: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에서 경사를 보완
- 가로시설물 지주는 통합하여 설치
- [광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 횡단보도 진입부는 부분 턱낮춤을 권장
- 교차로와 맞닿은 보행공간(가로변 보행로)에는 안전펜스를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과 맞닿은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
-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는 가로수나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 보행안전구역 내 맨홀 및 배수구의 설치는 지양

UD 가이드라인

- [광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
-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단차나 횡단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조성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
- 바닥 마감재로는 투수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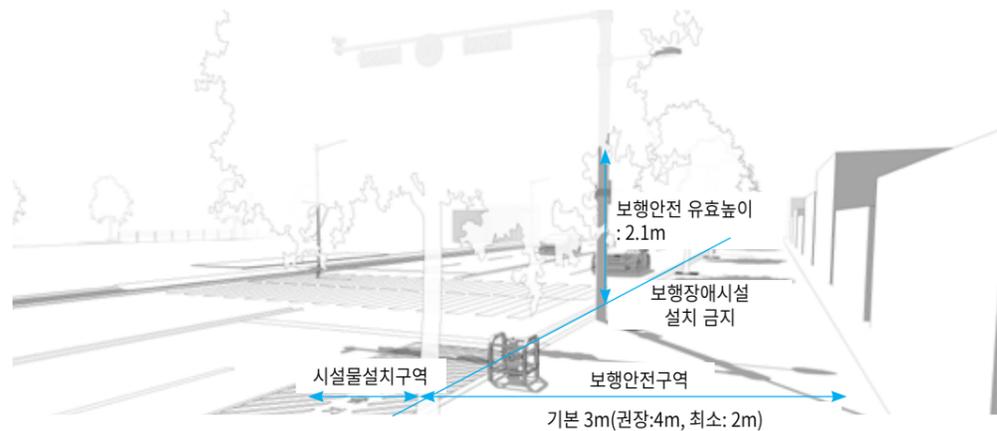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계획
- 경계 분리선(경계석 등)을 명확히 설치
- 충분한 조도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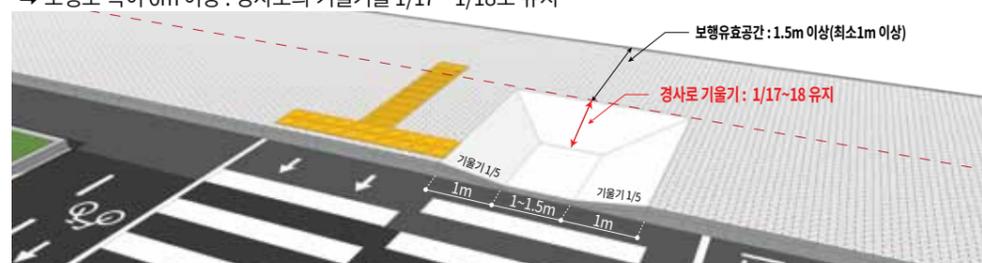
PUBLIC 가이드라인

공간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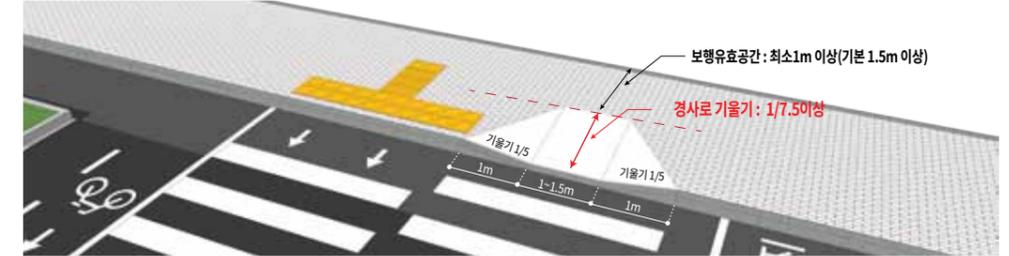
- 보행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보행공간에서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은 기본적으로 폭 3m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 4m(권장), 3m(기본), 2m(최소), 1.5m(최소조건)**
 - ※ 최소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구역을 우선 확보한 후 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계획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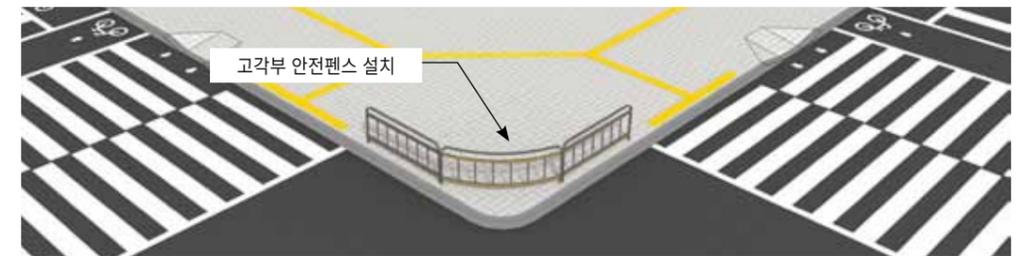
- 보행공간에서 지형상 보행안전구역의 기본 유효폭인 3m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한다.
 -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단,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1.5m 미만의 구역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교행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
- 보행공간은 보행자, 자동차의 교통량(보행량)과 기존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보행공간에서는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보행해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법적기준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유효높이는 보행안전구역 뿐만이 아닌 시설물 설치구역까지 적용
- 보행공간은 단차가 없이 평면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단차가 발생 시: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 공간 마련
 -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단차 발생시: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에서 경사를 보완
- 보행공간과 맞닿아 있는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보행안전구역과 연속되게 조성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보행공간에서의 가로시설물 지주는 통합하여 설치한다.
- [광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은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버스 승강장 등) 지역, 광장, 공원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 어려운 경우:** 보행공간에서 횡단보도 진입부는 부분 턱낮춤을 권장한다.
 - 보행로 폭이 6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를 1/17 ~ 1/18로 유지



- 보행로 폭이 6m 이하: 경사로를 제외한 보행유효공간을 최소 1m 유지하고 경사로의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시공



- 보행유효공간을 1.5m이상 권장(최소 1m 유지)
- 턱낮춤은 차도와 같은 높이로 수평하게 시공
- **교차로와 맞닿은 보행공간(가로변 보행로)에는 교차 횡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조경 (Landscape)

- 보행공간에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배치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
 - 녹지분리대 및 띠녹지 설치를 권장



- 보행로의 가로수는 2열 터널식을 권장
-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과 맞닿은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 ※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구역의 휴게시설(그늘 식재, 그늘막, 벤치, 정보매체 등) 설치 권장



시설물 (Facility)

- 보행공간에서는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는 가로수나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폭 2m 이하 보행공간: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배치(성인 2명의 교행이 가능하기 위한 목적)
 - 폭 2m 이상 보행공간: 시설물을 보도녹지대, 자투리 공간 등에 설치
- 보행공간에 필요한 시설물은 인접한 공공건축물, 공개공지, 완충녹지, 옹벽 등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보행공간에 설치되는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들은 **지주를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 보행안전구역 내 맨홀 및 배수구의 설치**는 지양한다.
 - 설치 시: 맨홀 및 수구 덮개는 보행공간의 포장 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 ※ 덮개 설치할 경우 격자 구멍이나 틈새는 1cm 이하 및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
- 보행공간의 시설물은 다양한 색채 대신에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적용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바닥 패턴의 경우 한 구간에 여러 색채 및 패턴의 무분별한 혼용을 지양한다.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채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가진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
 - 야간보행 시의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색상, 재질 등을 선택

UD 가이드라인

- [광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고원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보행공간은 어린이,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보행공간에서는 장시간 보행이 힘든 고령자 등을 위하여 보행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보행공간은 **단차나 횡단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 보행공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구간은 재질, 색상 등의 차이로 점자블록을 대체
 - ※ 저시력자의 시·지각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복잡한 패턴 등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지양
 - **표준형 점자블록 필수설치 지역: 횡단로, 교통시설(기차역, 버스 승강장 등)**
 - ※ 편의증진법
 - 표준형 점자블록 크기: 가로0.3mX세로0.3m,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 점자블록을 설치: 보행안전구역 대지 내 공지 쪽 기준선에서 0.6m 이격시켜 설치
 -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지장물 등으로 인한 점자블록의 우회설치는 지양
- 보행공간에서 **교차보행구역과 일반진행구역의 바닥 패턴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행의 안전을 확보한다.



- 보행공간에서 연석과 경계석은 모두 미끄럼 저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설치한다.
- 보행공간의 **바닥 마감재료**는 빗물을 흡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투수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 ※ 기후 변화(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권장 사항
- 보행공간에서 포장 재료간의 표면휘도는 LRV(Light Reflectance Value) 최소 30 이상을 권장한다.
 - ※ 저시력자의 시·지각적 인지 배려사항

CPTED 가이드라인

- 모든 보행공간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전방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
- 보행공간과 기타공간(차도, 시설물 설치구역 등)을 구분하는 **경계는 분리선(경계석 등)을 명확히 설치**한다.



- 보행공간에서는 야간보행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보행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조절하여 계획하고 조성한다.
- 보행공간에서 통행이 적거나 막다른 도로 등 사각지대는 조명시설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 보행안전 시설: 보안등, 가로등, CCTV, 비상벨
- 보행공간은 깨끗하게 정비하여 사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관리를 지속한다.

3. 공공건축물

3.1 개요

정의

제천시 공공건축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 특정 계층이 아닌 제천시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 ② **목적**: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공건축
- ③ **기능**: 행정 업무 및 문화, 예술, 교육, 위생 서비스를 제공
- ④ **구분**: 소규모 공공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동·노동관련시설)

분류

제천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분류는 1,000㎡(300평)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의미한다.

분류	세부항목
소규모 공공건축물(4종) (1,000㎡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전료·치료시설과 공공업무수행·주민공동이용시설), 아동·노인 관련시설

[표]공공건축물 분류 항목

기본방향



[그림] 공공건축물 기본방향

공통사항

공공건축물 기본코드

- 건축물의 경계는 개방적으로 조성
- 높은 담장이나 울타리와 같이 시각적, 물리적으로 차폐하는 것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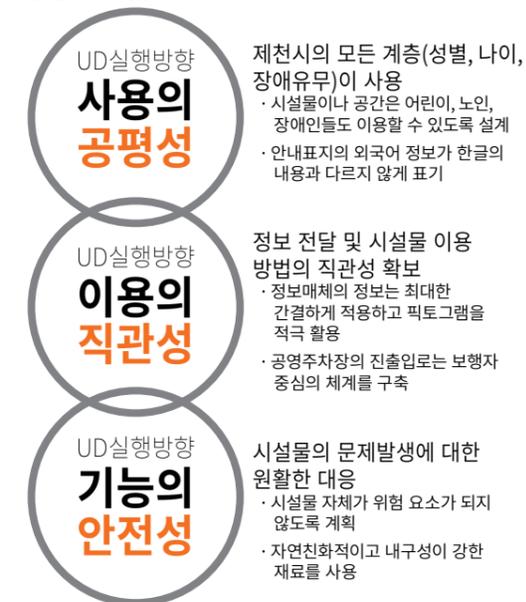
- ▶ 낮은담장과 조경시설로 정비
- 옥상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입체녹화 적용
 - 시민 또는 근무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
- 건축물에서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를 확보
 - 출입구(현관, 화장실, 계단) 등의 통행로의 조도는 더 밝게 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계획은 자연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
- 다양한 이동 수단에 의해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 이동수단: 차량, 자전거, 보행
- 내·외부에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휴게공간과 휴게시설을 설치
 - 화장실 등의 공공 편의시설은 개방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고채도 색상의 도장을 지양
 - 건축물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슈퍼그래픽을 적용할 경우 면적의 20% 이내



UD / CPTED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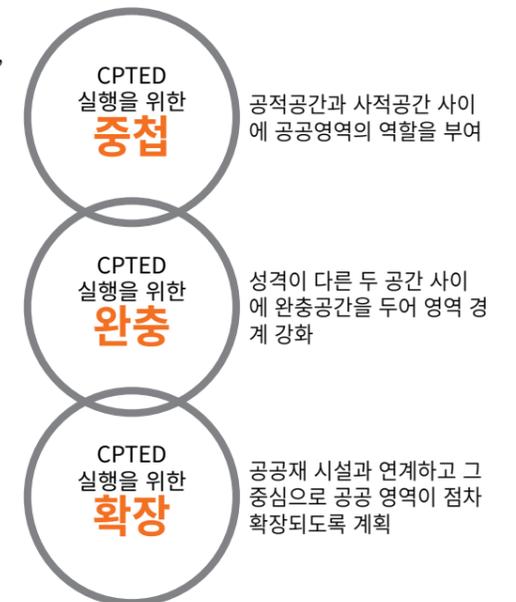
제천시 UD(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천시 UD(Universal Design) 7대 원칙 중에서 '사용의 공정성, 이용의 직관성, 기능의 안전성'을 중점으로 적용



제천시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제천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6대 원칙을 공간의 역할에 단계적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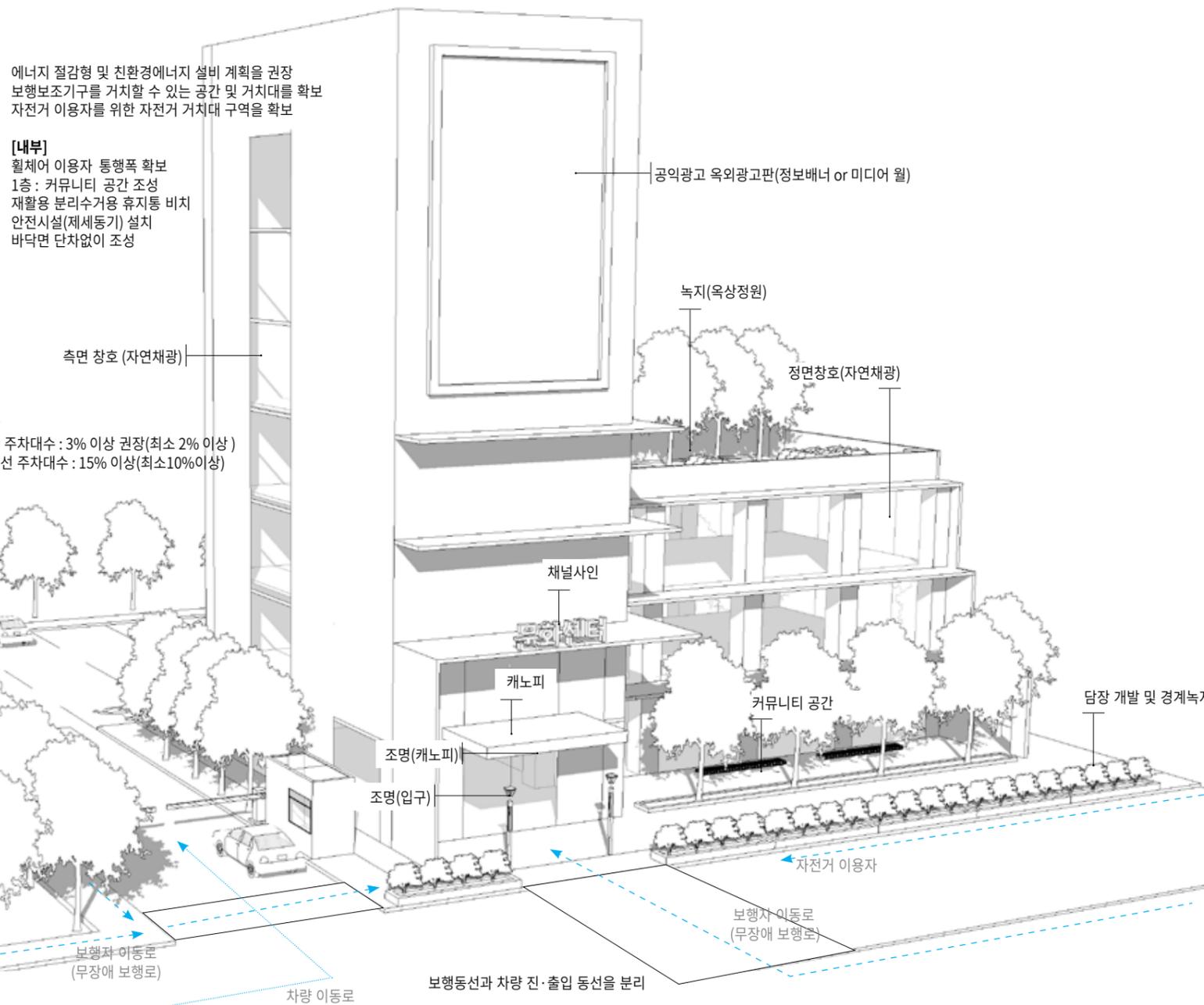
3.2 소규모 공공건축물

제천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분류는 1,000㎡ (300평)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동·노동관련시설 4종으로 구분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정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중의 문화활동, 정보이용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건축물로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설립한 건축시설을 말하며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다양한 교통수단(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보행동선과 차량 진입·출입 동선을 분리
- 실외공간은 주말, 공휴일에도 개방
- 에너지 절감형 및 친환경에너지 설비 계획을 권장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
- 장애인(휠체어 이용자)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폭을 확보
- 내부 공간은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도록 설계
- 1층은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조성
- 전면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
 - ➔ 펜스 및 담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및 키가 낮은 관목으로 조성
- 경계부에는 개방적인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보행보조기구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거치대를 확보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확보
- 재활용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반드시 비치
-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
 - ➔ 단, 공익목적의 문화행사 관련 정보배너는 가능
 - ➔ 정보배너 설치 : 지정된 장소와 정돈된 이미지로 설치

UD 가이드라인

- 출입구 상부에는 어닝 또는 캐노피를 설치
- 바닥면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성
-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
 - ➔ 장애인 주차대수 : 3% 이상 권장(최소 2% 이상)
 - ➔ 여성우선 주차대수 : 15% 이상(최소10%이상)
- 자연채광을 높이는 설계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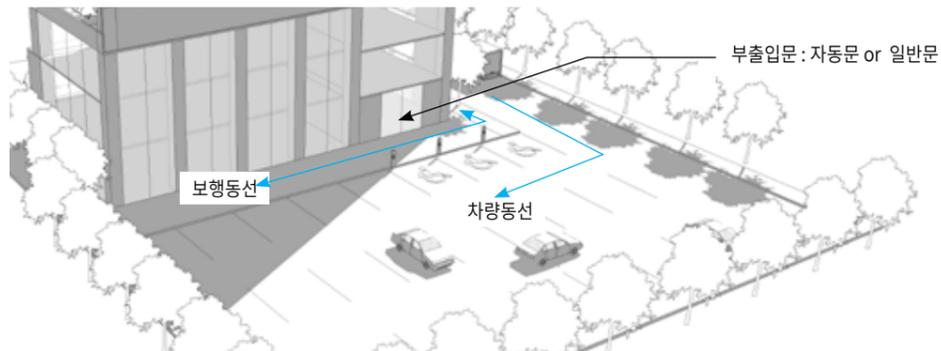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경계부는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
- 실외공간은 야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
- 편의시설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
 - ➔ 조명기구 : 지주형 보안등 or 편의시설에 부착하는 보안등
-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방적 구조로 조성
 - ➔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 CCTV 설치 및 공간을 밝게 조성

PUBLIC 가이드라인

건축 & 실외공간 (Architectural & Outdoor Space)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다양한 교통수단(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보행동선과 차량 진입·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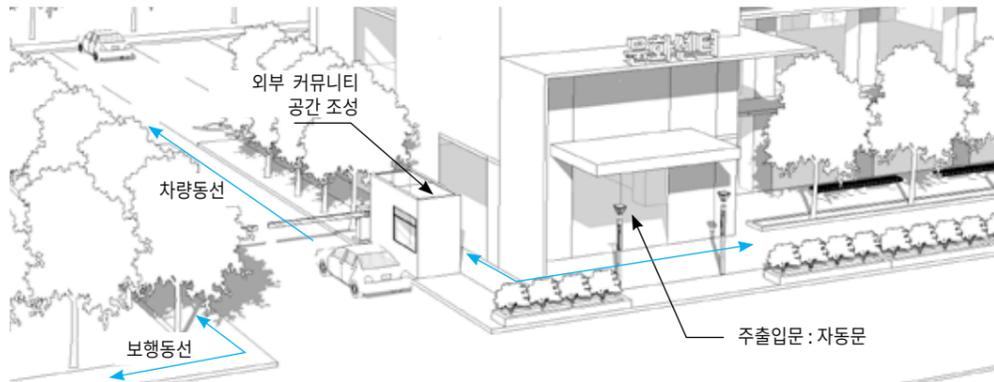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차장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이용시간 외 주말, 공휴일 등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중의 정보이용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을 알리는 명칭을 사면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상층부에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건축 설계를 권장하며 시설의 성격이 나타날 있도록 디자인의 공통점을 부여하여 계획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은 권위적이고 단절적인 단지형 배치를 금지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형 및 친환경에너지 설비 계획을 권장한다.
 -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



실내공간 (Indoor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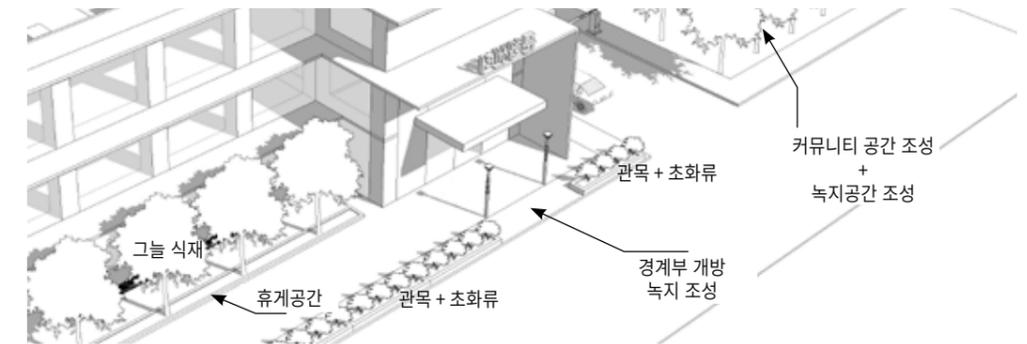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장애인(휠체어 이용자)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폭을 확보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한다.
 -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 부출입문: 자동문 설치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의 1층은 안내(정보), 휴게와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조성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내부 공간은 자연채광 유입이 풍부하도록 설계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실내 공간은 획일적인 배치로 발생하는 일률적 외관 및 창호 계획은 지양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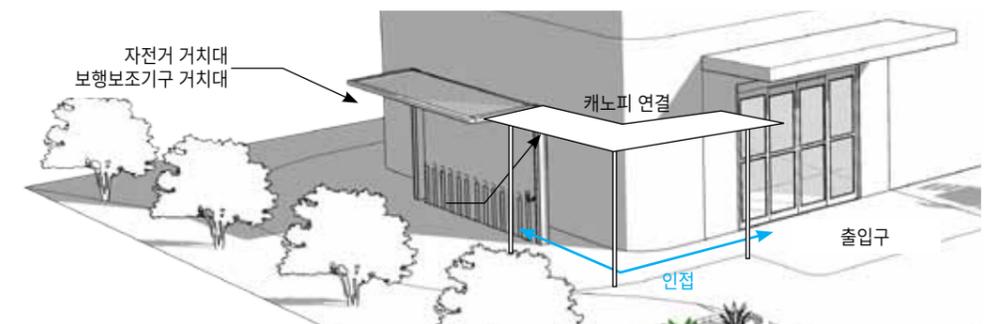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계부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면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로와 접한 경계부에는 펜스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 신설: 개방된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 기존: 담장 허물기 →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정비
 - 펜스 및 담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및 키가 낮은 관목으로 조성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옥상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입체녹화(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권장한다.
 - ※ 시민들을 위한 편의 및 휴식공간의 확충 차원

시설물 (Facility)

-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고령자를 위한 보행보조기구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거치대를 확보한다.
 - ※ 제천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의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확보한다.
 - 자동차 주차장보다 동선을 우선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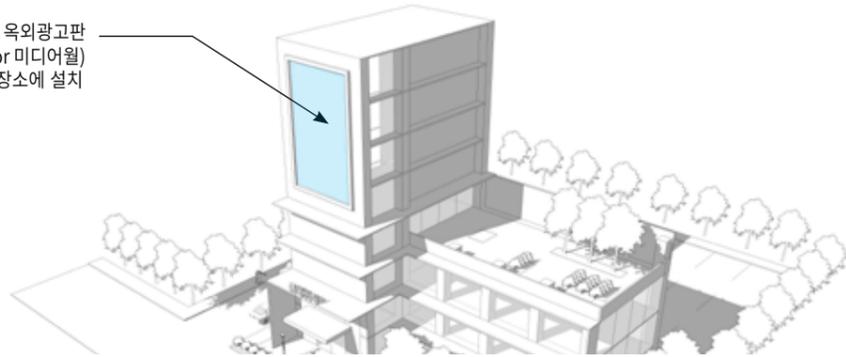
-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일부분)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재활용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반드시 비치한다.
 - 배치: 출입구 측면, 계단과 복도의 갈림길 주변
-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편의시설: PC, 프린터기,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장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내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미술품: 지역작가, 지역주민, 학생들의 작품 설치를 권장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문화 및 집회시설 외벽에 고채도 색채의 도료를 이용한 도색이나 슈퍼그래픽의 적용을 지양한다.
→ 필요시: 일부분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며 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 외부의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를 부착을 금지한다.**
→ 단, 공익목적의 문화행사 관련 옥외광고(정보배너 or 미디어월)는 가능
→ 옥외광고(정보배너 or 미디어월) 설치: 지정된 장소와 정돈된 이미지로 설치

공익목적의 옥외광고판
(정보배너 or 미디어월)
→ 지정된 장소에 설치



UD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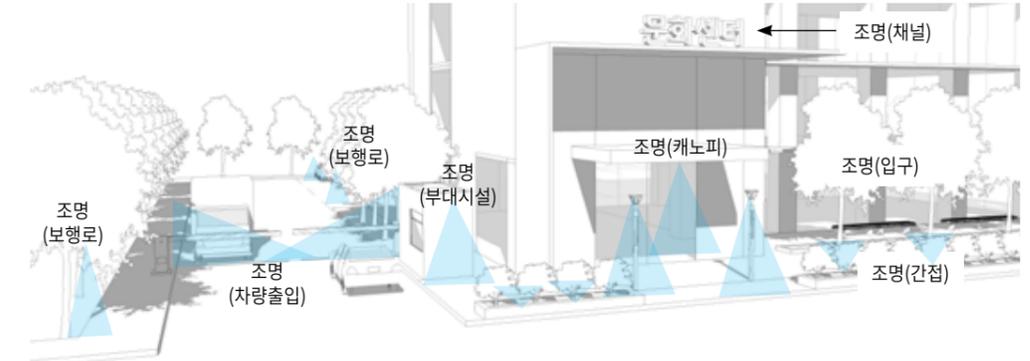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 시 편의를 고려하여 **어닝 또는 캐노피**를 설치한다.
→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계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출입구 및 보행공간은 **바닥면의 단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성한다.
※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경사면과 핸드레일을 설치하며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요 정보매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를 적용한다.
→ 주출입구와 로비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촉지도를 함께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한다.
→ 장애인 주차대수: 3% 이상 권장(최소 2% 이상)
→ 여성우선 주차대수: 15% 이상(최소 1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출입구 및 로비 공간은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자연채광을 높이는 설계**를 권장한다.



자연채광을 높이는 건축설계

CPTED 가이드라인

-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계부는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한다.
→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조성
※ 경계부는 개방성을 강조하되 경계구분은 명확히 설정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실외공간은 야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한다.
→ 조명기구: 지주형 보안등 or 편의시설에 부착하는 보안등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방적인 구조로 계획**한다.
→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CCTV 설치 및 공간을 밝게 조성

노유자시설

정의

노유자시설은 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노인·아동·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적용하는 시설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수용·기타의 방법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건축물이다.

분류

아동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유치원·유아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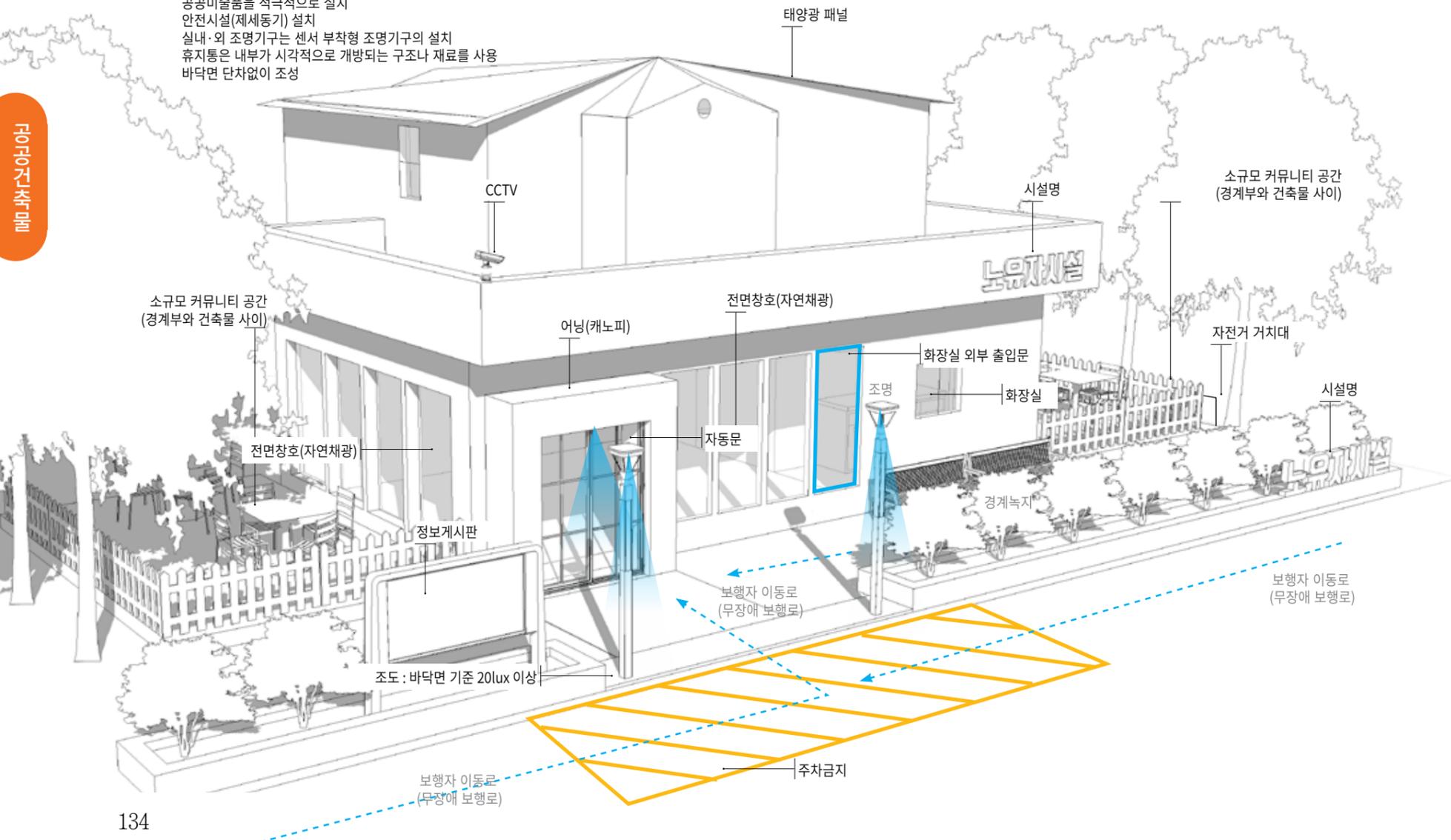
노인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시설: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

[내부]

1층: 휴게와 상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배치, 충분한 휴게공간 마련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
실내·외 조명기구는 센서 부착형 조명기구의 설치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
바닥면 단차없이 조성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
-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통행폭을 확보
- 1층에는 휴게와 상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배치
- 경계부는 조정공간으로 조성
- 경계부와 건축물 사이에는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다수 설치
-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
-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
 - ➔ 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마련
- 자전거 거치대 구역 마련
-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
- 실내·외 조명기구는 센서 부착형 조명기구를 설치
- 공공시설물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
- 조명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UD 가이드라인

- 바닥면의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
- 출입구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 처리
- 1층에는 충분한 휴게공간 마련
- 출입구 상부에는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
- 1층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내·외부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
-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

CPTED 가이드라인

- 야간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

PUBLIC 가이드라인

건축 & 실외공간 (Architectural & Outdoor Space)

- 노유자시설은 정문을 통한 차량 진입·출입은 금지한다.
 - 단, 비상차량은 예외



- 노유자시설의 전면 공간은 개방되게 조성하거나 녹지화할 것을 권장한다.
 -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에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
 - 입체 녹화를 권장: 자투리 공간 녹지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 ※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
 - 경계부에는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나 키가 낮은 관목을 조성
- 노유자시설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 노유자시설의 외벽의 일부 구간은 벽면녹화 및 입면녹화를 권장한다.
 -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
 - 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 입면녹화 조성 → 제천의 독특한 자연 경관 형성
- 노유자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한다.
 - 옥상정원 조성 시 고정판 슬라브 설계

실내공간 (Indoor Space)

- 노유자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한다.
 -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 부출입문: 자동문 설치 권장
- 노유자시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통행폭을 확보한다.
 - 내부(복도 및 계단): 2.5m 이상
 - 외부(통행로): 3m 이상
- 노유자시설의 1층에는 휴게와 상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배치한다.
 - 배치시설: 시민편의시설(상담실, 보건실, 휴게공간, 화장실 등)
- 노유자시설의 내부는 쉽게 인지되는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 공간 구조의 개방성 확보 및 재료를 통한 개방성을 강조하는 계획
- 노유자시설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설비 관련 시설은 지하, 옥상, 외부 독립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 노유자시설에는 획일적인 실내 공간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률적 외관 및 창호 계획은 지양한다.

조경 (Landscape)

- 노유자시설의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건축물로서의 시각적 개방감이 있는 조경공간으로 조성한다.

- 단, 경계부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방성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관목+화초류 or 앞음벽 조성
- 신설: 개방된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 기존: 담장 허물기 →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정비
- 노유자시설은 외부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녹지공간: 경계부 녹화, 옥상 정원, 벽면 녹화 적용
- 노유자시설의 경계부와 건축물 사이에는 이용자를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다수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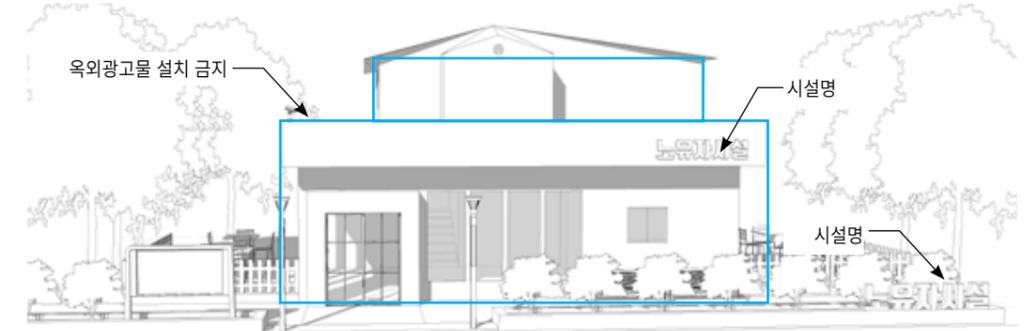


시설물 (Facility)

- 노유자시설의 내·외부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미술품은 지역작가, 지역주민, 학생들의 작품 설치를 권장
 - 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마련
- 노유자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 노유자시설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 자전거 이용동선은 차량동선보다 우선으로 계획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 ※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하는 장소임을 고려한 조치 사항
- 노유자시설에 배치하는 휴지통은 재활용 분리수거용을 비치하며 사인은 크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에는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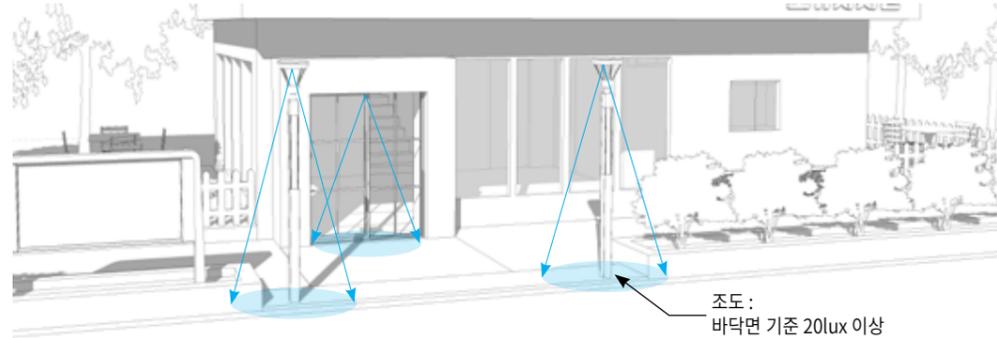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노유자시설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색채 및 마감재로는 어둡고 탁한 색채와 재료 사용은 지양한다.
 - 건축물 주조색: 심리적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차분한 저채도의 색채와 재질 적용
 - 건축물 강조색: 따뜻함을 표현할 밝은 색채 적용
- 노유자시설의 건축물에는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노유자시설의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 단,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규격화시켜 설치



조명 (L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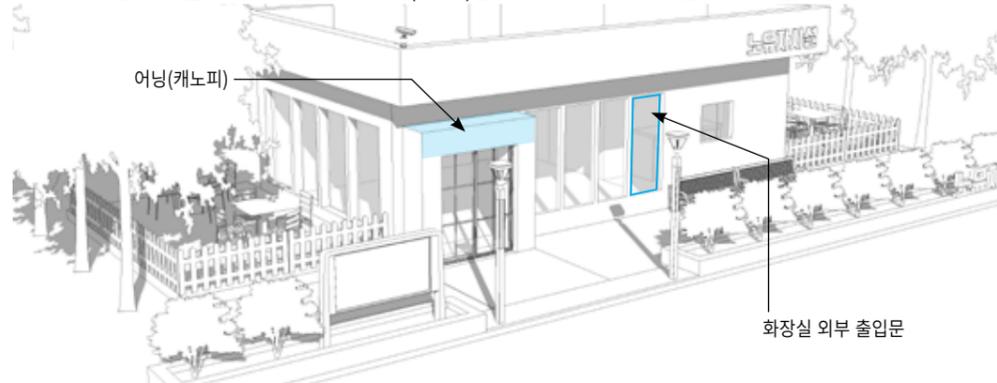
- 노유자시설의 실내·외 조명기구는 **센서 부착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행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 ※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병행 추진
 - ➔ 보안, 시설관리 공간 : 센서형 조명 설치는 지양
- 노유자시설은 야간에 범죄 예방을 위해 부지 내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 노유자시설의 내부는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하여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한다.
- 노유자시설의 조명은 기본적으로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한다.

UD 가이드라인

- 노유자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약자(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면의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한다.
 - ➔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슬로프 또는 계단을 설치
 -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치 기준에 맞춤
 - ➔ 계단과 슬로프에는 반드시 핸드레일 설치
- 노유자시설의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한다.
- 노유자시설의 출입구 주변 **1층에는**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휴게공간**과 시설물을 마련한다.
- 노유자시설의 실내에 설치하는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게시판, 디지털정보기기 등)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시각 정보매체에는 시인성(일반 사인물 보다 크게)과 인지성(간결한 내용, 픽토그램 활용)이 높게 디자인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를 적용한다.
 - ➔ 출입구(주출입구 및 부 출입구) 및 로비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촉지도를 병행 설치
- 노유자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를 고려하여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한다.



- 노유자시설 **1층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내·외부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노유자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 장애인 주차대수 : 최소 2% 이상, 3% 이상 권장
 - ➔ 여성우선 주차대수 : 10% 이상
 - ※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 노유자시설의 옥외 주차장은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한다.
 - ➔ 바닥사인 표시 : 차선 내 표시 + 주차선 앞라인 위에 걸쳐서 표기
- 노유자시설의 내·외부 정보매체에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픽토그램 사용을 확대 적용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노유자시설은 내·외부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 CCTV를 설치하거나 공간을 밝게 조성
- 노유자시설은 야간에도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한다.
 - ➔ 진입로, 출입구 조명을 주변의 조도보다 밝게 조성
- 노유자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한다.
 - ➔ 주변에 조명기구가 없는 경우 편의시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 설치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치료시설,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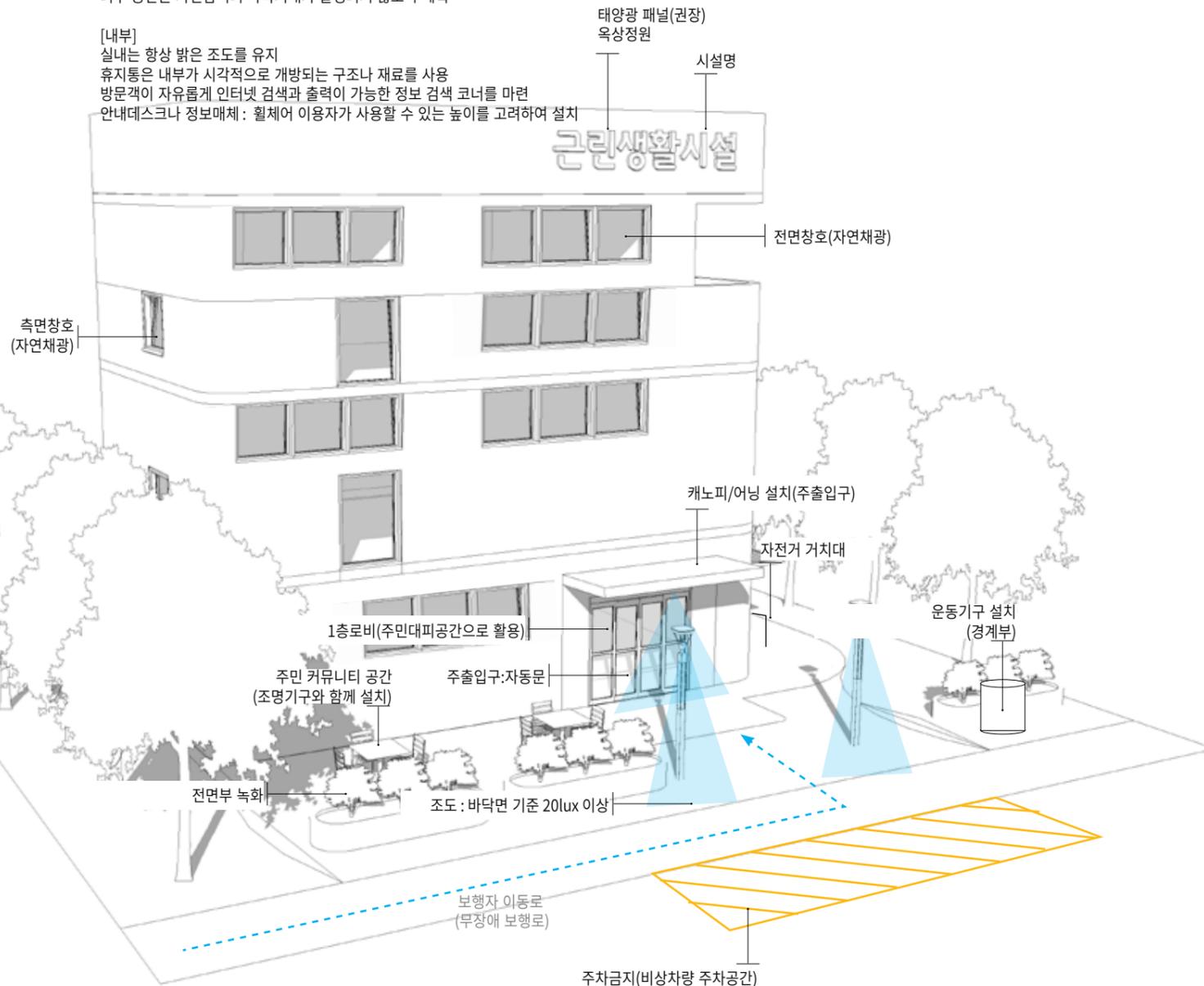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소규모 구역(마을)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건축물이다.

목적: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생활 편의 및 증진을 목적

분류: 주민치료시설,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등)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건축물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
외부 공간은 자연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내부]
실내는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주말, 공휴일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
-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
-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 건축물 상호 면적 : 건축입면의 30% 이상 권장
- 주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 경계부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경계부를 활용해 운동기구 설치를 권장
-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
-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 흡서기, 흡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인근 주민들의 대피 공간 마련
 - ➔ 대피 공간 설치 장비: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
-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설치
- 자전거 거치대 구역 마련
-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
- 실내는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
-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

UD 가이드라인

-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 1층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내·외부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
- 충분한 휴게시설(벤치 및 소파) 마련
- 출입구는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
- 바닥면의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
- 출입구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 처리
-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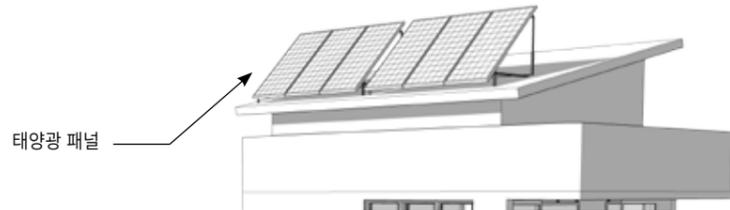
CPTED 가이드라인

- 주민에게 개방된 외부 공간은 자연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주민 편의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

PUBLIC 가이드라인

건축 & 실외공간 (Architectural & Outdoor Space)

- 1종 근린생활시설은 보안이 필요한 공간이외에는 이용시간 외 **주말, 공휴일** 등에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한다.
 - 단, 비상차량은 예외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 보행 등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밀접한 이용시설로 멀리서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위치에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건축의 외관 및 사인은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며, 시설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소음방지 시설: 경계녹지, 방음벽(개방감과 투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치)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전면 공간은 개방되게 조성하거나 녹지화할 것을 권장한다.
 -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에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
 - 입체 녹화를 권장: 자투리 공간 녹지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 ※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
 - 경계부에는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나 키가 낮은 관목을 조성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벽의 일부 구간에는 벽면녹화 및 입면녹화를 권장한다.
 -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
 - 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 입면녹화 조성 → 제천의 독특한 건축 경관 형성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한다.
 - 옥상정원 조성 시 고정판 슬라브 설계



실내공간 (Indoor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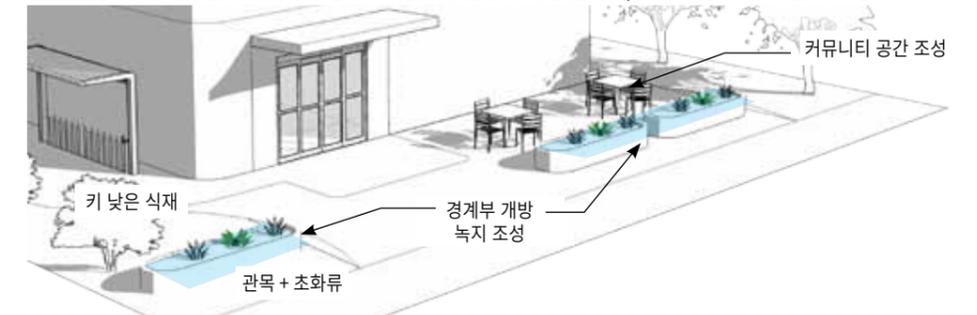
- 1종 근린생활시설의 내부 공간은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한다.
 -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 부출입문: 자동문 설치 권장



-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통행폭 확보를 권장한다.
 - 내부(복도 및 계단): 2.5m 이상
 - 외부(통행로): 3m 이상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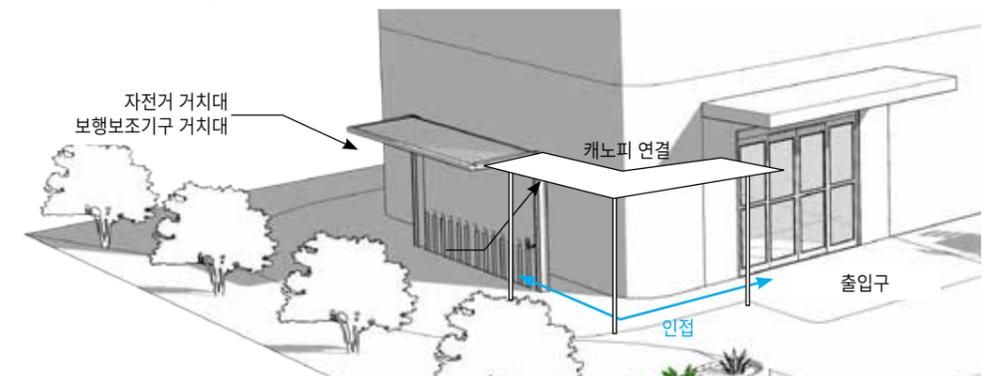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계부**는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의 지양하고 녹지와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신설: 개방된 녹지 및 앉음벽(휴게공간)으로 조성
 - 기존: 담장 허물기 → 녹지 + 앉음벽(휴게공간)으로 정비
 - 담장 및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방성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관목+화초류 or 앉음벽 조성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계부를 활용**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를 권장한다.
 - 운동기구: 맨손운동을 보조해주는 기구 설치 권장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공간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차양막 시설(식재 그늘, 그늘막, 퍼걸러(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혹서기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설물 (Facility)

-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에는 반드시 **혹서기, 혹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인근 주민들의 대피 공간**을 반드시 마련한다.
 - 대피 공간 설치 장비: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한 국제겸용 전화기 설치를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 자전거 이용동선은 차량동선보다 우선으로 계획



-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시정 정책, 대민 지원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 게시판 : 배너형 게시판은 필수설치, 디지털정보 게시판 설치는 권장
- 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 ※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임을 고려한 조치 사항
 - 휴지통 : 재활용 분리수거용 설치
- 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친환경인 소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가급적 차분한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외벽의 일부에는 시설의 성격을 보여주는 특화된 디자인 부여를 권장한다.
 - 특화 디자인 적용 면적 : 외벽 면적의 30% 이내
 - 특화 디자인 적용 방법 : 슈퍼그래픽, 마감재료를 이용한 패턴, 벽화 등
 - ※ 특화 디자인을 적용의 지양 사항 :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미지, 특정 상표·단체·브랜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미지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색채와 마감재료는 어둡고 탁한 색채 및 재료 사용은 지양한다.
 - 건축물 주조색 :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차분한 저채도의 색채와 재질 적용
 - 건축물 강조색 : 화사함과 생동감을 표현할 밝은 색채 적용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 단,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설치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규격화시켜 설치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는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조명 (Lighting)

- 1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인 조명계획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한다.
 - 건축물 창호 면적 : 건축입면의 30% 이상 권장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실내에는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에너지 절감형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 출입문, 화장실 : 센서형 조명 설치를 권장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UD 가이드라인

- 1종 근린생활시설 실내에 설치하는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게시판, 디지털정보기기 등)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 1층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내·외부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 주변 1층에는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휴게시설(벤치 및 소파)을 마련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를 고려하여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약자(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면의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한다.
 -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슬로프 또는 계단을 설치
 -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치 기준에 맞춤
 - 계단과 슬로프에는 반드시 핸드레일 설치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외 주차장은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한다.
 - 바닥사인 표시 : 차선 내 표시 + 주차선 앞라인 위에 걸쳐서 표기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외부 정보매체에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픽토그램 사용을 확대 적용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민에게 개방된 외부 공간은 자연감시의 시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자연감시의 시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 CCTV를 설치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주민 편의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한다.
 - 주변에 조명기구가 없는 경우 주민 편의시설에 조명기구 직접 부착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도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한다.
 - 진입로, 출입구 조명을 주변의 조도보다 밝게 조성

아동·노인 관련시설

정의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아동·노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수용·기타의 방법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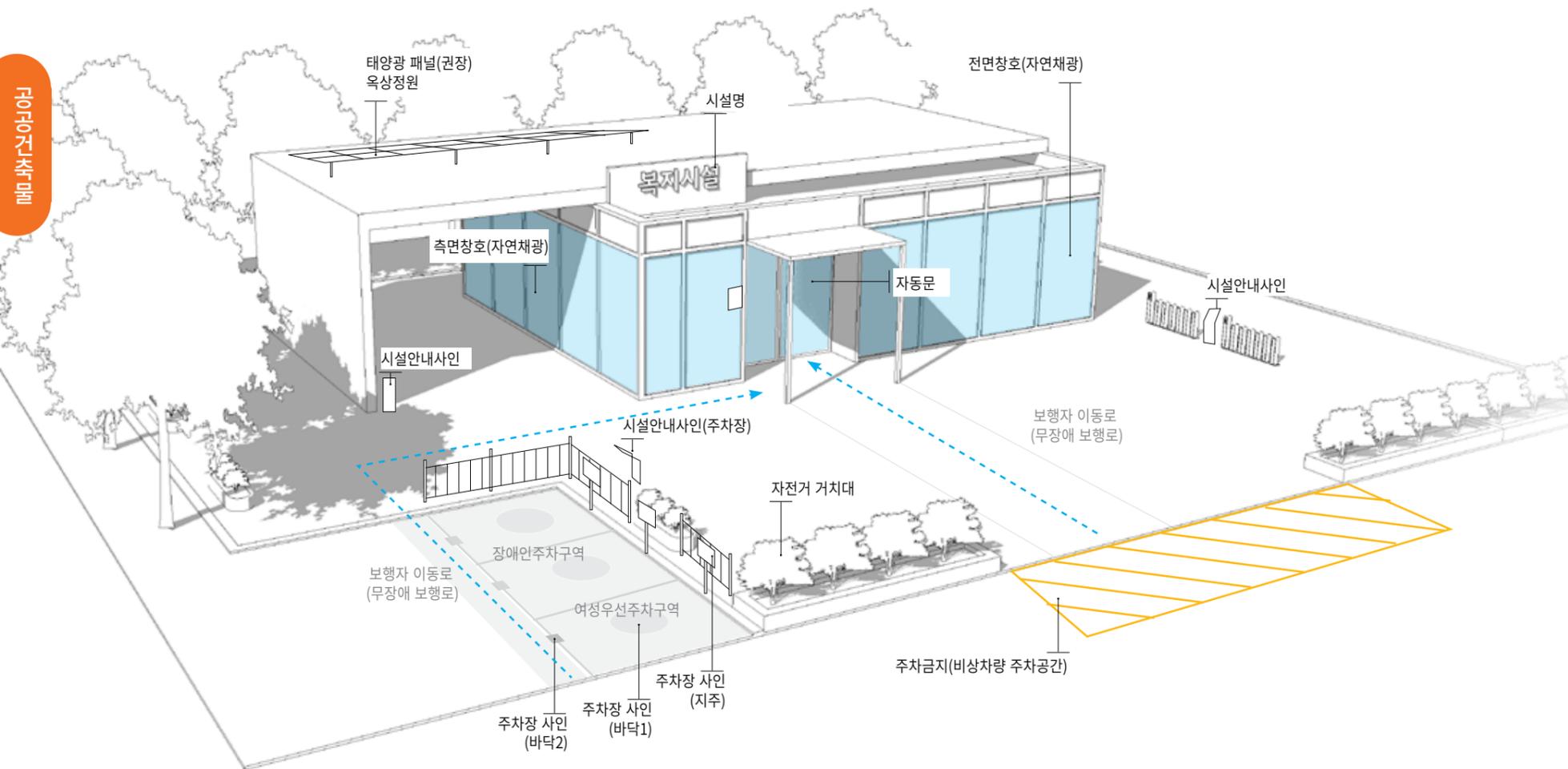
목적 : 사회의 취약 계층인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

분류 : 복지시설

외부 공간은 자연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내부]
 실내에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 :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가이드라인 146



가이드라인 146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 동선 계획
 - ➔ 주출입구 : 응급차량 정차 구획 표시 및 동선 계획
- 다양한 이동 수단(자동차, 자전거, 보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비 계획
-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계획
 - ➔ 건축물 창호 면적 : 건축입면의 30% 이상 권장
- 복도에는 가급적 핸드레일을 설치
- 주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전면 공간은 녹지화할 것을 권장
- 경계부에도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조경공간으로 계획
- 자투리 공간은 입체녹화(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용
 - ➔ 녹화공간은 휴게시설을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
-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
 - ➔ 공공미술품 상시 전시 공간 마련
- 흡서기, 흡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의 대피 공간 마련
 - ➔ 대피 공간 설치 장비 :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 내·외부에는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을 반드시 설치
 - ➔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은 조명시설과 병행 설치
-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
-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

UD 가이드라인

- 출입구의 바닥면은 단차(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 단차(경사)가 발생하는 경우 : 슬로프(경사면)·핸드레일을 설치
- 출입구 상부에는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
-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게시판, 디지털정보기기 등)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 1층에는 충분한 휴게시설(쇼파 등) 마련
- 출입구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처리
-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인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

CPTED 가이드라인

- 야간에 외부공간은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
 - ➔ 진입로, 출입구 조명을 주변의 조도보다 밝게 조성
-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
 - ➔ 조명기구 설치 : 경계부 밖에서도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얼굴 인식이 가능한 밝기로 설치
- 개방적이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 ➔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 CCTV를 설치 or 공간을 밝게 조성

PUBLIC 가이드라인

건축 & 실외공간 (Architectural & Outdoor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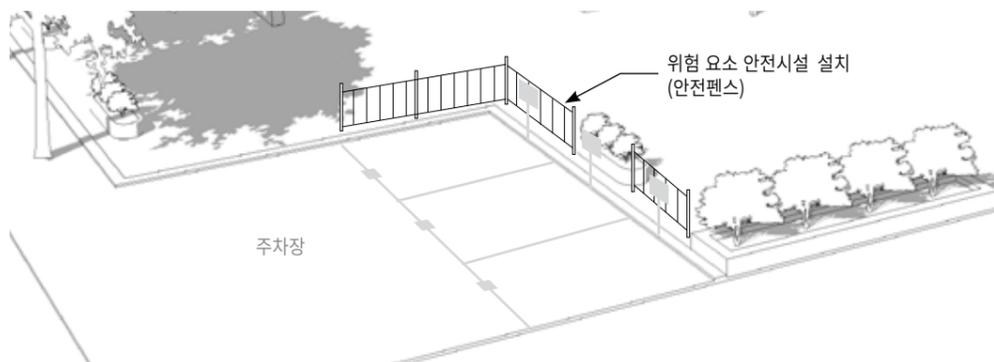
-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공간 구역은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 **주출입구: 응급차량 정차 구획 표시 및 동선 계획**



-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다양한 이동 수단(자동차, 자전거, 보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건축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소음방지 시설: 경계녹지, 차폐녹지 조성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비 계획**을 권장한다.
- 1층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비 계획**을 권장한다.
→ 옥상정원 조성 시 고정판 슬라브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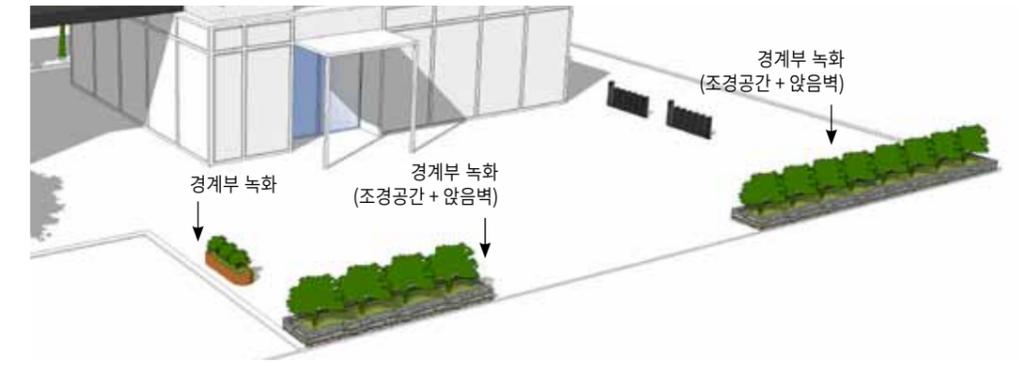
실내공간 (Indoor Space)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실내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계획**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실내의 복도에는 **가급적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핸드레일 재료: 손이 닿는 면은 목재 (촉감이 따뜻한 재료를 사용)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한다.
→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 부출입문: 자동문 설치 권장
-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낙상 및 충돌의 위험 요소를 계획단계부터 제거해야 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낙상 위험 요소의 안전 장치: 안전펜스, 시건장치(옥상 등)



조경 (Landscape)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전면 공간은 녹지화할 것을 권장**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전면부 이외의 **경계부에도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조경공간으로 계획**한다.
→ **경계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시각적 개방성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설치, 키낮은 관목 설치, 앞음벽 설치**



- ※ 공공건축물로서의 시각적 개방감 강조 → 심리적 안정감 확보 차원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자투리 공간(옥상, 벽면, 경계부 등)을 활용한 입체녹화(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녹화공간은 휴게시설을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
※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

시설물 (Facility)

-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내·외부 공간에는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미술품: 시설 이용자, 지역작가, 지역주민의 작품을 권장
→ 공공미술품: **상시 전시 공간 마련**
-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에 충분한 휴게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실내 휴게공간: 소파 및 다양한 의자 비치
→ 실외 휴게공간: 천장이 있는 휴게시설 배치(피컬러 등)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혹서기, 혹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의 대피 공간**을 반드시 **마련**한다.
→ **대피 공간 설치 장비: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한 국제겸용 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 **내·외부에는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을 반드시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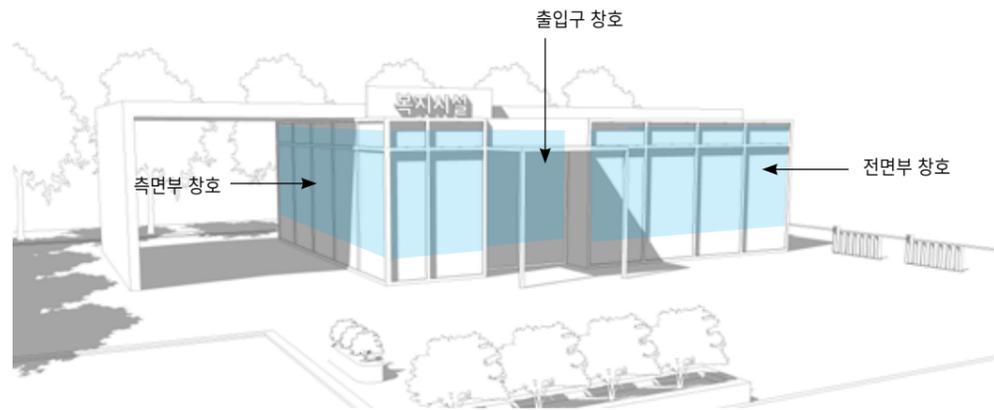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 ➔ 단,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대를 별도로 마련 및 규격화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색채 및 마감재료는 밝고 화사함이 드러나는 색채 및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 건물 주조색: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밝은 저채도의 색채
 - ➔ 건물 강조색: 화사함과 생동감을 표현할 밝은 색채 적용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에는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조명 (Lighting)

- 1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본적인 조명 계획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한다.
 - ➔ 건축물 창호 면적 : 건축입면의 30% 이상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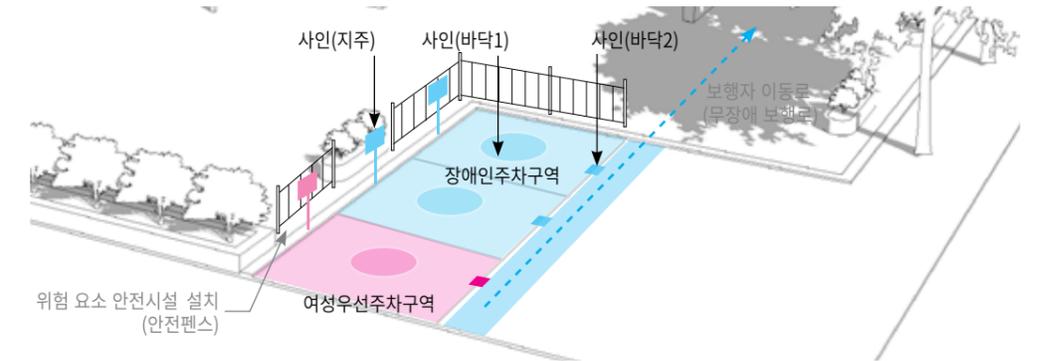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전면부, 경계부에는 야간에도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 외부에 설치하는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은 조명시설과 병행 설치한다.
- 아동·노인 관련은 야간에 범죄 예방을 위해 부지 내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UD 가이드라인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출입구의 바닥면은 단차(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단차(경사)가 발생하는 경우: 슬로프(경사면)·핸드레일을 설치
 -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를 고려하여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실내에 설치하는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게시판, 디지털정보기기 등)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시각 정보 매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를 적용하며, 주출입구 및 로비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촉지도를 설치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내·외부에 설치되는 정보매체는 다국어(영어)를 병기하고 픽토그램의 확대 사용을 권장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출입구 주변 1층에는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휴게시설(소파 등)을 마련한다.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외 주차장은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한다.
 - ➔ 바닥사인 표시: 차선 내 표시 + 주차선 앞라인 위에 걸쳐서 표기



CPTED 가이드라인

-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야간에도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은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한다.
 - ➔ 진입로, 출입구 조명을 주변의 조도보다 밝게 조성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한다.
 - ➔ 조명기구 설치: 경계부 밖에서도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얼굴 인식이 가능한 밝기로 설치
-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 공간은 개방적이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CCTV를 설치 or 공간을 밝게 조성

4. 공공매체

4.1 개요

정의

제천시 공공매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 : 제천시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
- ② **목적** : 이용자들에게 공공정보를 알리는 목적
- ③ **기능** : 시각 표지물 등 기능의 매체 시설
- ④ **구분** : 정보매체, 시각이미지, 공공미술

분류

제천시 공공매체 가이드라인 분류는 정보매체, 시각이미지, 공공미술을 의미한다.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3종)	간판(가로형, 지주형, 돌출형 등), 디지털영상매체, 안내판(종합안내, 방향안내, 위치안내, 시설안내 등)
시각이미지(3종)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그림문자·서체·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공공미술(2종)	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

[표]공공매체 분류 항목

기본방향



[그림] 공공매체 기본방향

공통사항

공공매체 기본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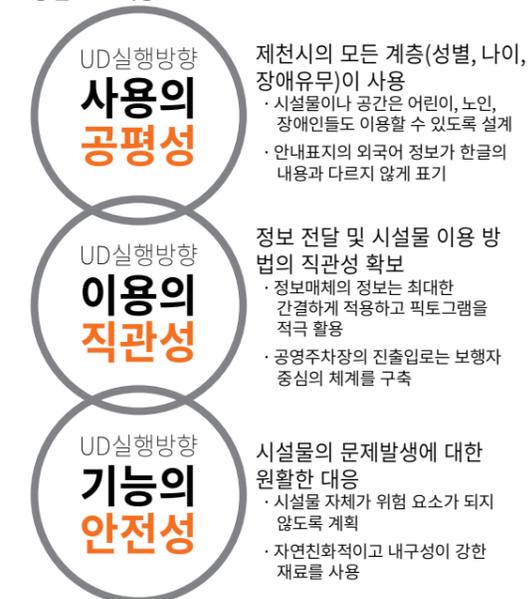
-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간단하고 단순한 디자인
- 픽토그램은 표준규격 1을 사용
 - 픽토그램 등의 그림문자를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인지성 확보
-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
 - 이용자의 정보 인지성 향상 및 시각적 거부감 최소화
- 야간에도 정보인지와 식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연계
- 가로공간에서 지주시설물은 통합
 - 우선 설치된 시설물의 지주를 공유
- 기초 구조는 매립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가로 경관 미관성 확보
- 보행로와 접하는 지주의 바닥면은 보행로와 동일하게 마감
- 주조색은 중·저채도의 색상을 적용하여 서체 등 정보의 가독성 확보



UD / CPTED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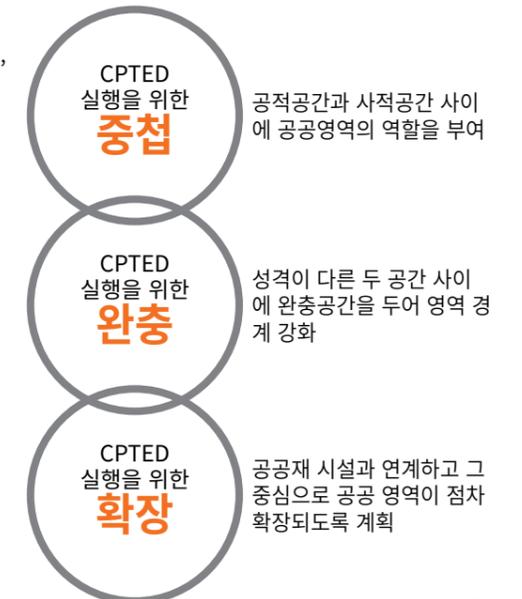
제천시 UD(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천시 UD(Universal Design) 7대 원칙 중에서 '사용의 공정성, 이용의 직관성, 기능의 안전성'을 중점으로 적용



제천시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제천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6대 원칙을 공간의 역할에 단계적으로 적용



4.2 정보매체

간판

정의

간판은 민간영역에서 사용되는 옥외광고물로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가로형, 돌출형으로 구분되는 정보매체이다.

목적: 지속적인 정보를 노출하여 공중에 시설을 알리는 기능이 목적

분류: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지주형 간판

업소의 특징에 따른 개성적 색채 사용을 권장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인 적용
고광택의 금속소재의 노출을 최소화
[돌출형 광고]
2층이상, 5층이내에만 설치

돌출형 광고

주요 표기 :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보조 표기 : 면적의 6분의 1 이내로 제한

두께 : 30cm 이상

3m 이상

간결 형태
(다양성 지향)

주요 표기 :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 표기

보조 표기 : 지점명, 전화번호, 도메인, 영업내용 등으로 제한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간결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향

- 1업소 1개(가로형간판 1개, 돌출형 간판 1개)로 제한
- 업소의 특징에 따른 개성적 색채 사용을 권장
→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인 적용
- 고광택의 금속소재의 노출을 최소화
- 주요 표기 :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 표기
- 보조 표기 : 지점명, 전화번호, 도메인, 영업내용 등으로 제한
- 사진 등의 직접적 이미지 사용을 제한
-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
- 건물과의 거리 30cm이내로 설치
- 두께는 30cm이내로 설치
- 점멸방식 및 광원노출방식은 금지
- 전면 발광은 금지

[가로형 간판]

- 벽면가로의 80% 이내로 하며, 최대 10m 이내
- 판류형 표기 요소 : 총면적의 3분의 1이내 제한

[돌출형 간판]

- 지면과의 거리는 3m이상으로 계획
- 주요 표기 :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 보조 표기 : 면적의 6분의 1 이내로 제한
- 건물외벽에서 1m이내로 돌출
- 2층이상, 5층이내에만 설치

PUBLIC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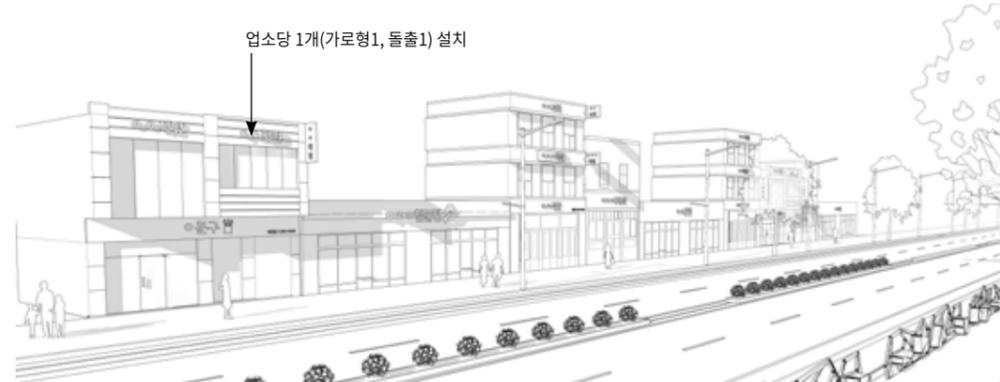
디자인 (Design)

제천시 간판은 획일된 형태의 간판이 연속되는 것을 지양하고 간결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향한다.

단, 건축물과 조화롭게 디자인한다.

※ 전제사항: 옥외광고물 기준 준수

- 간판은 1업소 1개(가로형간판 1개, 돌출형 간판 1개)로 제한하며 업소당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한다.
 - 단,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은 다양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한다.
 - 2층이상 건축물, 신축 건물, 개축 건물에는 입체형을 권장
 - 외부 마감재가 유리로 된 경우 입체형 간판 설치를 권장
- 가로형 간판은 외관 환경 연출 후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부서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다.
 - 정사각형이나 원형, 타원 등 독특한 형태의 간판은 공공디자인 부서의 자문 또는 심의
-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의 외벽 전체를 채우지 않고 상하좌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업소의 벽면가로의 80% 이내로 하며, 최대 10m 이내로 디자인한다.

[돌출형 간판]

- 정사각형이나 원형, 타원 등 독특한 형태의 간판은 심의를 거친다.
- 돌출형 간판의 하단 면과 지면과의 거리는 3m(인도가 없는 경우는 4m)이상으로 계획한다.
 - 단, 1층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은 예외
- 돌출형 간판은 신축 또는 개축 건물일 경우 건축주가 일정한 위치와 크기로 건물폭 10m당 1줄씩 일괄 설치 후 입점 업소에 배정한다.

표기요소 (Mark)

- 간판의 주요 표기 요소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 표기한다.
- 간판의 보조 표기 요소는 지점명, 전화번호, 도메인, 영업내용 등으로 제한한다.
- 간판의 영업 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 취급 품목 1종만 표기하며, 메뉴 및 실물 사진은 표기를 제한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간판은 지역 특성과 건축물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간판은 업소의 특징에 따른 개성적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단,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인 적용을 권장
- 간판은 건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되는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 간판은 기능에 맞도록 천연소재, 금속재, 합성소재 등 다양한 재료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간판은 고광택의 금속소재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그래픽 (Graphic)

- 간판은 광고 사진 등의 직접적 이미지 사용을 제한한다.
- 간판은 문자의 자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인다.
- 간판에 문자 표기 시 상하좌우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 간판은 업종의 성격이나 상호 및 브랜드에 적합한 서체와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의 경우 주요 표기 문자의 세로 평균은 최대 65cm 이내로 하고, 보조 표기 문자는 간판 세로의 4분의 1이내로 제한한다.
- 가로형 간판에서 판류형의 경우 표기 요소의 총면적을 간판 면적의 3분의 1이내로 제한한다.

[돌출형 간판]

- 돌출형 간판은 주요 표기 요소를 간판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 돌출형 간판은 보조 표기 요소를 간판 면적의 6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설치 (Installation)

- 간판은 건물과의 거리 30cm이내로 설치한다.
- 간판의 두께는 30cm이내로 설치한다.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의 세로는 입체형의 경우 65cm 이내로 하고, 판류형의 경우 최대 80cm 이내로 글자의 높이와 비율에 맞추어 설치한다.

[돌출형 간판]

- 돌출형 간판은 건물의 최상층과 주거용도의 층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 돌출형 간판은 건물외벽에서 1m이내로 돌출시킨다.
 - 연립형 돌출간판은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게 제작한다.



- 돌출형 간판은 건물의 2층이상, 5층이내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한다.

조명 (Lighting)

- 간판은 부드럽고 은은한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한다.
- 간판에는 점멸방식 및 광원노출방식은 금지한다.
- 간판은 직접조명 방식으로 하는 경우 문자나 도형 등 제한된 부분 외 간판의 전면 발광을 금지한다.

안내판

정의

안내판은 대상지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정보(명칭, 방향, 거리, 위치, 설명, 주의, 금지, 안내 등)를 제공하여 대상지 내에서 방문객의 원활한 활동(이용, 관광, 관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표적인 정보매체이다.

분류: 종합안내, 방향안내, 위치안내, 시설안내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장식적 요소 배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
정보의 위계 (광역 정보 → 주변 지리 정보 → 세부 정보) 를 두어 배치
경사로에 설치 지양

조명기구 연계 권장
지도에는 주변의 주요 도로정보, 거리표시, 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
경사로 설치 지양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

명칭과 방향 및 거리 표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픽토그램, 방향 표시
지도에는 주변의 주요 도로정보, 거리표시, 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표기를 병기

정보 표기범위는 0.8m~1.6m 이내에 표기

0.8~1.6m 이상

0.6m 이상

지면에서 0.6m 이하에는 정보 표기를 금지

기초 구조 매립

경계석으로부터 간격 10~0.2m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장식적 요소를 배제
- 명칭과 방향 및 거리 표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 ➔ 표기 적극 활용: 픽토그램, 방향 표시
-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 **[종합안내]** 대상지의 명칭 정보, 주변 시설 명칭 및 위치 등의 상세정보, 관리부서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표기
- **[종합안내]** 정보의 위계(광역 정보 → 주변 지리 정보 → 세부 정보)를 두어 배치
- 지도에는 주변의 주요 도로정보, 거리표시, 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
-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
-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
- 경사로 설치 지양
-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
- 이동로에서 정보 내용의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
 - ➔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
- **[방향안내]** 방향안내판은 주요 교차지점에 설치
- 안내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
- 가로수 및 다른 공공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UD 가이드라인

-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표기를 병기
- 지면에서 0.6m 이하에는 정보 표기를 금지
- **[종합안내, 시설안내]** 정보 표기범위는 0.8m~1.6m 이내에 표기할 것을 권장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기의 사용을 지양
-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등의 문자를 적극 활용

CPTED 가이드라인

-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연계
- **[종합안내]**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 안내판은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안내판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형태와 크기를 단순화, 통합화, 규격화하여 설계
 - ※ 장식성보다는 기능성을 우선시하여 설계
- 안내판은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보행자의 이용에 거부감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안내판은 정확한 명칭과 방향 및 거리 표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 표기 적극 활용 : 픽토그램, 방향 표시
- 안내판은 다른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안내판의 지주 : 모듈화 권장

표기요소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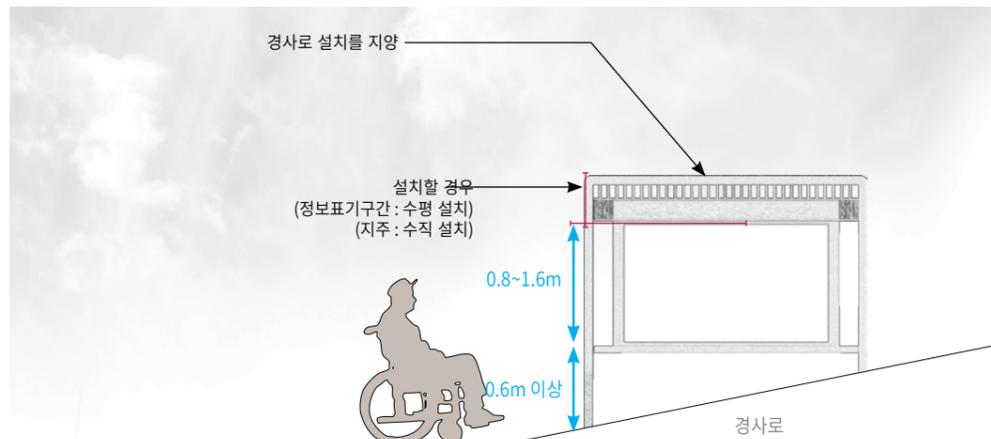
- **[종합안내]** 종합안내판에는 대상지의 명칭 정보, 주변 시설 명칭 및 위치 등의 상세정보, 관리부서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보조로 표기한다.
- **[종합안내]** 종합안내판은 정보의 위계 광역 정보 → 주변 지리 정보 → 세부 정보)를 두어 배치한다.
- 안내판에 표기되는 지도에는 주변의 주요 도로정보, 거리표시, 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한다.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안내판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안내판은 유지관리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안내판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한다.
 - ➔ 주조색 :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 보조색 : 전체 면적 20% 이내(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
 - ➔ 강조색 : 전체 면적 10% 이내
- 안내판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한다.

설치 (Installation)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한 이용과 정보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양한다.
 - ➔ 종합안내판 : 경사로 설치 금지
 - ➔ 설치할 경우 : 지주가 수직이 되고, 사인물이 수평이 되게 설치



- 안내판은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도로변, 보행로 등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이동로에서 정보 내용의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한다.
 - ➔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 안내판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 불가피하게 볼트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방향안내]**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안내판은 주요 교차지점에 설치한다.
 - ➔ 설치 위치 : 주요 분기점, 이동 시작점 및 도착점, 이용객의 집결지
- **[방향안내]** 방향안내판은 이동로의 시설물 설치 구역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한다.
-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시설물 설치 구간 내에 설치한다.
- 안내판은 주목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다른 공공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 ➔ 다른 공공시설물과의 간격 : 최소 2m 이상

UD 가이드라인

- 안내판에는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표기를 병기하며, 설명 내용도 포함한다.
 - ※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이외에는 방문하는 외국인에 맞는 외국어를 표기할 것을 권장
- 안내판은 보행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지면에서 0.6m 이하에는 정보 표기를 금지한다.
- **[종합안내, 시설안내]** 안내판의 주요 정보 표기범위는 0.8m~1.6m 이내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 안내판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기의 사용을 지양한다.
- 안내판은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등의 문자를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인지성을 높여 디자인한다.
 - ➔ 안내판은 경험, 지식, 언어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CPTED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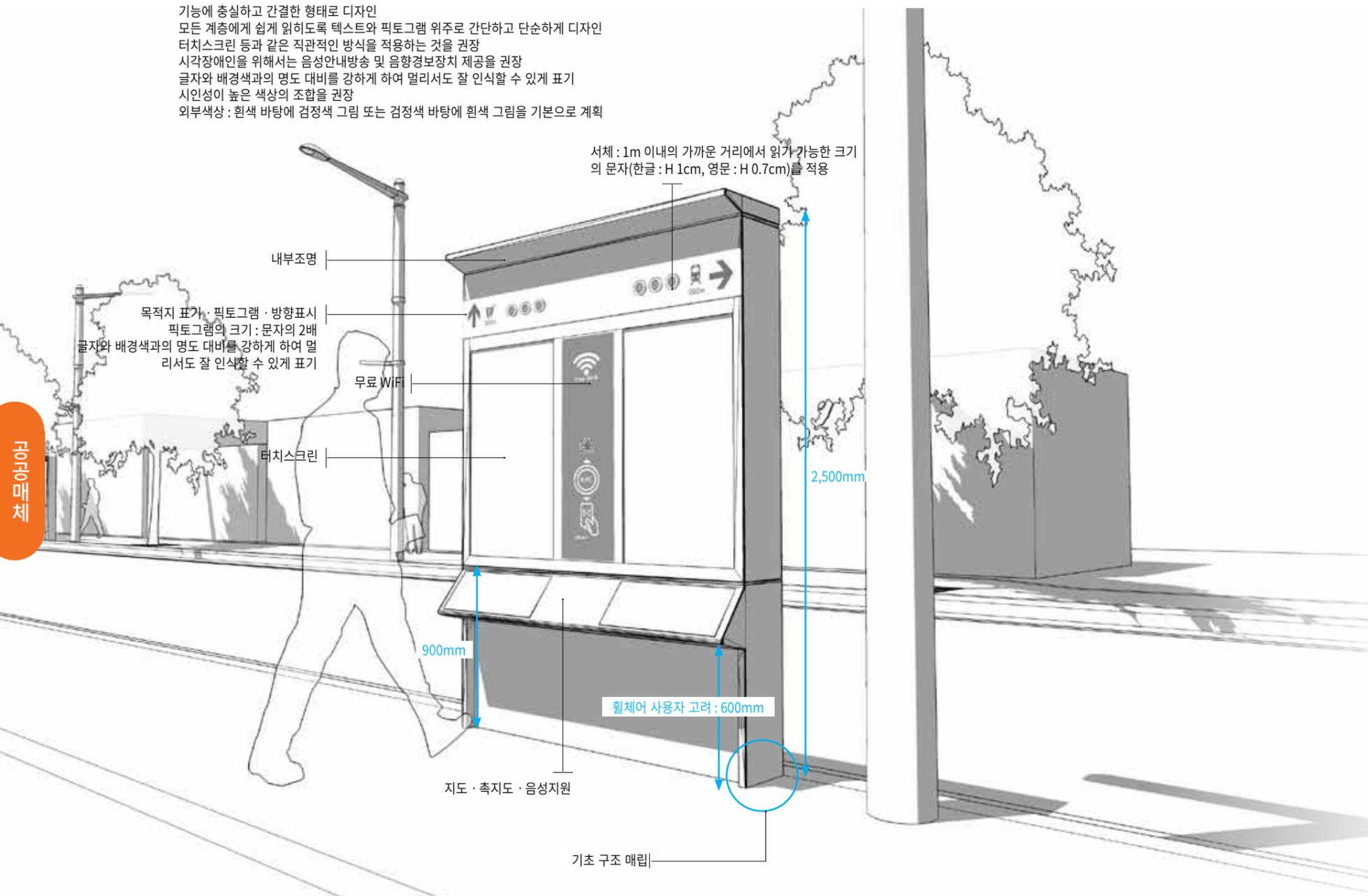
- 안내판은 야간 이용자를 위해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연계할 것을 권장한다.
 - ➔ 종합안내판 : 조명기구를 시설물 내에 삽입하여 설계
 - ➔ 방향안내판 : 야간식별이 용이하도록 명칭과 픽토그램은 형광 색채 및 반사지로 설계
- **[종합안내]** 종합안내판은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디지털영상매체

정의

디지털영상매체는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알리는 디지털화된 시설로 IT 기반의 정보(명칭, 방향, 거리 등)를 제공하고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이다.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와 픽토그램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 제공을 권장
글자와 배경색과의 명도 대비를 강하게 하여 멀리서도 잘 인식할 수 있게 표기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조합을 권장
외부색상 : 흰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 또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그림을 기본으로 계획



기본코드(Basic code)

PUBLIC 가이드라인

-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와 픽토그램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
- 장식적 요소를 배제
- 정보제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전면광고 등)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서체는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가능한 크기의 문자(한글 : H 1cm, 영문 : H 0.7cm)를 적용
- 국제표준(ISO 7001) 픽토그램 및 한국산업표준(KS) 지정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
- 정보 표현(문자와 그래픽)은 배경과 색상·명도·채도의 차이를 두어 계획
-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조합을 권장
- 바탕색과 명도 차이를 충분히 확보
-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 보도와 차도 경계가 있는 도로 : 차도 경계에 가까이 설치
 - ➔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 : 건축물 경계에 가까이 설치
- 기초 구조는 매립

UD 가이드라인

-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
- 화면의 하단(기준높이:1,350mm)에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
- 고령자 및 약시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버튼, 점자, 촉지도 제공을 권장
- 개인용 스마트 정보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QR 코드와 NFC 태그를 제공
- 무료 WiFi, 배터리 충전 단자 설치를 권장

CPTED 가이드라인

- 내부 조명을 설치하거나 조명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PUBLIC 가이드라인

디지털영상매체는 기존의 인쇄된 안내표지판을 대체할 수 있으며, 디지털영상매체의 기준은 일반 안내표지판의 기준을 따른다.

디자인 (Design)

- 디지털영상매체는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 제공을 권장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와 픽토그램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 실외에 설치하는 디지털영상매체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다.

표기요소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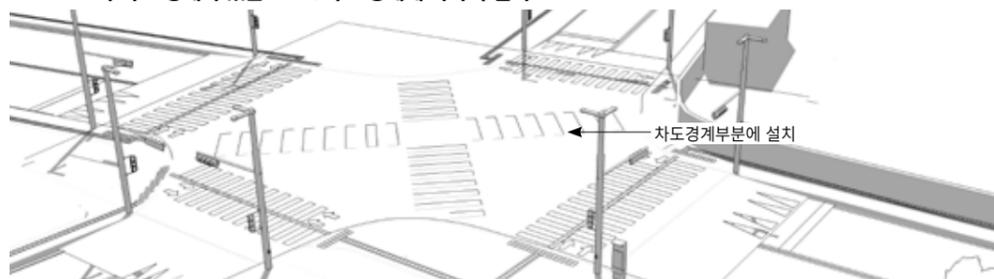
- 디지털영상매체에서 정보제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전면광고 등)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글자와 배경색과의 명도 대비를 강하게 하여 멀리서도 잘 인식할 수 있게 표기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고령자 및 약시자를 위해 글자색과 배경색이 분리되도록 색상의 명도 차이가 5정도 되도록 계획한다.
- 디지털영상매체에 표기되는 서체는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가능한 크기의 문자(한글: H 1cm, 영문: H 0.7cm)를 적용한다.
- 디지털영상매체 국제표준(ISO 7001) 픽토그램 및 한국산업표준(KS) 지정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 픽토그램의 크기: 문자의 2배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디지털정보매체에 정보 표현(문자와 그래픽)은 배경과 색상·명도·채도의 차이를 두어 읽기 쉽도록 계획한다.
 - ※ 특히 시각장애인(색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색상을 적용
- 디지털정보매체는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조합을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들이 고려하여 외부색상은 화이트 & 블랙의 단순한 명도 대비가 되도록 계획
 - 외부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 또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그림을 기본으로 주변의 색상과 밝기 차이가 큰 쪽을 선택
- 디지털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는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탕색과 명도 차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 인터페이스는 색상 차이와 밝기 차이를 모두 두도록 계획
- 디지털정보매체는 인접한 색상과 명도 차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흰색 테두리 등을 이용하여 색의 혼동을 방지한다.

설치 (Installation)

- 디지털영상매체는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 경계가 있는 도로: 차도 경계에 가까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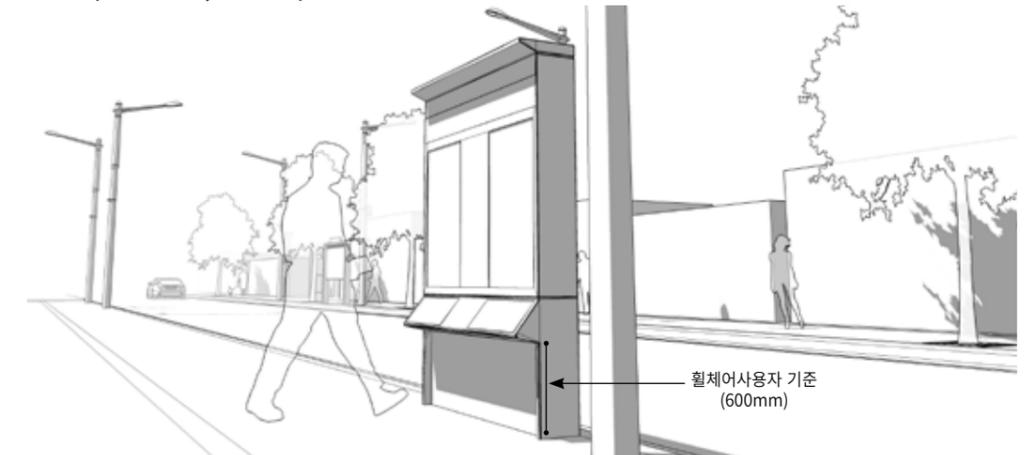


→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 건축물 경계에 가까이 설치

- 디지털영상매체는 교차로, 갈림길 등 동선이 나뉘는 방향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방향을 지시하는 정보를 함께 설치한다.
- 외부에 설치하는 디지털영상매체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UD 가이드라인

- 디지털영상매체는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성인,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눈높이의 사용자가 정보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기준높이: 1,350mm)에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고령자 및 약시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버튼, 점자, 촉지도의 제공을 권장한다.
- 디지털영상매체는 디지털 안내사인의 콘텐츠를 개인용 스마트 정보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QR 코드와 NFC 태그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 ※ 기본적인 디지털 안내사인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에 서비스 진행
- 디지털영상매체에는 개인용 스마트 정보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WiFi, 배터리 충전 단자 설치를 권장한다.

CPTED 가이드라인

- 디지털영상매체는 야간의 시인성과 판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영상매체에 내부 조명을 설치하거나 조명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 실내설치 디지털영상매체: 내부조명 or 벽부 조명 연계
 - 실외설치 디지털영상매체: 내부조명 or 공공조명 연계

4.3 시각이미지

그림문자, 서체,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심의 체크리스트)

정의

시각이미지는 도시의 고유성을 담아 표현하는 이미지로 도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적 정보 매체로 그림문자, 서체, 도시브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 시각이미지(그림문자, 서체, 도시브랜드) 개발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시각이미지를 개발할 때에는 공공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고 제천시의 정체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간결하고 명시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칼라(4도)의 배색을 기준으로 하며, 흑백(1도)으로 변화시에도 인지성이 높게 디자인한다.
-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서체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규칙적인 배열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입체화시켜 적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개방감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한다.



-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비정형 요소를 포함시켜 자유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것을 권장한다.

서체 (Typeface)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정보의 위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공공시설물에서 공문서까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서체를 개발한다.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서체의 간격을 줄이고, 단어간에는 모으고, 행간은 명확하게 비우는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된 서체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다른 요소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사용금지 규정을 함께 개발해 적용하여야 한다.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기관 상징, 심볼마크와 워드마크를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광고물에 적용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림문자 (Pictogram)

- 스포츠 종목을 표현하는 그림문자를 개발할 때에는 종목이 가지는 특성의 움직임이 잘 표현되도록 디자인한다.
- 그림문자를 개발할 때에는 디자인 개발 전략과 적용 전략을 반드시 수립한다.
- 그림문자를 개발할 때에는 양각 디자인과 음각 디자인을 모두 개발한다.



그림문자

그림문자

4.4 공공미술

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

정의

공공조형물은 어떤 장소, 사건, 인물 등을 기념하거나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설치목적에 위한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으로 금속 및 석재 등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공공미술이다.

슈퍼그래픽은 크다는 뜻의 슈퍼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래픽이 합쳐진 용어로 캔버스에 그려진 회화 예술을 규모가 큰 옥외 공간(거리나 도시의 벽면)에 그리는 공공미술이다.

PUBLIC 가이드라인

디자인 (Design)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은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실행**한다.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은 특색있고 심미적인 상징을 통해 제천시의 관광자원 및 **도시이미지 홍보효과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공공미술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설치 목적이 설치 장소와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공공조형물]

- 공공조형물은 특정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형상화시켜 적용한다.
 - 상징성을 충족시키고, 주변 공간과 설치 공간이 연계되도록 디자인
- 공공조형물은 차별성과 상징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지양한다.
 - 과도한 장식이나 상징물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디자인
- 공공조형물은 특정 계절에 편중되는 디자인을 지양한다.

[슈퍼그래픽]

- 슈퍼그래픽은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표기요소 (Mark)

- 공공조형물은 **홍보성 문구나 상업성 캠페인 문구의 사용을 지양**한다.

[슈퍼그래픽]

- 슈퍼그래픽은 표기요소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작가의 작품성을 존중**한다.
 - 단,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실행

색채 & 재료 (Color & Material)

-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 계획 또는 의도에 따라 고채도를 사용할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실행

[공공조형물]

- 공공조형물에 고광택의 재료는 조형물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 고광택 재료의 면적이 30% 이상 :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실행
- 공공조형물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 및 안전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공공조형물은 가급적 재료가 가지는 이미지 표현을 권장한다.
 - 번색·탈색·갈라짐·주름·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권장

- 공공조형물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슈퍼그래픽]

- 슈퍼그래픽은 옥외공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콘크리트 벽면, 석재 벽면 : 물감(유성) 등의 칠하는 재료 사용을 권장
 - 목재 벽면 : 물감(수성, 유성) 등의 칠하는 재료 사용을 권장
- 슈퍼그래픽에 **부착형 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도록 계획**한다.

설치 (Installation)

-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은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특성상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개방된 위치에 설치한다.

[공공조형물]

- 공공조형물의 하부구조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한다.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 기초 구조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연계하여 설치
- 공공조형물은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의 개방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조명 (Lighting)

-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에 사용되는 조명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계획은 금지**한다.
- 상시적으로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에는 에너지 절감형 조명기구(LED 등)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형물]

- 공공조형물의 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방적이고 상징적인 조명계획을 수립
- 도시의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해당 지역의 야간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설계한다.

[슈퍼그래픽]

- 슈퍼그래픽은 조명의 빛으로 인해 원화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은 지양한다.
 - 계획 또는 의도에 따라 원화가 주간과 야간이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경우는 제외



IV.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활용

1. 가이드라인 활용
2.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IV.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활용

1. 가이드라인 활용

1.1 활용 방안

[활용 목표]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제천시만의 고유한 공공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활용주체인 제천시(행정기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전문업체,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천시민들이 제천시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비전, 기본원칙, 기본방향, 콘셉트)을 이해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제천시민의 고유한 공공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활용한다.
- ② 제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적용하는 전략으로 활용한다.
- ③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의 기획, 발주, 디자인·설계, 자문, 심의, 관리,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④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천시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 ⑤ 감독자, 실행자, 이용자의 제천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활용 주체]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는

공공시설물을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그리고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대상이다.

주체: 기획, 발주, 관리자(제천시 행정기관), 심의 및 자문 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디자인 및 설계자(공공디자인 전문업체, 공공디자인 전문가), 이용자(제천시민 등)



1.2 활용 절차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의 기획 및 발주 단계, 디자인 및 설계 단계, 심의 또는 자문 단계, 제작 및 시공 단계, 평가 및 유지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활용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다.

[STEP 01 _ 기획 단계]

- ① 행정기관(제천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기준으로 공공시설물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기획한다.
- ②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행정기관과 심의 또는 자문기관, 공공디자인 전문가(전문업체와 전문가), 이용자(제천시민)참여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준 역할을 한다.
- ③ 행정기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발주할 때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업지침서를 작성한다.
- ④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구현할 때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사업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천시 홈페이지와 관보에 고지하여 활용주체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TEP 02 _ 디자인 및 설계 단계]

- ①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디자인 및 설계)에 앞서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천시의 공공디자인 방향과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다.
- ②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진흥 사업을 계획(디자인 및 설계)할 때 행정기관(제천시)에서 제시된 과업지침서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한다.
- ③ 행정기관(제천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계획(디자인 및 설계)한 사업의 대한 협의 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검수 및 협의 자료로 활용한다.
- ④ 행정기관(제천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의 계획(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준으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

[STEP 03 _ 자문 및 심의 단계]

- ① 심의 또는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제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제천시의 공공디자인의 방향과 고유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제천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심의 또는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는 과업지침서나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다.

[STEP 04 _ 제작 및 설치 단계]

- ① 공공시설물의 제작 및 설치 단계에는 관련 행정기관(제천시)에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제작 및 설치 상황을 점검한다.
- ② 공공시설물의 제작 및 설치 단계에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감리 기준의 역할을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STEP 05 _ 평가 및 관리 단계]

- ①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과업지침서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을 찾아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행정기관(제천시), 이용자(시민 등)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2.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2.1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버스·택시 승강장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진입방향은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지붕은 3도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는가?			
	파손이나 훼손, 노선 변경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승강장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청색 연석으로 표기하였는가?			
	승강장은 조명기구(가로등 및 보행등)와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 내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할 것			
	승강장 주변에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 금지구간 : 승강장 10m 이내			
	농촌지역 승강장은 마을의 진입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명기구와 병행하여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승강장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승강장의 버스 진입방향은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시설물(광고판, BIT 등)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			
	승강장의 지붕은 빗물이나 눈 쌓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3도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는가?			
	파손이나 훼손, 노선 변경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지붕의 높이는 지면에서 2.4m 이상으로 디자인을 권장하였는가?			
	최근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기능 수행을 권장하였는가? ▶ 형태 : 밀폐형 승강장 ▶ 시설 : 냉·난방기, 미세먼지 저감장치, 에어커튼, 조명, 비상 벨 등			
	부피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 도로점유율 감소 지향 : 기능시설(조명, 안내사인 등) + 벽체 및 지붕과 일체형으로 디자인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내·외부에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슈퍼그래픽 사용을 지양하고, 구조와 기능을 강조하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내·외부에는 시를 상징하는 특정 이미지의 부착이나 설치를 최소화하였는가? ▶ 시 로고 / 명칭 등은 일정 위치에 공통적으로 적용 ▶ 전체 면적의 10% 이내로 설치			
색채 & 재료	승강장의 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승강장의 주조색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사용하는 재료는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디자인으로 권장하였는가?			
	승강장의 기둥과 지붕의 재료는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벽체는 개방성이 있는 투명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승강장의 지붕은 자외선 차단이 용이한 마감재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승강장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양하였는가? ▶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를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설치	승강장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승강장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승강장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청색 연석을 설치하여 대상지가 승강장임을 명확히 하였는가? ▶ 농촌지역에 설치할 경우 : 청색 연석 + 청색 라인 버스 대기공간을 병행 설치			
	승강장은 조명기구(가로등 및 보행등)와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내부에 조명기구 설치 ▶ 내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할 것			
	버스·택시 승강장 주변에 시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 금지구간 : 승강장 10m 이내			
	승강장 설치 구간은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였는가?			
	농촌지역의 마을입구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마을의 진입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명기구와 병행하여 설치하였는가? ▶ 설치 기준 : 버스 승강장 + 가로등(버스 승강장 좌우로 10m 간격으로 5개의 가로등 or 보안등 설치) ▶ 버스 승강장에는 마을명을 채널사인 형식으로 설치			
	가로공간의 규모, 보행 유효공간을 고려하여 승강장의 설치 규모를 조정하였는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 유효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보행 폭이 2m 이하 지역 : 역방향 버스 승강장 설치			
	승강장의 안내표지는 승강장과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 버스 & 택시 승강장 없이 안내표지판만 설치할 경우 노선에 대한 정보를 기재 주기적으로 청소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는가?			
UD	개구부는 휠체어 및 유모차가 충분히 통과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개구부의 너비 최소 0.8m 이상			
	승강장 내부에는 장애인 대기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 대기공간을 표기하였는가?			
	승강장의 시각정보는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교통약자를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하였는가?			
기대어 기다릴 수 있는 등받이를 설치하였는가? ▶ 이용객의 다양한 행태를 고려해 디자인 적용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UD	승강장이 설치되는 구간에는 청색 연석을 설치하였는가? ▶청색 연석 설치 구간: 버스 8m 이상, 택시 6m 이상			
CPTED	내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하였는가?			
	농촌지역의 마을입구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마을의 진입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설치 기준: 버스 승강장 + 가로등(버스 승강장 좌우로 10m 간격으로 5개의 가로등 or 보안등 설치) ▶버스 승강장에는 마을명을 채널사인 형식으로 설치			
	외부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벽체는 개방성이 있는 투명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사방에서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			

자전거 거치대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개별 설치,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하였는가?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거치대의 기초 구조는 매립하였는가?			
	가급적 필요한 곳에만 최소 수량으로 설치하였는가?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였는가?			
	보행로 폭이 1.5m 이하의 보행로에는 거치대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는 자전거 거치대는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디자인하였는가?			
	자전거 거치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캐노피 설치 시 크기는 최소화			
	자전거 거치대는 개별 설치와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설치 규모의 조정이 용이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모듈형 디자인 권장			
	시공이 용이하고, 파손이나 훼손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모듈형 구조로 디자인			
	자전거 거치대는 구조나 규격을 모듈화하여 다른 지주시설물과 지주를 공유하거나 통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편의시설물과 연계 및 통합: 벤치, 앉음벽 화단, 퍼걸러(파고라) 등 ▶공공조명과 연계 및 통합: 가로등, 보안등 등			
색채 & 재료	자전거 거치대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자전거 거치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자전거 거치대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설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자전거 거치대는 최대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도로, 대중교통과 연계된 곳, 육교, 교량 등 구조물의 하부, 공지 등			
	자전거 거치대는 보행로 폭이 1.5m 이하의 보행로에는 거치대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자전거 거치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기성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 기존에 설치된 형태와 유사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이용량에 따라 설치 규모를 조절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필요한 곳에만 최소 수량으로 설치하였는가? ▶장소가 협소한 장소(가로변 보도 등) : 캐노피가 없는 자전거 거치대 ▶장소가 비교적 넓은 장소(광장, 공원, 건축물 공개 공지 등) : 캐노피가 있는 자전거 거치대 or 캐노피가 없는 자전거 거치대 ▶캐노피 설치 시 : 크기 최소화, 투명한 재료를 사용			
	자전거 거치대는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해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의 조명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휴게공간과 함께 설치할 경우 보안등 + CCTV 함께 설치			
	자전거 거치대는 뾰족하거나 표면이 거칠지 않아야 하며, 좌우 양손을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하였는가?			
	노인과 어린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는가? ▶바퀴를 들지 않고 바닥면에서 밀고 당길 수 있도록 디자인			
	보행로에 설치하는 자전거 거치대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크기로 디자인하였는가? ▶보행로 설치 : 캐노피 병행 설치 지양			
CPTED	캐노피 설치 시 사방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CCTV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CCTV 병행 설치 기준 : 거치대 30면 이상			
	자전거 거치대는 조명기구와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도난방지를 위해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주변에 설치를 권장 ▶캐노피가 설치된 거치대 : 캐노피에 조명기구를 매입			

볼라드(차량집입방지용말뚝)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였는가?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1.2~1.5m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최소 수량으로 설치하였는가?			
	횡단보도,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저지해야 할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하였는가?			
	기초 구조는 매립하였는가?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하였는가?			
	보차 혼용도로,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낮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에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 지역 + 조명 설치 지역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조명 설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의 일반적인 규격은 H0.8m ~ 1m, 폭 0.1~0.2m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조색 : 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설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1.2~1.5m의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휠체어 이용자 및 유모차 이용자들의 교행이 용이하도록 설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가급적 필요한 곳에만 최소 수량으로 설치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횡단보도,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저지해야 할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사람 또는 차량 이동 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보차 혼용도로,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낮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일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규격 : 0.8m 이상 ▶낮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규격 : 0.8 ~ 0.4m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점자블록 위에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UD	볼라드 상단에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탄성 소재)를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하였는가? ▶점자블록 설치 위치 :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전면 0.3m 전방 점자블록 밖에 설치하였는가?				
CPTED	간접조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는 조명을 적용하였는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상부 및 바닥면에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권장			

펜스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개방성을 강화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펜스는 모듈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모듈 규격 : 가로 1 ~ 1.5m * 세로 1.25m 이상 ▶무단횡단사고,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격 ; 1.5m 이상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가로경계는 기본적으로 식재 사용,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는가?			
	펜스는 신체와 접촉하는 상부는 자연친화적인 소재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지면과 수직 및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였는가?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하였는가?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펜스는 가로변에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개방성을 강화하였는가?			
	펜스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펜스는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모듈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모듈 규격 : 가로 1 ~ 1.5m * 세로 1.25m 이상 ▶무단횡단사고,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격 ; 1.5m 이상			
	펜스는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펜스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모서리는 동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펜스는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가로경계는 기본적으로 식재 사용을 권장하며 안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안전펜스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펜스는 신체와 접촉하는 상부는 내구성 뛰어난 자연친화적인 소재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펜스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펜스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펜스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펜스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펜스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경계 펜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에는 야간에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반사체(반사시트)를부분적으로 부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펜스의 부재는 지면과 수직 및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였는가? ▶경사면 : 세로부재 -수직 설치, 가로부재-수평 설치			
설치	펜스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불가피하게 너트, 볼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가로변에 설치하는 펜스는 보차도 경계부분의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하였는가?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 경계석에 접해서 설치 ▶경계석 위에 설치할 경우 : 반드시 지지대의 앵커 볼트에 커버를 설치			
	펜스는 경사면 설치시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펜스가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하였는가?			
UD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펜스는 반드시 세로형 패턴을 적용하였는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는 펜스의 경우, 자전거가 정차하는 위치에서 발판을 설치하였는가?			
CPTED	펜스의 부재 사이는 어린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간격을 조정하였는가? ▶펜스 간격 : 0.2m 이내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보행로 경계부분에 설치하였는가?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한 범죄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자연감시가 취약한 가로변 ▶CPTED를 적용한 펜스를 사용하거나 시인성을 높이는 패턴을 적용			
	안전사고 및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펜스를 설치하였는가? ▶설치 구간 : 횡단보도 양쪽으로 30m 이내			

공공조명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되었는가?			
	[가로등] [보안등]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고유관리코드 정보를 표기하였는가?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에 부여된 정보(고유관리코드)는 점검부 커버에 활용하였는가?			
	점검구는 서 있을 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디자인하였는가? ▶점검구 위치 : 지면에서 1m 이상 ~ 1.5m 이하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지주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제작하여 스스로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하였는가?			
	[가로등] [보안등]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가로등] [보안등]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모서리는 동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였는가?			
	[가로등] [보안등] 다른 시설물과 기능의 결합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CCTV + 표지판 + 안내판 등			
	공공조명은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공공조명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파손 시 빠른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가로등] [보안등] 상부의 헤드는 램프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되 불필요하게 비대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지주단면 대비 500% 이하			
	공공조명에는 고유관리코드 정보를 표기하였는가? ▶정보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가로등] [보안등] 고유관리코드는 점검구 커버를 활용			
	공공조명의 점검구는 서 있을 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디자인하였는가? ▶점검구 위치 : 지면에서 1m 이상 ~ 1.5m 이하 ▶점검구는 사람이 쉽게 만질 수 없도록 시거 장치(피스 조임 등)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공공조명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양하였는가?			
	공공조명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조색: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강조색: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공공조명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공공조명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공공조명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의 지주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스틸 또는 알루미늄)로 제작하며 스스로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설치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하였는가?			
	[가로등] 가로등 배열은 다음 기준을 준용하였는가? ▶한쪽 배열: 차도 폭이 가로등주의 높이와 같거나 좁을 경우 ▶지그재그 배열: 차도 폭이 가로등주 높이의 1~1.5배일 경우 ▶마주보기 배열: 차도 폭이 가로등주 높이에 비해 1.5배 이상일 경우 ▶중앙배열: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각각의 도로에 한쪽 배열로 간주			
	[가로등] [보안등] 가로변에 설치하는 공공조명은 보차도 경계부분의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하였는가?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경계석에 접해서 설치 ▶경계석 위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지지대의 앵커 볼트에 커버를 설치			
UD	[가로등] [보안등] 독립 지주형의 공공조명은 지주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였는가?			
	[가로등] [보안등] 공공조명에 부착물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교차로, 횡단보도, 골목길 진입부에는 공공조명을 우선 설치하며 조도는 주위보다 밝게 계획하였는가? ▶교차로: 고각부 4면에 모두 설치			
	공공조명은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였는가?			

배수구 덮개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주변 보도환경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차도용 덮개 재료: 주철 권장			
	보도용 덮개 재료: 주철을 사용한 구조체를 권장하였는가?			
	보행로 중심부에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로의 양 측면에 설치하였는가?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보도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배수구 덮개는 주변 보도환경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 ▶가로수 보호대와 같은 녹지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			
	배수구 덮개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시 로고 등)는 지양 ▶덮개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무방향성 디자인 권장 ▶덮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부분에 색상 및 재료 분리 형태 권장			
	배수구 덮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덮개의 개폐시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색채 & 재료	배수구 덮개는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 적용하거나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색상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주변도로의 바닥과 동일한 명도와 채도, 색상을 권장			
	배수구 덮개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보도에 사용하는 배수구 덮개는 보도 포장재질과 같은 재료로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는가? ▶가로공간의 연속적 이미지 연출 ▶배수구 덮개: 보도와 유사한 포장재 적용			
설치	배수구 덮개 주변 보도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였는가?			
	배수구 덮개는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였는가?			
	배수구 덮개는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UD	배수구 덮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는가? ▶미끄럼 방지: 표면에 요철, 패턴 적용			
	배수구 덮개는 패턴이나 홈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홈과 틈이 벌어지거나 균열이 없도록 설치하였는가? ▶홈 크기: 여성의 하이힐, 노약자의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크기			

벤치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수직부재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우천 시 벤치의 좌판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철재 및 석재)가 되도록 설계하였는가?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표면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연계시설과 병행하여 설치하였는가?			
	기초 구조를 매립하였는가?			
우천 시 벤치의 다리가 닿는 하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경사면에서는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기본적으로 공공벤치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부피감을 최소화시키는 디자인 권장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디자인은 지양 ▶테마거리나 특화된 공원 :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상징성 있는 디자인의 적용 가능			
	벤치는 지면과 닿는 벤치의 수직부재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벤치는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통합되는 구조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통합 설치 시설 : 자전거 거치대, 화분, 앉음벽 화단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벤치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에 설치 시설물과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는가? ▶동일한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디자인 및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시설 설치			
	우천 시 벤치의 좌판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벤치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철재 및 석재)가 되도록 설계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벤치는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표면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벤치의 마감재료는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벤치는 대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벤치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벤치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벤치의 표면에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설치	벤치는 여름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연계시설과 병행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연계시설 : 수목, 퍼걸러(파고라), 차광막 등			
	벤치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벤치는 우천 시 벤치의 다리가 닿는 하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벤치는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UD	벤치에서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끼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형태 :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공원 & 광장 : 등받이 + 손잡이 설치를 권장 ▶재료 : 앉는 좌판 부분은 목재 사용을 권장하며 목재에는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			
	벤치의 좌우측면에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벤치는 음수대나 휴지통 등의 시설물과 일정 간격을 이격하여 설치하였는가? ▶이격거리 : 5m 이상			
	벤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벤치를 적절히 배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일반 성인 : 높이 0.4~0.45m, 어린이·노약자 : 높이 0.3~0.35m를 권장			
CPTED	벤치는 조명시설과 인접해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가로등이나 보행등과 연계하여 설치			
	벤치의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뒷면이 가려지는 형태의 벤치를 적용할 경우 : 투명한 재료 사용 권장			

퍼걸러(파고라)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녹지가 형성된 공간에는 식생녹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사면이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지붕은 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개방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의 기초 구조는 매립하였는가?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였는가?			
	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자전거 거치대, 휴지통 등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녹지에 퍼걸러(파고라)가 설치되는 경우 녹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설치 장소에 따라 내부의 시설물이 확장 및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는 생태공간, 공원 등 녹지가 형성된 공간에는 식생녹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는 사면이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부피감이 최소화되는 구조, 개방성 강조			
	퍼걸러(파고라)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 기둥은 부피감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퍼걸러(파고라)의 기둥 및 천장에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테마거리 및 특화 공원 :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상징성 있는 디자인의 적용 가능			
	퍼걸러(파고라)의 기둥은 최대한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지면에 닿는 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지붕은 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개방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신체와 접촉되는 부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신체 접촉부위 : 둥글게 마감처리			
	퍼걸러(파고라)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자연 친화적 재료 사용시 : 미관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함께 고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대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퍼걸러(파고라)는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퍼걸러(파고라)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색상			
	퍼걸러(파고라)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였는가?			
설치	유아, 어린이가 노는 모습을 외부에서 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여러 개의 퍼걸러(파고라)를 설치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추가 설치할 경우 :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 적용 →신규 설치할 경우 : 동일한 디자인 적용			
	대상지의 보행 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자전거 거치대, 휴지통 등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 내부에는 벤치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벤치의 형태와 구조는 대상지의 이용 고객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UD	녹지에 퍼걸러(파고라)가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덩굴식물 등으로 녹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경사도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였는가?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 기둥은 수직 유지 + 좌판은 수평 유지			
	퍼걸러(파고라)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휠체어, 유모차가 내부로 진입 및 회전할 수 있는 규격으로 디자인하였는가?			
CPTED	내부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벤치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는 야간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공조명(가로등이, 보행등)에 인접하여 설치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 내부에 조명기구를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퍼걸러(파고라)의 내부 조명은 주변의 조명보다 밝게 계획하였는가?			

휴지통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분리수거 픽토그램 적용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였는가?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양면(앞·뒤면)으로 디자인 ▶단면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단면(앞면)으로 디자인			
	편의시설(벤치, 퍼걸러(파고라) 등)과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의 사용을 금지			
	내부통은 쓰레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실외용 : 스테인리스 스틸 권장 ▶실내용 : PC 권장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뚜껑이 설치되는 경우 뚜껑은 휴지통 외부와 동일한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휴지통에 재떨이 설치 금지하였는가?			
경사로 및 계단에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휴지통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분리수거 픽토그램 적용 ▶픽토그램 + 문자(한글+영문) 병행 표기			
	휴지통은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양면(앞·뒤면)으로 디자인 ▶단면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 : 투입구를 단면(앞면)으로 디자인			
	휴지통은 편의시설(벤치, 퍼걸러(파고라) 등)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휴지통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의 사용을 금지			
	실외에 설치되는 휴지통은 다양한 상황(눈, 비, 황사 등)을 고려해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우천 시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설계			
색채 & 재료	휴지통의 내부통은 쓰레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실외용 : 스테인리스 스틸 권장 ▶실내용 : PC 권장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휴지통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실외에 설치되는 휴지통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구조로의 기능이 가능한 재료 사용			
	휴지통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설치	휴지통에 뚜껑이 설치되는 경우 뚜껑은 휴지통 외부와 동일한 재료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휴지통은 쓰레기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였는가?			
	휴지통은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휴지통은 비흡연자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휴지통에 재떨이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UD	휴지통은 경사로 및 계단에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휴지통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국제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휴지통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크기와 규모를 계획하였는가?			
	휴지통은 투입구와 이음부에 나사 돌출이나 뾰족한 부분이 없게 설계하였는가?			
	휴지통의 투입구는 사람의 손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디자인하였는가?			
	휴지통의 모서리는 모든 동글게 마감 처리하였는가?			

음수대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음용수임을 알리는 표시물 설치하였는가?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적용하였는가?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계획하였는가?			
	냉각기 등의 설비 시스템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물이 직접 닿는 부위는 내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물이 빠질 수 있는 투수성 재료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내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였는가?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였는가?			
	자동잠금센서를 설치하였는가?			
	바닥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음수대에는 음용수임을 알리는 표시물 설치하였는가? ▶음용수의 수질을 정기적(6개월)으로 실시			
	음수대의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적용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음수대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계획하였는가?			
	음수대는 냉각기 등의 설비 시스템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는 구조			
	음수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음수대는 일체의 장식·장식 등의 이미지를 적용하거나 그래픽 요소를 남용하지 않았는가? ▶특정 이미지, 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금지			
	음수대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음수대는 물이 직접 닿는 부위인 물받이 등은 내수성이 강한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석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물에 의한 표면 훼손 방지를 고려하여 디자인			
	음수대는 내구성 및 내부 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음수대는 물이 빠질 수 있는 투수성 재료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투수성 재료 : 투수 블록 등			
	음수대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음수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음수대는 내수성이 강한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석재)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음수대에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음수대를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였는가?			
	음수대는 이용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였는가?			
	음수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물을 절약하기 위한 자동잠금센서를 설치하였는가?			
설치	음수대의 바닥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			
	음수대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음수대가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하였는가?			
	음수대를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였는가? ▶휠체어, 유모차, 지팡이를 짚는 고령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UD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행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개방 : 사면 개방 구조 ▶이용자 : 휠체어, 유모차, 노인, 지팡이를 짚는 사람, 반려동물 등 ▶높이 : 일반성인 : H 800mm~1,500mm, 어린이·노약자·휠체어 사용자 : H 600mm~800mm(하단 높이 : 600mm 이상)			
	음수대에 신체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등갈게 처리하였는가? ▶약자(어린이, 노인,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 배려			
CPTED	음수대는 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자연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음수대는 편의시설(벤치, 퍼걸러(파고라))에 인접하여 설치하였는가?			

클린하우스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최소 1개면 이상은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분리수거함은 분리수거되는 물질에 따라 규격을 각각 다르게 디자인하였는가?			
	셸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였는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분리수거함에 시각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조경, 식재 등과 병행하여 계획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이 내구성이 강하고 녹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은 반드시 도장마감 처리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청소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였는가?			
	화분 등의 녹화를 병행하여 설치하였는가?			
	농촌지역 클린하우스는 마을명을 표기하여 설치하였는가?			
	기초 구조는 매립하였는가?			
	경사면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클린하우스는 최소 1개면 이상은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최소한의 구조로 부피감을 줄이며 개방성을 확보			
	내부분리수거함은 사이즈를 규격화하는 것을 지양하며, 분리수거되는 물질에 따라 규격을 각각 다르게 디자인하였는가? ▶분리수거함 : 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 등 구분하여 설치			
	클린하우스는 기후변화와 보관을 고려해 셸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였는가?			
	클린하우스는 일체의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클린하우스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클린하우스는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클린하우스는 조경, 식재 등과 병행하여 계획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분리수거함에 시각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색채 & 재료	클린하우스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이 내구성이 강하고 녹에 강한 재료 사용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은 도장마감 처리			
	클린하우스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주조색 :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 20% 이내 ▶강조색 : 채도 8 이상을 규제하며 전체 면적 10% 이내			
설치	클린하우스는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청소나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클린하우스는 화분 등의 녹화를 병행하여 설치하였는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클린하우스는 마을명을 표기하여 설치하였는가?			
	클린하우스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UD	클린하우스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클린하우스는 경사면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였는가?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 기둥은 수직 유지			
	클린하우스 내부에는 분리수거함을 반드시 설치하였는가? ▶분리수거함 : 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 등 구분하여 설치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CPTED	클린하우스는 휠체어 및 유모차가 내부로 진입 및 회전할 수 있는 규격으로 디자인하였는가?			
	클린하우스에는 CCTV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클린하우스는 야간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공조명(가로등, 보행등)에 인접하여 설치하였는가?			
	클린하우스 내부에 조명기구를 병행 설치하였는가?			
	클린하우스의 내부 조명은 주변의 조명보다 밝게 계획하였는가?			

맨홀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는가?			
	틈이 벌어지거나 균열이 없도록 설치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사용 목적에 따라 패턴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하였는가?			
	덮개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무방향성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덮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패턴 및 재료 분리 형태를 권장하였는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보도 포장재질과 같은 재료로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색상을 적용할 경우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 적용하였는가?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색상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보행로 중심부에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로의 양 측면에 설치하였는가?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보도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맨홀은 연속적인 공간에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맨홀은 주변의 가로수 보호대와 같은 녹지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맨홀은 사용 목적에 따라 패턴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하였는가? ▶맨홀 사용 목적: 우수, 오수, 전기, 통신 등			
	맨홀의 덮개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무방향성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맨홀은 덮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패턴 및 재료 분리 형태를 권장하였는가?			
	맨홀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색채 & 재료	보도에 사용하는 맨홀은 보도 포장재질과 같은 재료로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맨홀 덮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 적용			
	맨홀의 덮개에 색상을 적용할 경우 저명도, 무채도의 색채 적용하였는가? ▶주변도로의 바닥과 동일한 명도, 채도, 색상을 권장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맨홀은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색상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맨홀 덮개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차도용 덮개 재료: 주철 권장 ▶보도용 덮개 재료: 주철을 사용한 구조체 권장			
설치	맨홀은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맨홀은 주변 보도의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였는가?			
	맨홀은 보행로 중심부에 설치를 지양하며 보행로의 양 측면에 설치하였는가? ▶유효보행폭을 확보한 후에 보행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배수구 덮개는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였는가?			
UD	맨홀은 일반적인 가로변에서는 과도한 장식이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가? ▶장식 및 그래픽 적용 가능 지역: 특화거리 및 테마거리			
	맨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는가? ▶우천 시, 보행자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맨홀 상부에 요철이 있는 패턴 적용			
	맨홀의 틈이 벌어지거나 균열이 없도록 설치하고, 홈과 패턴을 최소화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였는가?			

지중화시설(배전함, 제어함)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콘크리트 기단은 금지하였는가? ➔관리기관(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과 협의 추진			
	간결하고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갓이나 캐노피 형태는 설치 금지			
	홍보시설과의 기능 결합을 권장하였는가? ➔결합시설 : 홍보시설(시정홍보)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내수성, 내열성을 강화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광택이 나는 소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금지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공개공지에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개별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개폐구는 차도가 아닌 인도쪽으로 열리게 설치하였는가?			
	경사면 설치는 지양하였는가?			
	지중화시설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지중화시설은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큰 면적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기단은 금지하였는가? ➔지중화시설은 관리기관(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과 협의 추진			
	지중화시설은 간결하고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갓이나 캐노피 형태는 설치 금지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지중화시설은 홍보시설과의 기능의 결합을 권장하였는가? ➔결합시설 : 홍보시설(시정홍보)			
	지중화시설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지중화시설은 휴먼스케일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한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지중화시설은 최소한 저속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지중화시설은 본체의 내수성, 내열성을 강화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지중화시설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지중화시설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금지하였는가?			
	지중화시설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설치	지중화시설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지중화시설은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공개공지에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개별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			
	지중화시설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지중화시설의 개폐구는 차도가 아닌 인도쪽으로 열리게 설치하였는가?			
	지중화시설은 경사면 설치의 지양하였는가?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 수직으로 설치			
	지중화시설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하였는가?			
UD	지중화시설 주위에는 녹지화하거나 모서리에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보행자의 충돌을 예방하였는가?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시 시인성 확보 ➔가로 경관 개선효과 증대			
	중화시설은 신체 부위와 직접적으로 닿는 모서리 등의 마감 부위는 라운드 처리하였는가?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방재시설(소화전)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보호대는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보호대는 관리기관(소방서)과 협의하여 추진하였는가?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하였는가? ▶주정차 금지 구역선 설치 ▶필요에 따라, 도로변 경계석에 인지색 설치			
	보호대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설계하였는가?			
	보호대는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였는가?			
	보호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보호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공개공지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부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공개공지 :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동선을 단절시키는 위치에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보호대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보호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경사면 설치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방재시설의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보호대는 동일한 디자인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관리기관(소방서)과 협의하여 추진하였는가?			
	방재시설의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하였는가? ▶주정차 금지 구역선 설치 ▶필요에 따라, 도로변 경계석에 인지색 설치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 ▶과도한 장식·상징 요소 사용 금지 ▶안전펜스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			
	방재시설의 보호대의 지주는 구조이자 마감재가 되도록 설계하였는가? ▶구조로의 기능이 가능한 재료 사용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였는가?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설치	방재시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 지양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방재시설은 공개공지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부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공개공지 : 시설물 설치지대, 녹지대			
	방재시설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는 위치에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설치 지양 지역 : 보행로 중앙부, 진입로 고각부			
	방재시설의 보호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방재시설은 경사면 설치 지양하며, 설치할 경우 수직으로 설치하였는가?			
	방재시설의 보호대는 사람 또는 차량 이동 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하였는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바닥의 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하였는가?			
	방재시설은 보행자 및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 인지가 명확하게 계획하였는가?			
	방재시설은 시인성 강화와 충돌로 인한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대 설치하였는가? ▶보호펜에는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강화 야간의 충돌을 방지			

가로수 보호대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잔디 등의 식재를 이용하여 가로공간 녹지화를 유도하였는가?			
	좁은 지역(폭 1.5m이하)에는 가로수 보호대를 보행로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금지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크기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조절하여 설치하였는가?			
	조명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중 매입 방식의 수목등을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설치	가로수 보호대는 연속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는가?			
	가로수 보호대의 크기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조절하여 설치하였는가?			
	조명이 필요한 지역에는 가로수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고 지중 매입 방식의 수목등을 설치하였는가? ▶조명이 필요한 지역 : 지방도로(농촌마을), 공원 및 광장의 조명이 부족한 곳 ▶수목의 식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도로 설치하고, 타이머 기능 설치를 권장			
	가로수 보호대는 유지·관리의 효율성, 도시경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제천시 가로수 보호대를 유지·관리의 우선시설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UD	가로수 보호대는 패턴이나 홈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여성의 하이힐, 노약자의 지팡이가 빠지지 않게 계획하였는가?			
	가로수 보호대는 덮개부의 표면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는가? ▶우천 시, 보행자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보호대 상부에 요철이 있는 패턴 적용을 고려			
	가로수 보호대는 보행자의 연속적인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보행로 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외곽부를 정교하게 마감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보행로가 좁은 지역(폭 1.5m이하)에는 가로수 보호대를 보행로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목재(데크형식)등을 활용하여 보호대 덮개를 촘촘하게 설치			
	가로수 보호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가로공간 녹지화 유도 ▶시 로고 등의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는 지양			
	가로수 보호대는 수목의 성장에 따라 쉽게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모듈형으로 디자인 ▶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쉽게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			
	수목의 성장에 따라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적절한 직경으로 디자인하였는가?			
	가로수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 가로수 보호대와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색채 & 재료	가로수 보호대는 녹지화(잔디, 관목, 초화류 등)를 권장하였는가?			
	녹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료가 가진 색상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가로수 보호대의 마감재료는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금지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 도장마감 처리			
	가로수 보호대는 파손이 쉬운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단, 가로수 보호대를 보행로로 활용할 경우 목재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도록 하였는가? ▶적용 가능 재료 : 철재나 목재(테크용 재료) 권장, 플라스틱 사용은 금지			

가로 화분대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통합되는 디자인을 권장하였는가? ▶통합디자인 적용시설: 벤치, 자전거 보관대, 펜스			
	급수부가 식물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대형 수목 식재형 화분대는 공간이 넓은 지역에 설치하였는가?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내구성이 강하고 물빠짐에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사용 권장 재료: 석재, 철재 등 ▶사용 지양 재료: 플라스틱, 목재, 고광택 재료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식재를 교체하였는가?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나 계단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보행로 중심부의 양 측면에 설치하였는가? ▶유효보행폭이 1.5m 이하의 가로공간의 설치 금지			
	지면에 고정하는 형태의 가로 화분대의 기초 구조 매립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가로 화분대는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통합되는 디자인하였는가? ▶통합디자인 적용시설: 벤치, 자전거 보관대, 펜스			
	가로 화분대는 급수부가 식물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가로 화분대는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가로 화분대는 동일한 선상에 배치되는 시설물들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형태 및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대형 수목 식재형의 가로 화분대는 광장, 공원 등 공간이 넓은 지역에 설치하였는가?			
	가로 화분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과도한 장식 및 그래픽 요소의 적용은 금지			
	가로 화분대는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보행에 방해가 되는 크기의 디자인은 지양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가로 화분대는 내구성이 강하고 물빠짐에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사용 권장 재료: 석재, 철재 등 ▶사용 지양 재료: 플라스틱, 목재, 고광택 재료			
	가로 화분대는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가로 화분대는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도 조화를 이루는 색상 & 재료			
설치	가로 화분대는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식재를 교체해 도심의 경관성을 유지하였는가? ▶식재 교체: 계절별로 일년생 초화류를 권장하지만 다년생 초화류 식재도 가능			
	가로 화분대는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나 계단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경사지 및 계단 설치: 가로 화분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			
	가로 화분대는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설치 지양 구역: 급경사지, 오염지, 습지 ▶시설물이 밀집한 구역: 가로 화분대 설치 지양			
	가로 화분대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보행로 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로 화분대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정교하게 마감			
	보행로에 설치되는 가로 화분대는 보행로 중심부의 양 측면에 설치하였는가?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유아, 노인 등)의 보행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 ▶유효보행폭이 1.5m 이하의 가로공간의 설치 금지			
	지면에 고정하는 형태의 가로 화분대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가로 화분대는 보행자와 충돌 시 충격이 최대한 완화된도록 디자인하였는가? ▶가로 화분대의 모서리 면은 둥글게 라운드 처리			
UD				

안내표지판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는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명칭과 방향 및 거리는 표기하였는가?			
	명칭은 원거리(약 10~20m)에서도 읽힐 수 있도록 표기하였는가?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사인을 적극 활용하였는가?			
	표기 위계는 대상지 명칭 → 대상지 방향 → 대상지 거리 순으로 표기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고 바탕색과 표기색 2도로만 표기하였는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였는가?			
	실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경사로 설치 지양하였는가?			
	보행자의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였는가?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실외에 독립형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기초 구조 매립하였는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하였는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시설물 설치 구간 내에 설치하였는가?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다른 시설물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안내표지판은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는가?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안내표지판은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표기 요소	안내표지판은 다른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안내표지판의 지주 : 모듈화 권장			
	안내표지판은 대상지의 명칭과 방향 및 거리는 표기하였는가?			
	안내표지판의 명칭은 원거리(약 10~20m)에서도 읽힐 수 있도록 표기하였는가?			
	안내표지판은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사인을 적극 활용하여 표기하였는가?			
	안내표지판의 표기 위계는 대상지 명칭 → 대상지 방향 → 대상지 거리 순으로 표기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안내표지판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고 바탕색과 표기색 2도로만 표기하였는가? ▶주조색 :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과 강조색 : 적용은 지양			
	안내표지판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안내표지판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디자인을 권장하였는가?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			
	안내표지판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로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설치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의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였는가?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실외에 독립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불가피하게 볼트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실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안전한 이용과 정보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경사로에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부득설치할 경우 : 지주가 수직이 되고, 사인물이 수평이 되게 설치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석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하였는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시설물 설치 구간 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실외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은 다른 시설물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가로수 및 다른 공공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른 공공시설물과의 간격 : 최소 2m 이상			
	안내표지판에는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표기를 병기하며, 설명 내용도 포함하였는가?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이외에는 방문하는 외국인에 맞는 외국어를 표기할 것을 권장			
	안내표지판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기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UD	안내표지판은 픽토그램 및 방향 표시 등의 문자를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과 인지성을 높게 디자인하였는가?			
	안내표지판은 야간 이용자를 위해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연계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실내설치 안내표지판 : 벽부 조명 연계 ▶실외설치 안내표지판 : 주위의 공공조명 연계			
	성인 한 사람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크기의 안내표지판 설치는 지양하였는가?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CPTED				

현수막 게시대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별도로 디자인하지 않고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기성제품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형태 :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한 형태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치 ▶색상 : 제천시 공공시설물 색상을 적용			
	가급적 접철 방식의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노끈방식의 현수막 게시대는 지양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다른 지주시설물과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공개공지나 녹지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보행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기초 구조는 매립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현수막 게시대는 별도로 디자인하지 않고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기성제품을 권장하였는가? ▶형태 :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유사한 형태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치 ▶색상 : 제천시 공공시설물 색상을 적용			
	현수막 게시대는 가급적 접철 방식의 구조로 견고하게 고정해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는가? ▶노끈방식의 현수막 게시대는 지양			
	현수막 게시대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부피감이 최소화되도록 과도한 장식·상징 등의 그래픽 요소를 적용하는 디자인은 지양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처리를 권장			
	현수막 게시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는가?			
색채 & 재료	현수막 게시대는 자연친화적인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자연친화적인 저채도 색상 배색			
	현수막 게시대는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색상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는가?			
	현수막 게시대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PC(플라스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사용을 지양			
	현수막 게시대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설치	현수막 게시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통합지주 사용가능 시설 : 공공조명(가로등, 보안등), 안내판 등			
	현수막 게시대는 공개공지나 녹지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보도 위(공공영역)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			
	현수막 게시대는 보행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경관을 과도하게 차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현수막 게시대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UD	현수막의 정보구성은 이미지보다는 가급적 서체를 통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유도하였는가? ▶현수막 게시대의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CPTED	현수막 게시대의 하부공간은 개방해 시야 확보를 통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현수막 게시대의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조명과 연계할 것을 권장하며, 연계가 어려운 곳은 조명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지정벽보판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였는가?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는가?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조색: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전체 면적 20% 이내(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 ▶강조색: 전체 면적 10% 이내			
	경사로 또는 계단 주위에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였는가? ▶보행자 이동로에서 2m 이내 설치			
	기초 구조는 매립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지정벽보판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지정벽보판은 보행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지면에서 0.6m 이하에는 정보 표기를 금지하였는가?			
색채 & 재료	지정벽보판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였는가?			
	지정벽보판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			
	벽보판에는 광택이 나는 재료(스테인리스 스틸 등)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양하였는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 사용할 경우: 도장마감 처리			
	지정벽보판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조색: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전체 면적 20% 이내(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 ▶강조색: 전체 면적 10% 이내			
설치	지정벽보판은 경사로 또는 계단 주위에 설치 지양하였는가?			
	독립형 지정벽보판은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설치	지정벽보판은 이동로에서 정보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였는가? ▶보행자 이동로에서 2m 이내 설치			
	지정벽보판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UD	지정벽보판은 주요 정보 표기범위는 0.8m~2.4m 이내에 표기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정보표기 범위: 벽면부착형 0.8m ~ 2.4m, 독립형 0.8m ~ 2.4m			
CPTED	지정벽보판은 야간 이용자를 위해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삽입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2.2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녹지공간(공원)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시내동 일원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을 권장하였는가?			
	가족 단위(3~5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는가?			
	주출입구는 인접 보행공간이나 횡단보도 등의 동선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는가?			
	게이트형의 입구사인의 설치 지양하였는가?			
	다양하게 녹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 식재			
	[어린이 공원] 식재 공간에 정보매체(해설판)를 설치하였는가?			
	[어린이 공원] 놀이 시설물과 학습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설치하였는가?			
	출입구에는 대상지의 명칭을 알리는 낮은 채널형 입구사인 설치하였는가?			
	경계부는 녹지에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시설물은 보행 동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안내 표지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수목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배치하였는가?			
	조명기구의 평균 조도는 10lux를 기준으로 최대 15lux 이내로 조절하였는가?			
수목등(상향 투광등)을 설치할 경우 0.3lux~0.6lux 범위 이내의 등기구를 사용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공간	시내동 일원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을 통해 연속적인 녹지축 형성을 권장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에는 가족 단위(3~5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및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휴게 시설은 수목 또는 차양막을 통해 그늘 형성을 권장			
	녹지공간(공원)에는 지정된 쓰레기 처리장소 마련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 구역을 지정할 경우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대형 반려동물과 소형 반려동물의 공간을 구분할 것을 권장			
	녹지공간(공원) 주출입구는 인접 보행공간이나 횡단보도 등의 동선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는가? ▶보행자가 대각선 횡단을 하여 출입구에 진입하지 않도록 설계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녹지공간(공원)에는 보행로를 횡단하는 큰 규모의 게이트형의 입구사인의 설치 지양하였는가? ▶출입구 주변에 이용안내표지판 및 종합안내도를 설치하여 입구의 인지도 확보			
조경	일정규모를 가진 녹지공간(공원)은 시설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녹지내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등 다양하게 녹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여름철에 이용자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느티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한다. ▶가로변에는 공기 정화, 방재나 방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경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주거지역과 인접한 녹지공간(공원)은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운동시설 설치 위치는 경계부에 설치			
	[어린이 공원] 식재 공간에 교육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정보매체(해설판)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놀이터와 시각적으로 연결된 장소에 가족 단위(3~5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및 편의시설을 마련			
	[어린이 공원] 녹지공간의 경우 어린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 시설물과 학습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설치하였는가?			
시설물	녹지공간(공원) 주출입구에는 대상지의 명칭을 알리는 낮은 채널형 입구사인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과 도로(보행로, 차로) 경계부는 담장이나 펜스보다는 경계녹지와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단,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원과 조화로운 디자인 펜스를 설치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보행 동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자연친화적 소재 및 친환경 재료의 시설물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편의시설 : 벤치, 앞음벽 화단, 퍼걸러(파고라), 음수대, 휴지통 등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제작 및 설치			
색채 & 재료	녹지공간(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친환경 소재 및 자연 색채 적용을 권장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안내 표지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의 포장패턴은 구역별로 차별화를 줄 수 있으나 주변에 조화를 이루도록 저채도의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복잡한 문양의 패턴이나 다양한 색이 병행되는 포장패턴은 지양			
조명	녹지공간(공원)의 조명기구에 소요되는 전력에는 태양광 등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주요 관광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			
	녹지공간(공원)의 조명은 연색성이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등기구(LED)를 설치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에서는 수목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배치하였는가? ▶우범화가 우려되는 구간은 보안등 + 블라드 등 을 병행 설치			
	녹지공간(공원)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 주거지에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지나치게 높은 휘도나 원색 조명의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주거지로 빛이 투사되지 않도록 빛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조명기구 커버를 설치			
	녹지공간(공원)은 야간에도 심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조명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특별한 행사 기간 외 색채 변화나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화려한 야간경관 연출 지양			
	녹지공간(공원)의 조명기구의 평균 조도는 10lux를 기준으로 최대 15lux 이내로 조절하여 설치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명	녹지공간(공원)에 수목등(상향 투광등)을 설치할 경우 0.3lux~0.6lux 범위 이내의 등기구를 사용하였는가? ▶빛으로부터 수목의 자연 생태 보전			
	녹지공간(공원)의 휴게시설(벤치 등) 설치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마련하였는가? ▶휠체어 공간 : 폭과 회전반경도 고려			
UD	녹지공간(공원)의 출입구 바닥 면은 단차이를 없애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는가? ▶단차이가 생길 경우 : 안내표지 설치			
	녹지공간(공원)에서 화장실의 위치는 출입구, 교차지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화장실은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 ▶화장실 주변의 사각지대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어린이 공원] 녹지공간(공원) 내 설치되는 놀이터의 바닥재는 자연소재(모래 등)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인공소재를 설치할 경우 : 충격 흡수가 가능한 소재 사용			
	녹지공간(공원)은 다양한 이동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의 배치			
	녹지공간(공원)에는 무장애 탐방로를 마련을 권장하였는가? ▶탐방로에 높낮이가 다른 이중 손잡이(핸드레일, Handrail)를 연속적으로 설치 ▶탐방로에는 일정간격으로 점자 안내판을 설치 ▶일정한 간격마다 휴식장소를 조성			
	녹지공간(공원)의 보행로에 장애 요소가 있을 시 반드시 점자블록을 설치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에서 급경사 시작점에 사인물(안내판, 바닥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사전에 급경사를 인지하도록 하였는가?			
	녹지공간(공원) 내에는 산책로와 탐방로에는 조명등(보행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였는가? ▶조명등의 빛 조도가 겹쳐지게 설치			
	녹지공간(공원)의 내·외부 공간은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외부 → 내부 상황 인식을 위해 경계부 수목의 지하고가 2m 이상의 수목을 식재 ▶보행로와 접한 경계부에는 자연감시가 용이한 휴게시설(벤치 및 앉음벽 등)을 병행 설치			
	녹지공간(공원)의 자연감시 강화를 위해 주출입구는 주위보다 밝은 조명으로 계획하였는가?			

수공간(분수·인공폭포·인공 연못·수로 등)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도심지역] 다른 유형의 수공간과 연계하여 디자인하였는가?			
	공공시설물화된 수공간은 주변 시설물과 이격시켜 설치하였는가?			
	가동 중지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물 순환 설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분수] 설비기기를 최소화하여 설치하였는가?			
	식생을 통해 자연정화가 이뤄지도록 계획하였는가?			
	조경은 주변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조성하였는가? ▶물이 없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			
	자갈이나 모래갈기 등으로 미생물에 의한 자연 여과효과의 적용을 권장하였는가?			
	안전시설 및 안내 표지는 시인성을 우선하여 디자인하였는가? ▶안전시설 / 표지 : 색/형태가 주변과 구분되게 계획			
	배관시설 등은 위험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고광택의 금속재료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바닥 및 벽면에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유리 소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를 높여 2차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였는가?			
	지속적인 관리와 청결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재료가 가진 고유 색상을 최대한 적용하였는가?			
	시설물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를 지양하였는가? ▶시설물의 안전, 강조, 상징성 등을 표현하고자 원색을 사용할 경우 면적의 30% 이내로 사용			
	조명은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 효과를 권장하였는가? ▶도심지역/관광지역 : 야간경관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 ▶자연지역/산림지역 : 야간경관이 자연스러운 빛(간접조명) 형성되도록 계획			
	조명기구는 이용자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매입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공간	[도심지역] 수공간은 다른 유형의 수공간과 연계하여 디자인하였는가?			
	공공시설물화된 수공간은 주변 시설물과 이격시켜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수공간은 분수의 형태와 공간의 특색에 맞는 조형물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공간	수공간(벽천분수, 분수, 공공시설물화 된 수공간)은 가동 중지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가동 중지시 편의 시설로 대체될 수 있는 디자인 및 계획 마련			
	[인공폭포] 수공간은 단차의 적절한 조절 및 조형물의 혼합 배치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주변 보행로와 재질의 연계성 고려			
	수공간은 산소 공급을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해 물 순환 설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배수와 급수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분수] 수공간에 설치하는 분수 시설은 작동을 위한 설비기기를 최소화하여 설치하였는가?			
	[연못] 등 보행로와 연계된 평정수 및 수로의 경우, 공간의 경계 턱이나 난간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경계턱으로 인한 영역의 구분 보다 지면과 유사한 높이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			
	수공간은 표면의 오염 및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설계하였는가?			
	수공간은 배수를 위한 지면의 고저차이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단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대비하여 설계			
조경	수공간은 적절한 식생을 통해 자연정화가 이뤄지도록 계획하였는가?			
	수공간의 조경은 주변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조성하였는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형태·크기·높이차에 변화를 주는 설계 ▶물이 없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 ▶주변 조형물, 구조와 조화되도록 디자인			
	수공간에는 자갈이나 모래 깔기 등으로 미생물에 의한 자연 여과효과의 적용을 권장하였는가?			
시설물	수공간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안내 표지는 시인성을 우선으로 하되 주변과 조화롭게 디자인하였는가? ▶정보시설: 색 / 형태가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 ▶휴게시설: 색 / 형태가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 ▶안전시설 / 표지: 색 / 형태가 주변과 구분되게 계획			
	수공간의 배관시설 등은 위험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유지 관리를 위해 노즐을 개폐형을 설치할 것을 권장			
	수공간에는 고광택의 금속재료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수공간의 바닥 및 벽면에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판석, 블럭, 타일 등)를 사용하였는가?			
	수공간에 유리 소재를 사용할 경우 일반 시설에 설치하는 것보다 강도를 높여 2차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였는가?			
	수공간의 지속적인 관리와 청결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수공간의 표면의 이끼 등 오염에 대비한 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였는가? 수공간에는 물 순환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였는가?			
색채 & 재료	수공간에 사용하는 시설물 및 마감재료는 재료가 가진 고유 색상을 최대한 적용하였는가?			
	수공간에 사용되는 시설물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를 지양하였는가? ▶시설물의 안전, 강조, 상징성 등을 표현하고자 원색을 사용할 경우 면적의 30% 이내로 사용			
	수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도장할 경우 방수성이 있으면서 인체에 무해한 도료를 사용하였는가?			
	수공간에는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지침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상설 가동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안내 표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명	수공간에는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 효과를 권장하였는가? ▶도심지역/관광지역: 야간경관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 ▶자연지역/산림지역: 야간경관이 자연스러운 빛(간접조명) 형성되도록 계획			
	수공간의 조명기는가 이용자와 직접 3 매입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수공간은 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명기구는 모두 방수되는 등기구를 사용			
UD	수공간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하였는가?			
	수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 요소는 반드시 제거하였는가? ▶접근시 안전을 고려한 공간의 깊이 고려 ▶수공간의 바닥은 물기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거나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 ▶낙상 사고 우려가 있는 공간의 경우 난간, 위험표지, 조명을 설치			
	수공간은 물과 경계를 이루는 모서리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될 경우 반드시 경고 사인을 설치			
	수공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동선을 반드시 수립하여 디자인하였는가?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의 작동 수위 조절 ▶보행로에 위치할 경우 편의시설로서의 추가적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			
	수공간에 설치하는 부속 조형물은 날카롭지 않게 디자인하였는가?			
CPTED	수공간은 주변 시야가 개방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수공간에서 추락의 우려가 있는 공간의 경우 안전 조명 설치 및 주의 표지를 의무화하였는가?			

보행공간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은 기본적으로 폭 3m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4m(권장), 3m(기본), 2m(최소), 1.5m(최소기준)			
	보행안전구역에서는 법적기준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였는가? ▶유효높이는 시설물설치구역까지 적용			
	단차가 없이 평면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가?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단차 발생시: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에서 경사를 보완			
	가로시설물 지주는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광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는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 횡단보도 진입부는 부분 턱낮춤을 권장하였는가?			
	교차로와 맞닿은 보행공간(가로변 보행로)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는가?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과 맞닿은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였는가?			
	보행안전구역에 침범하는 가로수나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보행안전구역 내 맨홀 및 배수구의 설치는 지양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공간	보행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이용자,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걷는 사람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은 기본적으로 폭 3m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4m(권장), 3m(기본), 2m(최소), 1.5m(최소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공간에서 지형상 보행안전구역의 기본 유효폭인 3m 확보가 불가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하였는가? ▶단,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1.5m 미만의 구역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교행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			
	보행공간은 보행자, 자동차의 교통량(보행량)과 기존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는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보행해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법적기준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였는가? ▶유효높이는 보행안전구역 뿐만이 아닌 시설물설치구역까지 적용			
	보행공간은 단차가 없이 평면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가? ▶단차가 발생 시: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 공간 마련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단차 발생시: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에서 경사를 보완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공간	보행공간과 맞닿아 있는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보행안전구역과 연속되게 조성하였는가?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보행공간에서의 가로시설물 지주는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광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은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버스 승강장 등)지역, 광장, 공원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는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행공간에서 횡단보도 진입부는 부분 턱낮춤을 권장하였는가? ▶보행로 폭이 6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를 1/17 ~ 1/18로 유지 ▶보행로 폭이 6m 이하: 경사로를 제외한 보행유효공간을 최소 1m 유지하고 경사로의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시공 ▶보행유효공간을 1.5m이상 권장(최소 1m 유지) ▶턱낮춤은 차도와 같은 높이로 수평하게 시공			
	교차로와 맞닿은 보행공간(가로변 보행로)에는 교차 횡단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는가?			
조경	보행공간에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배치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였는가? ▶녹지분리대 및 띠녹지를 설치할 권장 ▶보행로의 가로수는 2열 터널식을 권장			
	[보행자전용도로 및 테마거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과 맞닿은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였는가?			
시설물	보행공간에서는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는 가로수나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폭 2m 이하 보행공간: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배치(성인 2명의 교행이 가능하기 위한 목적) ▶폭 2m 이상 보행공간: 시설물을 보도녹지대, 자투리 공간 등에 설치			
	보행공간에 필요한 시설물은 인접한 공공건축물, 공개공지, 완충녹지, 옹벽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보행공간에 설치되는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들은 지주를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보행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보행안전구역 내 맨홀 및 배수구의 설치는 지양하였는가? ▶설치 시: 맨홀 및 수구 덮개는 보행공간의 포장 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보행공간의 시설물은 다양한 색채 대신에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색채 & 재료	바닥 패턴의 경우 한 구간에 여러 색채 및 패턴의 무분별한 혼용을 지양하였는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채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가진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 야간보행 시의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색상, 재질 등을 선택하였는가?			
UD	[광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고원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였는가?			
	보행공간은 어린이,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는 장시간 보행이 힘든 고령자 등을 위하여 보행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잠시 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는가?			
	보행공간은 단차나 횡단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조성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하였는가?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구간은 재질, 색상 등의 차이로 점자블록을 대체 ▶표준형 점자블록 필수설치 지역: 횡단로, 교통시설(기차역, 버스 승강장 등) ▶표준형 점자블록 크기: 가로0.3mX세로0.3m,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점자블록을 설치: 보행안전구역 대지 내 공지 쪽 기준선에서 0.6m 이격시켜 설치 ▶지장물 등으로 인한 점자블록의 우회설치는 지양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UD	보행공간에서 교차보행구역과 일반진행구역의 바닥 패턴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 연석과 경계석은 모두 미끄럼 저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설치하였는가?			
	보행공간의 바닥 마감재로는 빗물을 흡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투수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 포장 재료간의 표면휘도는 LRV(Light Reflectance Value) 최소 30 이상을 권장하였는가?			
CPTED	모든 보행공간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전방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			
	보행공간과 기타공간(차도, 시설물 설치구역 등)을 구분하는 경계는 분리선(경계석 등)을 명확히 설치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는 야간보행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였는가?			
	보행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조절하여 계획하고 조성하였는가?			
	보행공간에서 통행이 적거나 막다른 도로 등 사각지대는 조명시설을 강화하고 안전 시설을 확충하였는가? ▶보행안전 시설 : 보안등, 가로등, CCTV, 비상벨			
	보행공간은 깨끗하게 정비하여 사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관리를 지속하였는가?			

2.3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문화 및 집회시설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다양한 교통수단(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보행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였는가?			
	실외공간은 주말, 공휴일에도 개방하였는가?			
	에너지 절감형 및 친환경에너지 설비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하였는가?			
	장애인(휠체어 이용자)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폭을 확보하였는가?			
	내부 공간은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도록 설계하였는가?			
	1층은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전면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펜스 및 담장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및 키가 낮은 관목으로 조성			
	경계부에는 개방적인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보행보조기구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거치대를 확보하였는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확보하였는가?			
	재활용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반드시 비치하였는가?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는가?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단, 공익목적의 문화행사 관련 정보배너는 가능 ▶정보배너 설치 : 지정된 장소와 정돈된 이미지로 설치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건축 & 실외공간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다양한 교통수단(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계획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은 보행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차장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이용시간 외 주말, 공휴일 등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중의 정보이용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을 알리는 명칭을 사면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상층부에 설치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건축 & 실외공간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건축 설계를 권장하며 시설의 성격이 나타날수 있도록 디자인의 공통점을 부여하여 계획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은 권위적이고 단절적인 단지형 배치를 금지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형 및 친환경에너지 설비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			
실내공간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장애인(휠체어 이용자)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폭을 확보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하였는가? ▶주출입문 : 자동문 설치 ▶부출입문 : 자동문 설치 권장			
	문화 및 집회시설의 1층은 안내(정보), 휴게와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내부 공간은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도록 설계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실내 공간은 획일적인 배치로 발생하는 일률적 외관 및 창호 계획은 지양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조경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면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로와 접한 경계부에는 펜스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신설 : 개방된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기존 : 담장 허물기 →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정비 ▶펜스 및 담장 설치 불가피할 경우 :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및 키가 낮은 관목으로 조성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옥상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입체녹화(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권장하였는가?			
시설물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고령자를 위한 보행보조기구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거치대를 확보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의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확보하였는가? ▶자동차 주차장보다 동선을 우선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일부분)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재활용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반드시 비치하였는가? ▶배치 : 출입구 측면, 계단과 복도의 길림길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편의시설 : PC, 프린터기,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내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공공미술품 : 지역작가, 지역주민, 학생들의 작품 설치를 권장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색채 & 재료	문화 및 집회시설 외벽에 고채도 색채의 도료를 이용한 도색이나 슈퍼그래픽의 적용을 지양하였는가? ▶필요시 : 일부분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며 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계획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 외부의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단, 공익목적의 문화행사 관련 옥외광고(정보배너 or 미디어월)는 가능 ▶옥외광고(정보배너 or 미디어월) 설치 : 지정된 장소와 정돈된 이미지로 설치			
UD	문화 및 집회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 시 편의를 고려하여 어닝 또는 캐노피를 설치하였는가?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계			
	문화 및 집회시설의 출입구 및 보행공간은 바닥면의 단차이가 생기가 않도록 조성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요 정보매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를 적용하였는가? ▶주출입구와 로비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촉지도를 함께 설치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장애인 주차대수 : 3% 이상 권장(최소 2% 이상) ▶여성우선 주차대수 : 15% 이상(최소 1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의 출입구 및 로비 공간은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자연채광을 높이는 설계를 권장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계부는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하였는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조성			
CPTED	문화 및 집회시설은 실외공간은 야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하였는가? ▶조명기구 : 지주형 보안등 or 편의시설에 부착하는 보안등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방적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 CCTV 설치 및 공간을 밝게 조성			

노유자시설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하였는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하였는가?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하였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통행폭을 확보하였는가?			
	1층에는 휴게와 상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배치하였는가?			
	경계부는 조경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경계부와 건축물 사이에는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다수 설치하였는가?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였는가? ▶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마련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마련하였는가?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실내·외 조명기구는 센서 부착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였는가?			
	공공시설물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조명은 계획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건축 & 실외공간	노유자시설은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하였는가? ▶단, 비상차량은 예외			
	노유자시설의 전면 공간은 개방되게 조성하거나 녹지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에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 ▶입체 녹화를 권장 : 자투리 공간 녹지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경계부에는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나 키가 낮은 관목을 조성			
	노유자시설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외벽의 일부 구간 벽면녹화 및 입면녹화를 권장하였는가?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 ▶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 입면녹화 조성 → 제천의 독특한 자연 경관 형성			
	노유자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옥상정원 조성 시 고정판 슬라브 설계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실내공간	유자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하였는가? ▶주출입문 : 자동문 설치 ▶부출입문 : 자동문 설치 권장			
	노유자시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통행폭을 확보하였는가? ▶내부(복도 및 계단) : 2.5m 이상 ▶외부(통행로) : 3m 이상			
	노유자시설의 1층에는 휴게와 상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배치하였는가? ▶배치시설 : 시민편의시설(상담실, 보건실, 휴게공간, 화장실 등)			
	노유자시설의 내부는 쉽게 인지되는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노유자시설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설비 관련 시설은 지하, 옥상, 외부 독립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노유자시설에는 획일적인 실내 공간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률적 외관 및 창호 계획은 지양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건축물로서의 시각적 개방감이 있는 조경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단, 경계부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경우 : 개방성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관목+화초류 or 앗음벽 조성 ▶신설 : 개방된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기존 : 담장 허물기 →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정비			
	노유자시설은 외부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녹지공간 : 경계부 녹화, 옥상 정원, 벽면 녹화 적용			
조경	노유자시설의 경계부와 건축물 사이에는 이용자를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다수 설치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내·외부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공공미술품은 지역작가, 지역주민, 학생들의 작품 설치를 권장 ▶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마련			
	노유자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시설물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였는가?			
	노유자시설에 배치하는 휴지통은 재활용 분리수거용을 비치하며 사인은 크고 간결하게 디자인하였는가?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에는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가?			
색채 & 재료	노유자시설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색채 및 마감재는 어둡고 탁한 색채와 재료 사용은 지양하였는가? ▶건축물 주조색 : 심리적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차분한 저채도의 색채와 재질 적용 ▶건축물 강조색 : 따뜻함을 표현할 밝은 색채 적용			
	노유자시설의 건축물에는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단,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설치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규격화시켜 설치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명	노유자시설의 실내·외 조명기구는 센서 부착형 조명기구의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행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는가? ▶보안, 시설관리 공간 : 센서형 조명 설치는 지양			
	노유자시설은 야간에 범죄 예방을 위해 부지 내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내부는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하여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였는가?			
UD	노유자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약자(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면의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하였는가?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슬로프 또는 계단을 설치 ▶계단과 슬로프에는 반드시 핸드레일 설치			
	노유자시설의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출입구 주변 1층에는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휴게공간과 시설물을 마련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실내에 설치하는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게시판, 디지털정보기기 등)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시각 정보매체에는 시인성(일반 사인물 보다 크게)과 인지성(간결한 내용, 픽토그램 활용)이 높게 디자인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를 적용하였는가? ▶출입구(주출입구 및 부 출입구) 및 로비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촉지도를 병행 설치			
	노유자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를 고려하여 캐노피 또는 여닝을 설치하였는가?			
	노유자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장애인 주차대수 : 최소 2% 이상, 3% 이상 권장 ▶여성우선 주차대수 : 10% 이상			
	노유자시설의 옥외 주차장은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하였는가? ▶바닥사인 표시 : 차선 내 표시 + 주차선 앞라인 위에 걸쳐서 표기			
	노유자시설의 내·외부 정보매체에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픽토그램 사용을 확대 적용하였는가?			
	CPTED	노유자시설은 내·외부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 CCTV를 설치하거나 공간을 밝게 조성		
노유자시설은 야간에도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였는가? ▶진입로, 출입구 조명을 주변의 조도보다 밝게 조성				
노유자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하였는가? ▶주변에 조명기구가 없는 경우 편의시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 설치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치료시설, 공공업무수행, 주민공동이용)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주말, 공휴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는가?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하였는가?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건축물 창호 면적 : 건축입면의 30% 이상 권장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하였는가?			
	경계부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였는가?			
	경계부를 활용해 운동기구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는가?			
	혹서기, 혹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인근 주민들의 대피 공간을 마련하였는가? ▶대피 공간 설치 장비 :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하였는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설치하였는가?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마련하였는가?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실내는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였는가?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건축 & 실외공간	1종 근린생활시설은 보안이 필요한 공간이외에는 이용시간 외 주말, 공휴일 등에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은 금지하였는가? ▶단, 비상차량은 예외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 보행 등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밀접한 이용시설로 멀리서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위치에 계획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건축 & 실외공간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건축의 외관 및 사인은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며, 시설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소음방지 시설: 경계녹지, 방음벽(개방감과 투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치)			
	1종 근린생활시설의 전면 공간은 개방되게 조성하거나 녹지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에는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 ▶입체 녹화를 권장: 자투리 공간 녹지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경계부에는 개방감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나 키가 낮은 관목을 조성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벽의 일부 구간에는 벽면녹화 및 입면녹화를 권장하였는가?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 ▶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 입면녹화 조성 → 제천의 독특한 건축 경관 형성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설비(태양광)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옥상정원 조성 시 고정판 슬라브 설계			
실내공간	1종 근린생활시설의 내부 공간은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하였는가?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부출입문: 자동문 설치 권장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통행폭 확보를 권장하였는가? ▶내부(복도 및 계단): 2.5m 이상 ▶외부(동행로): 3m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조경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공간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계부는 담장이란 울타리 설치는 지양하고 녹지와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신설: 개방된 녹지 및 앉음벽(휴게공간)으로 조성 ▶기존: 담장 허물기 → 녹지 + 앉음벽(휴게공간)으로 정비 ▶담장 및 울타리 설치 필요한 경우: 개방성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관목+화초류 or 앉음벽 조성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공간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차양막 시설(식재 그늘, 그늘막, 퍼걸러(파고라) 등)를 설치하여 휴식기 대비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는가?			
시설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에는 반드시 흡서기, 흡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인근 주민들의 대피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였는가? ▶대피 공간 설치 장비: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근린생활시설에는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한 국제전화기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시청 정책, 대민 지원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설치를 의무화하였는가? ▶게시판: 배너형 게시판은 필수설치, 디지털정보 게시판 설치 권장			
	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휴지통은 내부가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였는가? ▶휴지통: 재활용 분리수거용 설치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시설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친환경인 소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가급적 차분한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외벽의 일부분에는 시설의 성격을 보여주는 특화된 디자인 부여를 권장하였는가? ▶특화 디자인 적용 면적: 외벽 면적의 30% 이내 ▶특화 디자인 적용 방법: 슈퍼그래픽, 마감재료를 이용한 패턴, 벽화 등			
색채 & 재료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색채와 마감재로는 어둡고 탁한 색채 및 재료 사용은 지양하였는가? ▶건축물 주조색: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차분한 저채도의 색채와 재질 적용 ▶건축물 강조색: 화사함과 생동감을 표현할 밝은 색채 적용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단,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규격화시켜 설치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는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조명	1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인 조명계획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는가? ▶건축물 창호 면적: 건축입면의 30% 이상 권장			
	1종 근린생활시설의 실내의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고, 에너지 절감형 조명기구를 사용하였는가? ▶출입문, 화장실: 센서형 조명 설치를 권장			
	1종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UD	1종 근린생활시설의 실내에 설치하는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게시판, 디지털정보기기 등)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 1층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내·외부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 주변 1층에는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휴게 시설(벤치 및 소파)과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를 고려하여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약자(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면의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하였는가?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슬로프 또는 계단을 설치 ▶계단과 슬로프에는 반드시 핸드레일 설치			
	1종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외 주차장은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하였는가? ▶바닥사인 표시: 차선 내 표시 + 주차선 앞라인 위에 걸쳐서 표기			
1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는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CPTED	1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외부 정보매체에는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픽토그램 사용을 확대 적용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민에게 개방된 외부 공간은 자연감시의 시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자연감시의 시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CCTV를 설치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주민 편의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하였는가? ▶주변에 조명기구가 없는 경우 주민 편의시설에 조명기구 직접 부착			
	1종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도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였는가? ▶진입로, 출입구 조명을 주변의 조도보다 밝게 조성			

아동·노인 관련시설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 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주출입구 : 응급차량 정차 구획 표시 및 동선 계획			
	다양한 이동 수단(자동차, 자전거, 보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비를 계획하였는가?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건축물 창호 면적 : 건축면적의 30% 이상 권장			
	복도에는 가급적 핸드레일을 설치하였는가?			
	주출입구는 자동문을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전면 공간은 녹지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경계부에도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조경공간으로 계획하였는가?			
	자투리 공간은 입체녹화(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용하였는가? ▶녹화공간은 휴게시설을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는가?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였는가? ▶공공미술품 전시 : 상시 공간 마련			
	흡서기, 흡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의 대피 공간 마련하였는가? ▶대피 공간 설치 장비 :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내·외부에는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을 반드시 설치하였는가?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은 조명시설과 병행 설치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건축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공간 구역은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 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주출입구 : 응급차량 정차 구획 표시 및 동선 계획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다양한 이동 수단(자동차, 자전거, 보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건축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소음방지 시설 : 경계녹지, 차폐녹지 조성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건축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비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1층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설비 계획을 권장하였는가? ▶옥상정원 조성 시 고정판 슬라브 설계			
실내공간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실내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자연채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실내의 복도에는 가급적 핸드레일을 설치하였는가? ▶핸드레일 재료 : 손이 닿는 면은 목재 (촉감이 따뜻한 재료를 사용)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자동문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주출입문 : 자동문 설치 ▶부출입문 : 자동문 설치 권장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낙상 및 충돌의 위험 요소를 계획단계부터 제거해야 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는가? ▶낙상 위험 요소의 안전 장치 : 안전펜스, 시건장치(옥상 등)			
조경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전면 공간은 녹지화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전면부 이외의 경계부에도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조경공간으로 계획하였는가? ▶경계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 시각적 개방성이 높은 투시형 울타리 설치, 키낮은 관목 설치, 앓음벽 설치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자투리 공간(옥상, 벽면, 경계부 등)을 활용한 입체녹화(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녹화공간은 휴게시설을 병행 설치할 것을 권장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는가?			
시설물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내·외부 공간에는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공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공공미술품 : 시설 이용자, 지역작가, 지역주민의 작품을 권장 ▶공공미술품 전시 : 상시 공간 마련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에 충분한 휴게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실내 휴게공간 : 소파 및 다양한 의자 비치 ▶실외 휴게공간 : 천정이 있는 휴게시설 배치(퍼걸러 등)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흡서기, 흡한기, 미세먼지 예보 발령의 대피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였는가? ▶대피 공간 설치 장비 : 냉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식수대, 미디어시설(TV, 라디오 등)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방문객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정보 검색 코너를 마련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한 국제겸용 전화기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색채 & 재료	아동·노인 관련시설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 내·외부에는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을 반드시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 외벽에는 상업 목적의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단,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설치대를 별도로 마련 및 규격화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색채 및 마감재료는 밝고 화사함이 드러나는 색채 및 재료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건물 주조색 :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밝은 저채도의 색채 ▶건물 강조색 : 화사함과 생동감을 표현할 밝은 색채 적용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건축물에는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명	1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인 조명계획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는가? ▶건축물 창호 면적 : 건축입면의 30% 이상 권장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전면부, 경계부에는 야간에도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 외부에는 설치하는 시설별 설명판(안내사인)은 조명시설과 병행 설치하였는가?				
UD	아동·노인 관련 시설은 야간에 범죄 예방을 위해 부지 내 공공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주변에는 바닥면 기준 20lu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출입구의 바닥면은 단차(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단차(경사)가 발생하는 경우 : 슬로프(경사면)·핸드레일을 설치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출입구 상부에는 기후 변화(비·눈)를 고려하여 캐노피 또는 어닝을 설치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실내에 설치하는 안내데스크나 정보매체(게시판, 디지털정보기기 등) 설치 시 일반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시각 정보 매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를 적용하며, 주 출입구 및 로비에는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축지도를 설치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내·외부에 설치되는 정보매체는 다국어 표기를 병기하고 픽토그램의 확대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출입구 주변 1층에는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충분한 휴게시설(소파 등)과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 등으로 방문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하였는가?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대수와 여성우선 주차대수는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외 주차장은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사인은 지주사인과 바닥사인을 이중으로 설치하였는가? ▶바닥사인 표시 : 차선 내 표시 + 주차선 앞라인 위에 걸쳐서 표기				
	CPTED	아동·노인 관련시설은 야간에도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은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하였는가? ▶진입로, 출입구 조명을 주변의 조도보다 밝게 조성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벤치나 퍼걸러 등)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기구와 함께 설치하였는가? ▶조명기구 설치 : 경계부 밖에서도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얼굴이 인식 가능한 밝기로 설치			
		아동·노인 관련시설의 외부 공간은 개방적이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 CCTV를 설치 or 공간을 밝게 조성			

2.4 공공매체 체크리스트

간판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1업소 1개(가로형간판 1개, 돌출형 간판 1개)로 제한하였는가?			
	간판의 특징에 따른 개성적 색채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인 적용			
	고광택의 금속소재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는가?			
	주요표기 :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 표기하였는가?			
	보조 표기 : 지점명, 전화번호, 도메인, 영업내용 등으로 제한하였는가?			
	사진 등의 직접적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였는가?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건물과의 거리 30cm이내로 설치하였는가?			
	두께는 30cm이내로 설치하였는가?			
	점멸방식 및 광원노출방식은 금지하였는가?			
	전면 발광은 금지하였는가?			
	[가로형 간판] 벽면가로의 80% 이내로 하며, 최대 10m 이내하였는가?			
	[가로형 간판] 판류형 표기 요소 : 총면적의 3분의 1이내 제한하였는가?			
	[돌출형 간판] 지면과의 거리는 3m이상으로 계획하였는가?			
	[돌출형 간판] 주요 표기 :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는가?			
	[돌출형 간판] 보조 표기 : 면적의 6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는가?			
	[돌출형 간판] 건물외벽에서 1m이내로 돌출하였는가?			
	[돌출형 간판] 2층이상, 5층이내에만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시설물	간판은 1업소 1개(가로형간판 1개, 돌출형 간판 1개)로 제한하며 업소당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하였는가? ▶단, 꼭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 설치가 가능			
	[가로형간판] 가로형 간판은 다양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하였는가? ▶2층이상 건축물, 신축 건물, 개축 건물에는 입체형을 권장 ▶외부 마감재가 유리로 된 경우 입체형 간판 설치를 권장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시설물	[가로형간판] 가로형 간판은 외관 환경 연출 후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부서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하였는가? ▶정사각형이나 원형, 타원 등 독특한 형태의 간판은 공공디자인 부서의 자문 또는심의			
	[가로형간판]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의 외벽 전체를 채우지 않고 상하좌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가로형간판]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업소의 벽면가로의 80% 이내로 하며, 최대 10m 이내로 디자인하였는가?			
	[돌출형 간판] 정사각형이나 원형, 타원 등 독특한 형태의 간판은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하였는가?			
	[돌출형 간판] 돌출형 간판은 하단 면과 지면과의 거리는 3m(인도가 없는 경우는 4m)이상으로 계획하였는가? ▶단, 1층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은 예외			
	[돌출형 간판] 돌출형 간판은 신축 또는 개축 건물일 경우 건축주가 일정한 위치와 크기로 건물폭 10m 당 1줄씩 일괄 설치 후 입점 업소에 배정하였는가?			
표기요소	간판의 주요 표기 요소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 표기하였는가?			
	간판의 보조 표기 요소는 지점명, 전화번호, 도메인, 영업내용 등으로 제한하였는가?			
	간판의 영업 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 취급 품목 1종만 표기하며, 메뉴 및 실물 사진은 표기를 제한하였는가?			
색채 & 재료	간판은 지역 특성과 건축물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간판은 업소의 특징에 따른 개성적 색채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단,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인 적용을 권장			
	간판은 건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되는 재질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간판은 기능에 맞도록 천연소재, 금속재, 합성소재 등 다양한 재료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간판은 고광택의 금속소재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는가?			
그래픽	간판은 광고 사진 등의 직접적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였는가?			
	간판은 문자의 자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이하였는가?			
	간판에 문자 표기시 상하좌우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독성을 높이하였는가?			
	간판은 업종의 성격이나 상호 및 브랜드에 적합한 서체와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의 경우 주요 표기 문자의 세로 평균은 최대 65cm 이내로 하고, 보조 표기 문자는 간판 세로의 4분 1이내로 제한하였는가?			
	가로형 간판에서 판류형의 경우 표기 요소의 총면적을 간판 면적의 3분의 1이내 제한하였는가?			
	돌출형 간판은 주요 표기 요소를 간판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는가?			
	돌출형 간판은 보조 표기 요소를 간판 면적의 6분의 1 이내로 제한하였는가?			
설치	간판은 건물과의 거리 30cm이내로 설치하였는가?			
	간판의 두께는 30cm이내로 설치하였는가?			
	[가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의 세로는 입체형의 경우 65cm 이내로 하고, 판류형의 경우 최대 80cm 이내로 글자의 높이와 비율에 맞추어 설치하였는가?			
	돌출형 간판은 건물의 최상층과 주거용도의 층에는 설치를 제한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설치	돌출형 간판은 건물외벽에서 1m이내로 돌출 후 설치하였는가? ▶연립형 돌출간판은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게 제작한다.			
	돌출형 간판은 건물의 2층이상, 5층이내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는가?			
조명	간판은 부드럽고 은은한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하였는가?			
	간판에는 점멸방식 및 광원노출방식은 금지하였는가?			
	간판은 직접조명 방식으로 하는 경우 문자나 도형 등 제한된 부분 외 간판의 전면 발광을 금지하였는가?			

안내판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는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명칭과 방향 및 거리 표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표기 적극 활용 : 픽토그램, 방향 표시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종합안내] 대상지의 명칭 정보, 주변 시설 명칭 및 위치 등의 상세정보, 관리부서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표기하였는가?			
	[종합안내] 정보의 위계(광역 정보 → 주변 지리 정보 → 세부 정보)를 두어 배치하였는가?			
	지도에는 주변의 주요 도로정보, 거리표시, 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였는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였는가?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는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경사로 설치 지양하였는가?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이동로에서 정보 내용의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였는가?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기초 구조는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방향안내판은 주요 교차지점에 설치하였는가?			
안내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선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하였는가?				
가로수 및 다른 공공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안내판은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안내판은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형태와 크기를 단순화, 통합화, 규격화하여 설계			
	안내판은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보행자의 이용에 거부감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안내판은 정확한 명칭과 방향 및 거리 표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표기 적극 활용 : 픽토그램, 방향 표시			
	안내판은 다른 공공시설물의 지주를 공유하거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안내판의 지주 : 모듈화 권장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표기요소	종합안내판에는 대상지의 명칭 정보, 주변 시설 명칭 및 위치 등의 상세정보, 관리부서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보조로 표기하였는가?			
	종합안내판은 정보의 위계(광역 정보 → 주변 지리 정보 → 세부 정보)를 두어 배치하였는가?			
	안내판에 표기되는 지도에는 주변의 주요 도로정보, 거리표시, 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였는가?			
색채 & 재료	안내판은 파손 시 빠른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였는가?			
	안내판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디자인을 권장하였는가? ▶변색 및 탈색, 갈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			
	안내판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하였는가? ▶주조색 : 자연친화적인 저채도의 색상으로 배색 ▶보조색 : 전체 면적 20% 이내(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 ▶강조색 : 전체 면적 10% 이내			
	안내판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의 도료나 후가공 처리를 권장하였는가?			
설치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한 이용과 정보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종합안내판 : 경사로 설치 금지 ▶ 설치할 경우 : 지주가 수직이 되고, 사인물이 수평이 되게 설치			
	안내판은 주변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도로변, 보행로 등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이동로에서 정보 내용의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였는가? ▶보행자 이동로 2m 이내 설치			
	안내판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 불가피하게 볼트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방향안내판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안내판은 주요 교차지점에 설치하였는가? ▶ 설치 위치 : 주요 분기점, 이동 시작점 및 도착점, 이용객의 집결지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지주는 도로 경계선에서 0.1~0.2m 안쪽으로 설치하였는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시설물 설치 구간 내에 설치하였는가?			
	안내판은 주목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다른 공공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 다른 공공시설물과의 간격 : 최소 2m 이상			
	안내판에는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표기를 병기하며, 설명 내용도 포함하였는가?			
	안내판은 보행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지면에서 0.6m 이하에는 정보 표기를 금지하였는가?			
UD	[종합안내, 시설안내] 안내판의 주요 정보 표기범위는 0.8m~1.6m 이내에 표기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안내판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기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CPTED	안내판은 야간 이용자를 위해 조명기구 주변에 설치하거나 연계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종합안내판 : 조명기구를 시설물 내에 삽입하여 설계 ▶방향안내판 : 야간식별이 용이하도록 명칭과 픽토그램은 형광 색채 및 반사지로 설계			
	종합안내판은 뒷면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

[기본코드]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기본 코드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와 픽토그램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는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정보제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전면광고 등)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가?			
	서체는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가능한 크기의 문자(한글 : H 1cm, 영문 : H 0.7cm)를 적용하였는가?			
	국제표준(ISO 7001) 픽토그램 및 한국산업표준(KS) 지정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였는가?			
	정보 표현(문자와 그래픽)은 배경과 색상·명도·채도의 차이를 두어 계획하였는가?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조합을 권장하였는가?			
	바탕색과 명도 차이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하였는가?			
	화면의 하단(기준높이:1,350mm)에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였는가?			
	고령자 및 약시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제공하였는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버튼, 점자, 촉지도 제공을 권장하였는가?			
	개인용 스마트 정보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QR 코드와 NFC 태그를 제공하였는가?			
	무료 WiFi, 배터리 충전 단지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내부 조명을 설치하거나 조명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 표준코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디지털영상매체는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 제공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모든 계층에게 쉽게 읽히도록 텍스트와 픽토그램 위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는가?			
	실외에 설치하는 디지털영상매체는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표기요소	디지털영상매체에서 정보제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전면광고 등)로 사용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글자와 배경색과의 명도 대비를 강하게 하여 멀리서도 잘 인식할 수 있게 표기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고령자 및 약시자를 위해 글자색과 배경색이 분리되도록 색상의 명도 차이가 5정도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에 표기되는 서체는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가능한 크기의 문자(한글 : H 1cm, 영문 : H 0.7cm)를 적용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 국제표준(ISO 7001) 픽토그램 및 한국산업표준(KS) 지정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였는가?			
색채 & 재료	디지털정보매체에 정보 표현(문자와 그래픽)은 배경과 색상·명도·채도의 차이를 두어 읽기 쉽도록 계획하였는가?			
	디지털정보매체는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조합을 사용하였는가?			
	디지털정보매체의 인터페이스는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탕색과 명도 차이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디지털정보매체는 인접한 색상과 명도 차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흰색 테두리 등을 이용하여 색의 혼동을 방지하였는가?			
설치	디지털영상매체는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교차로, 갈림길 등 동선이 나뉘는 방향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방향을 지시하는 정보를 함께 설치하였는가?			
	외부에 설치하는 디지털영상매체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UD	디지털영상매체는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을 적용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성인,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눈높이의 사용자가 정보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기준높이:1,350mm)에서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고령자 및 약시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버튼, 점자, 촉지도의 제공하였는가?			
CPTED	디지털영상매체는 디지털 안내사인의 콘텐츠를 개인용 스마트 정보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QR 코드와 NFC 태그를 제공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에는 개인용 스마트 정보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WiFi, 배터리 충전 단자를 설치하였는가?			
	디지털영상매체는 야간의 시인성과 판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영상매체에 내부 조명을 설치하거나 조명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그림문자, 서체, 도시브랜드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간결하고 명시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칼라(4도)의 배색을 기준으로 하며, 흑백(1도)으로 변화시에도 인지성이 높게 디자인하였는가?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서체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규칙적인 배열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는가?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입체화시켜 적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개방감이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시각이미지(그림문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비정형 요소를 포함시켜 자유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것을 권장하였는가?			
서체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정보의 위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공공시설물에서 공문서까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서체를 개발하였는가?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서체의 간격과, 단어간격을 줄이고, 행간은 명확하게 비우는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된 서체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였는가?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다른 요소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하도록 하였는가?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사용금지 규정을 함께 개발해 적용하였는가?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기관 상징, 심볼마크와 워드마크를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그림문자	서체를 개발할 때에는 광고물에 적용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가?			
	스포츠 종목을 표현하는 그림문자를 개발할 때에는 종목이 가지는 특성의 움직임이 잘 표현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그림문자를 개발할 때에는 디자인 개발 전략과 적용 전략을 반드시 수립하였는가?			
	그림문자를 개발할 때에는 양각 디자인과 음각 디자인을 모두 개발하였는가?			

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

[세부사항]

구분	내용	체크		
		반영	미반영	미반영 사유
디자인	공공조형물은 특정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형상화시켜 적용하였는가? →상징성을 충족시키고, 주변 공간과 설치 공간이 연계되도록 디자인			
	공공조형물은 차별성과 상징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였는가? →과도한 장식이나 상징물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디자인			
	공공조형물은 특정 계절에 편중되는 디자인을 지양하였는가?			
표기요소	슈퍼그래픽은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공공조형물은 홍보성 문구나 상업성 캠페인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슈퍼그래픽은 표기요소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작가의 작품성을 존중하였는가? →단,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실행			
색채 & 재료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			
	공공조형물에 고광택의 재료는 조형물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였는가? →고광택 재료의 면적이 30% 이상 :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실행			
	공공조형물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 및 안전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공공조형물은 가급적 재료가 가지는 이미지 표현을 권장하였는가? →변색·탈색·갈라짐·주름·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권장			
	공공조형물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슈퍼그래픽은 옥외공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콘크리트 벽면, 석재 벽면 : 물감(유성) 등의 칠하는 재료 사용을 권장 →목재 벽면 : 물감(수성, 유성) 등의 칠하는 재료 사용을 권장			
	슈퍼그래픽에 부착형 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설치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은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특성상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개방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공공조형물의 하부구조나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립하였는가? →기초 구조(볼트 및 너트)가 노출될 경우 반드시 베이스 커버로 마감 →기초 구조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연계하여 설치			
	공공조형물은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의 개방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였는가?			
조명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에 사용되는 조명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계획은 금지하였는가?			
	상시적으로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공공미술(공공조형물, 슈퍼그래픽)에는 에너지 절감형 조명기구(LED 등) 설치를 권장하였는가?			
	공공조형물의 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방적이고 상징적인 조명계획을 수립			
	도시의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해당 지역의 야간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설계하였는가?			
	슈퍼그래픽은 조명의 빛으로 인해 원화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을 지양하였는가? →계획 또는 의도에 따라 원화가 주간과 야간이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			

행정지원

제천시 도시재생과

과장 윤이순

팀장 김숙희

주무관 최승만

참여연구진

(주)씨티이안

손동주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김두일 책임연구원

서동익 책임연구원

윤지훈 선임연구원

김소정 주임연구원

양다혜 주임연구원

서제우 연구원

노태호 연구원

송의송 과장

김수경 과장

건국대학교글로벌컬산학협력단

윤명한 교수

김성현 교수

이광호 교수

학생참여 연구원

박선정 학생

이국별 학생

이유진 학생

이혜빈 학생

용역 준공일 : 2019년 12월 20일



이 보고서는 제천시에서 실행한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입니다.